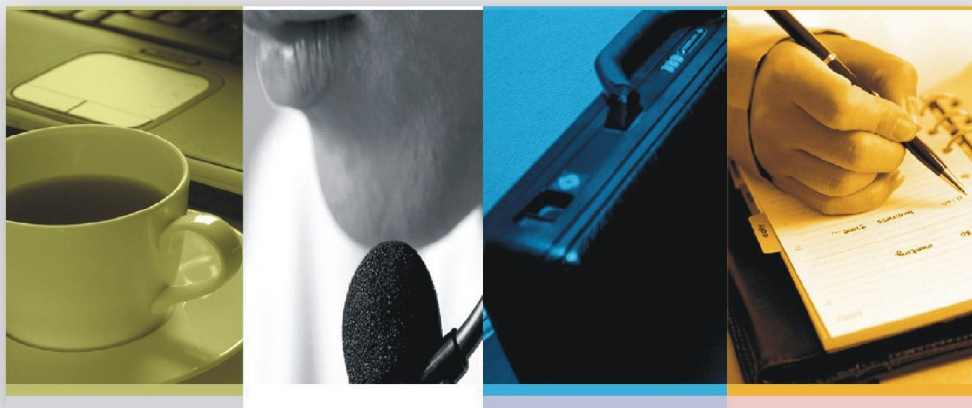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2009 년 9 월



연구 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최 흥 석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181-01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연 구 기 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최 흥 석

2009 년 9 월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조사」
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9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09. 7. 17 ~ 2009. 9. 16

연구책임자: 최홍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곽창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경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요 약 문>

I. 서 론

- 정보인권에 대한 실정법적·학문적 개념 정립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인권은 이미 현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보편화는 과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정보화 관련 이슈들을 시민사회라는 논의의 장으로 옮겨 오도록 하고 있음.
- 정보화 사회의 일상적 삶에서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활용에 관련된 개인적 혹은 사회적 권리와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도화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국가 혹은 사회활동에 있어 자신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인권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정보인권 영역의 확대로 기존의 사회문화적 혹은 기본권적 권리와 상충되거나 경합되는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보인권체계에서 관련 권리 간 경합 및 상충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률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민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정보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는 권리’로 정의함.

- “정보의 자유”란 공적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 및 접근을 의미하며, 정보 접근권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하위 개념으로 둠.
- “정보 프라이버시”란 사적 정보에 대한 개인적 통제권을 의미하며,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정보문화 향유권을 하위 개념으로 둠.

□ 정보인권은 유형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으로 구분됨.

-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공공기관 및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자신의 사생활 및 이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함.
- **정보 접근권**은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함.
- **정보문화 향유권**은 정보문화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지식재산을 사회문화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III. 정보인권 관련 법제화 현황

□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143개의 정보인권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하는 대신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이루어짐.
- 저작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저작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견해와 공정한 이용권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저작권과 이용권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견해가 대립함.

- 전체적으로 사적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 측면(유출의 방지, 유통에 대한 자기 관리권, 제3자에 의한 자기정보 생산의 제한, 저작에 대한 보호)에서 정보 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IV.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 시민 419명을 대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 및 개별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크게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의 네 가지 개별 정보인권 분야에 대한 시민의식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음.
- 또한 응답자 변인특성에 따른 집단 간 인식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인식수준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 결과, 추상성과 모호성이 큰 상위개념에서 유형별 정보인권으로, 그리고 관련되는 개별적인 사건과 이슈수준으로 갈수록 시민들의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이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언론매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해당 권리침해 및 보호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에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인식수준이 정보인권의 개념적 계층구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안이나 주제별로 인식수준 간의 격차가 존재함.
-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 정보인권 유형별로 인식수준 간의 차이가 발견됨.

- 공통적으로 개인차원의 정보인권 향유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러한 권리보호를 국가 및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개별 사건 및 이슈별 정보인권 침해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사건 및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정도와 구체성 및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인식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정보인권의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입법+사법+행정)의 비중이 양쪽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세분화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법기관(검찰 및 경찰) 및 포털 서비스 업체와 같은 민간기업의 책임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변인 집단 간 정보인권 인식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을 제외한 변인 집단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가 발견됨.
-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들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V. 결론

- 정보인권에 있어 제도와 현실 간의 인식상의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함.
- 정보인권 개념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수요로 인해 확대되는 법제화로 권리개념 간의 충돌 및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정보인권의 향유 및 보호주체로서 개인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이를 집단 혹은 사회적인 가치로서만 해결하려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보인권 관련 법제화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보인권 관련 법안 내의 유형별 정보인권 간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여 정보인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함.
- 또한 개별 사건 및 이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정보인권 인식을 상위 개념 및 실정법적 차원의 법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참여활동이 요구됨.

< 목 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4
제1절 정보인권의 정의 및 개념	4
1. 정보인권의 정의	4
2. 헌법적 기본권과 정보인권	5
3. 정보화 사회와 정보인권	7
제2절 정보인권의 유형	9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정보인권	9
1) 자유권적 기본권	9
2) 평등권	13
3) 표현의 자유	13
4) 지적 재산권	14
5) 기본권의 제한	14
2. 정보활동의 유형	15
1) 정보의 생산	15
2) 정보의 유통 및 획득과 이용	16
3. 정보활동에 따른 정보 인권의 유형	18
1) 정보 프라이버시권	18
2) 표현의 자유	18
3) 정보 접근권	1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저작권	19
제3장 정보인권 유형별 관련 주요 법제 변화 현황	21
제1절 정보 프라이버시권	21
제2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24
제3절 정보 접근권	25
제4절 정보문화 향유권	27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29
제1절 설문지 구성 및 응답자 변인분석	29
1. 설문조사 구성	29
2. 응답자 변인	29
1)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29
2) 표본집단의 변인특성	31
제2절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36
1. 일반적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36
2. 개별적인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37
1) 정보 프라이버시권	37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39
3) 정보 접근권	40
4) 정보문화 향유권	41
3. 쟁점사안 및 이슈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	42
1)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43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45
3)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4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52
5)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비교	56
4. 정보인권 이슈화 경로 및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58
1) 정보인권의 사회적 이슈화 경로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	58
2) 정보인권 보장 수준 및 현황에 대한 인식	60
제3절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따른 시민인식	63
1. 정보 프라이버시권	63
1)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5
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7
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71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74
1) 개인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4
2)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5
3) 사안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6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81

3. 정보 접근권	83
1)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83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85
3)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86
4) 정보 접근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91
4. 정보문화 향유권	93
1)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9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95
3)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96
4)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100
제4절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분석	102
제5절 변인 집단 간 정보인권 인식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105
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105
1) 성별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05
2) 연령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06
3) 학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08
4) 소득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09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0
2.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112
1) 성별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2
2) 연령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3
3) 학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5
4) 소득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7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119
 제5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 설 문 지	 127
부록 2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	137
부록 3 제18대 국회 정보 인권 관련 주요 법제 제·개정안 발의 내용 ...	143

<표 차례>

<표 2-1>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구체적 권리	12
<표 2-2> 정보 활동과 정보 인권	20
<표 2-3> 영역별 보호되는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	20
<표 4-1> 모집단(서울시민)의 변인별 특성	30
<표 4-2> 설문 응답자의 변인별 특성	31
<표 4-3> 설문 응답자의 성별분포	32
<표 4-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33
<표 4-5> 설문 응답자의 학력 분포	33
<표 4-6> 설문 응답자의 직업 분포	34
<표 4-7> 설문 응답자의 소득 분포	35
<표 4-8> 설문 응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 분포	35
<표 4-9>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	37
<표 4-10>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인식	38
<표 4-11>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인식	39
<표 4-12>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시민인식	40
<표 4-13>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시민인식	41
<표 4-14> 정보 프라이버시권: 범죄자 신상공개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44
<표 4-15> 정보 프라이버시권: 불법적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인식	45
<표 4-16>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시민인식	46
<표 4-17>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48
<표 4-18> 정보 접근권: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원판결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50
<표 4-19> 정보 접근권: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인식	52
<표 4-20> 정보문화 향유권: 저작권 삼진 아웃제에 대한 시민인식	54
<표 4-21> 정보문화 향유권: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있어 시민인식	55
<표 4-2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57
<표 4-23> 사회적 이슈화의 경로	58
<표 4-24> 사회적 이슈화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개선 영향력	60
<표 4-25> 현재의 우리나라 정보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시민인식	61
<표 4-26> 정보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민인식	62
<표 4-27> 정보인권 개선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민인식	62
<표 4-28>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5
<표 4-29>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6
<표 4-30> 정보 프라이버시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67
<표 4-31>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CCTV	68
<표 4-32>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범죄인 신상공개	69
<표 4-3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	71

<표 4-3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72
<표 4-35>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73
<표 4-36> 개인 차원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5
<표 4-37>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6
<표 4-38>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77
<표 4-39>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인터넷 실명제 및 주소공개	78
<표 4-40>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사이버 모욕죄	79
<표 4-41>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사내 게시판 비관글에 대한 직원징계	81
<표 4-42>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82
<표 4-43>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82
<표 4-44>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84
<표 4-45>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85
<표 4-46> 정보 접근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87
<표 4-47>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	88
<표 4-48>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개청구정보의 부분공개 및 거부	89
<표 4-49>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시각 장애인의 웹접근성	90
<표 4-50> 정보 접근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91
<표 4-51> 정보 접근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92
<표 4-52>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94
<표 4-53>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95
<표 4-54> 정보 향유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97
<표 4-55>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디지털 기기 간 콘텐츠 이동 제한	97
<표 4-56>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포털 사이트 내 미리보기 금지	99
<표 4-57>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에서 콘텐츠 공유 금지	100
<표 4-58>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101
<표 4-59> 정보문화 향유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101
<표 4-60> 개별 정보인권의 개인적·사회적 보호수준	103
<표 4-6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성별 교차표	106
<표 4-62>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연령별 교차표	107
<표 4-63>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학력별 교차표	108
<표 4-64>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110
<표 4-65>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별 교차표	111
<표 4-66>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교차표	112
<표 4-67>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연령별 교차표	114
<표 4-68>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력별 교차표	116
<표 4-69>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118
<표 4-70>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12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개념도	3
<그림 4-1>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분포	37
<그림 4-2>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포	38
<그림 4-3>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분포	39
<그림 4-4>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 분포	41
<그림 4-5>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인식 분포	42
<그림 4-6>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공개사건에 대한 인식 분포	44
<그림 4-7> 목욕탕 등에 대한 CCTV 설치문제에 대한 인식 분포	45
<그림 4-8>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인식 분포	47
<그림 4-9>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인식 분포	48
<그림 4-10> 인터넷 뱅킹 법원 판결에 대한 인식 분포	50
<그림 4-11> 아날로그 방송 중단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분포	52
<그림 4-12> 저작권 삼진 아웃제에 대한 인식분포	54
<그림 4-13>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있어 인식분포	56
<그림 4-14>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57
<그림 4-15> 쟁점 이슈에 대한 인식과 개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57
<그림 4-16> 사회적 이슈의 획득경로	59
<그림 4-17> 사회적 이슈화가 정보인권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60
<그림 4-18> 정보인권 보장정도	61
<그림 4-19> 정보인권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63
<그림 4-20> 개인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5
<그림 4-21>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66
<그림 4-22> 방범용 CCTV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68
<그림 4-23> 범죄인 신상공개에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70
<그림 4-24> 이메일 압수수색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71
<그림 4-25> 정보 프라이버시권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73
<그림 4-26> 개인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5
<그림 4-27> 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76
<그림 4-28>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78
<그림 4-29>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79
<그림 4-30> 비판 글에 대한 직원 징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81
<그림 4-31> 표현의 자유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83
<그림 4-32> 개인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84
<그림 4-33>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86

<그림 4-34> 공개정보 웹문서화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88
<그림 4-35> 공개청구정보의 부분공개 및 거부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89
<그림 4-36>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91
<그림 4-37> 정보 접근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92
<그림 4-38>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94
<그림 4-39>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96
<그림 4-40> 디지털 기기간 콘텐츠 이동 제한의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98
<그림 4-41> 포털 사이트 미리보기 금지의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99
<그림 4-42> 커피숍 등에서의 콘텐츠 공유 금지의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100
<그림 4-43> 정보문화 향유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102
<그림 4-44> 개별 정보인권의 개인적·사회적 보호수준 비교	104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48년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인권의 개념과 범위는 전통적인 자유권과 정치적 참정권의 보장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권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이어 제3세계의 발전권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인권이라 일컬어지는 ‘정보인권’ 혹은 ‘디지털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 용어조차 낯선 정보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정보인권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 없이 퍼나르는 글이나 사진, 음악과일이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되거나, 동일한 온라인 공간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정보와 문화교류의 네트워크 장이 되는 등 모순적일 수 있는 현상을 TV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접하거나 직접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보편화는 과거 특정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정보화 관련 이슈들을 시민사회에서의 논의의 장으로 옮겨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보인권에 대한 제도화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18대 국회를 통해 정보인권과 관련되거나 내용이 포함된 143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법률안이 정보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정부활동이나 개인 및 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보인권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인권의 영역이나 범위 역시 정보화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적인 성격 혹은 사회문화적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인권개념으로서 정보인권의 제도화의 진행은 기존의 사회질서체계 상의 권리들과 충돌하거나 경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정보인권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기존의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개념이 온라인상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인정과 같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기본권과의 충돌 혹은 경합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보인권 내에서조차 권리 간 상충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인권 관련 법률을 해석·집행하는 다양한 정부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령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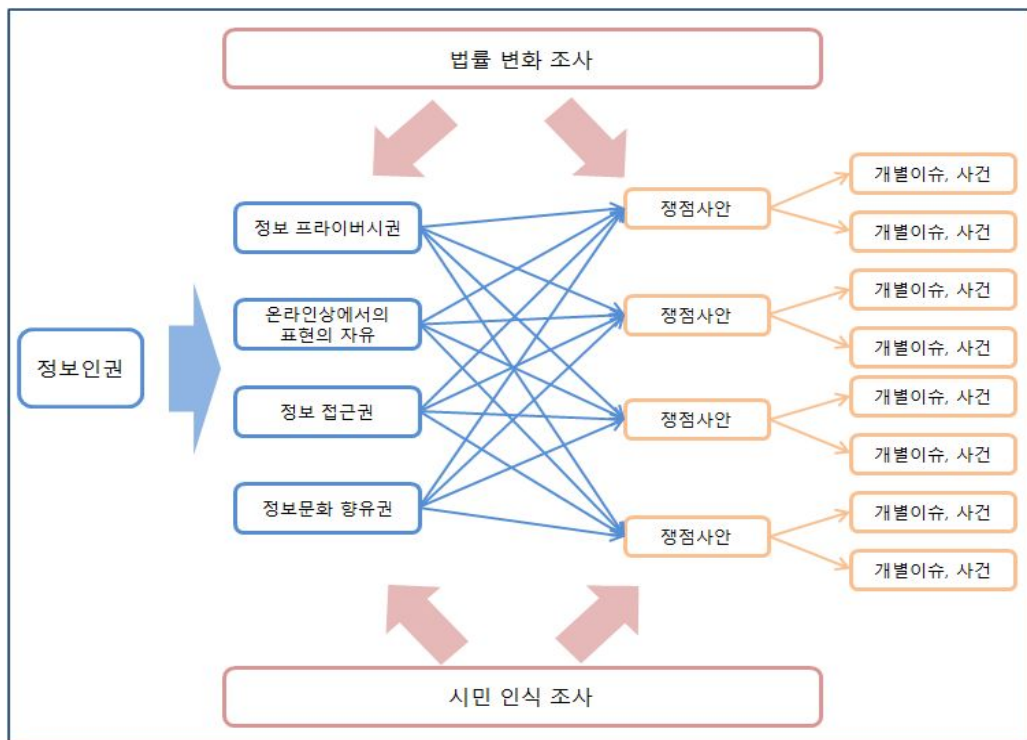
인 정보 등이 포함된 행정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는 정보인권 상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인권은 일반 시민의 생활 속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권으로서 법률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권리 개념 간에 뿐만 아니라 개별 이슈 상에서도 상충되거나 경합되는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권리체계로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별 이슈 혹은 사건 중심으로 다루어짐으로 인해 정보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상의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인권이 파편적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개별 이슈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촉발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보인권체계에서의 관련 권리 간 경합 및 충돌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인권 추세 및 쟁점사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개별 이슈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해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일반 시민의 정보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일반적 정보인에 대한 인식 및 개별 권리개념, 이슈 및 사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 경합 혹은 충돌하는 권리 간 인식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간에 존재하는 인식상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보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을 관련 법학적 관점에서 정의 및 분류하며, 이를 관련 법체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쟁점사안으로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법률사례집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보인권을 정의하며, 이를 다시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후 각각의 정보인권 유형에 따른 쟁점사안을 법률변화 및 개별 이슈,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들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논의가 취하는 관점을 분석하며, 이들 사안에 내재하는 권리 간 갈등 혹은 충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1-1> 연구개념도

또한 이러한 법률변화에 따른 정보인권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수준 및 차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개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우리나라 정보인권체계와 시민사회의 인식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정보인권의 정의 및 개념

1. 정보인권의 정의

정보인권은 최근 들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분야로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정보인권을 정의함에 있어 이인호(2009)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조항으로부터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정보인권의 두 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인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질서체계 중 하나인 정보질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의해 확인·선언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정보질서를 구성하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며, 그 수단적 차원으로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향유하고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인권이란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가 실정법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면, Oleński(2003)의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적 측면에서 정보인권(citizens' rights to information)을 다루고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의 근본으로서 자유(freedom)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을 상정하고, 이러한 자유가 진실(truth)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 하에서 시민은 진실되고, 입증가능하며, 이해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으며, 타당한, 적시의 그리고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이를 정보인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결국, 진실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앞서 보았던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보인권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Klanq and Murray(2005)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문명 및 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정보인권의 핵심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현재의 정보인권은 4세대 인권을 구성하는데, 전통적인 자유권과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부터 인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던 2세대 인권,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1986년의 발전권 등 집합적 권리를 강조하던 3세대 인권을 거쳐 현대 정보화 사회 혹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으로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정보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권은 현재의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식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자 네트워크 내에서 대중적 영역을 지원 및 강화하고, 동시에 정보화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이처럼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는 시각과 핵심가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정보화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내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 역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인권은 개념정의에 있어 인류의 보편적 혹은 세계적 인권의 주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개념정의의 수준을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가치체계 및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lanq and Murray(2005)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보인권의 실현정도는 다른 어떤 인권보다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전자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의 정보화 수준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에 따라 국가별·사회별 논의의 적용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체계 내에서 기본권의 하나로서 정보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이때의 정의는 이인호(2005)에 따라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라 정의한다.

2. 헌법적 기본권과 정보인권

상술하였듯이, 정보인권은 헌법상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된 기존의 인권 개념이 정보화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확대·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우영, 2003:18). 모든 실정법이 그러하듯이, 법체계의 변화가 실제 사회문화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인권 역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장되던 인권이나 권리부분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재해석 혹은 재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상의 흠결 혹은 기존 법체계와의 간극의 발생 가능성은 정보인권이 실정법 체계 내에서 어떠

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정보인권에는 포함되는 권리의 내용이 기존의 헌법적 기본권과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 것인지, 이들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어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인지, 이들 권리의 내용 및 구성이 실제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법체계 현실과도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인권과 관련되는 헌법적 기본권(인권)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자유권이 문제가 되지만, 이외에도 자율적인 삶의 형성과 관련된 인격권, 정보의 남용에 대한 방지와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같은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장영수, 1999: 26). 이 밖에도 개별 이슈와 사안별로 간접적으로 정보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헌법상 기본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인권이 직·간접적으로 기존의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된다고 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정보인권을 특정한 헌법적 기본권에 완전하게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정보인권의 주요한 축인 정보의 자유에 있어서 정보화의 진전은 알권리를 비롯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크게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헌법상 자유권은 그 자체로 목적인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수단적 성격도 지니므로 단순히 정보인권 중 정보의 자유 측면을 헌법상 자유권과 동일 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장영수, 1999:25-26). 따라서 정보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헌법적 기본권내지는 가치라 할지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의 특성과 시대상황에 따라 정보인권을 해석하는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인권 및 이와 관련되는 헌법적 기본권과의 내용적 차이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법적 사례 등의 적용에 있어 헌법적용에 따르는 근거와 정당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행 헌법에서 기본권 중 정보인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선언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보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로서 항상 해석적 판단여지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정보인권 상에서 상충되는 권리에 대한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의 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어느 수준까지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간의 기본권 경합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이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같이 정보인권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헌법체계에서는 아직 개별적 기본권으로 정립되지 않은 권리와 개별적 기본권 간의 경합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경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성낙인, 2004: 103).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개별적 기본권에 해석을 의존하기보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상위 가치개념으로부터 직접 법적 근거 및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성낙인, 2004:103).

결국, 이처럼 정보인권의 내용과 구성이 헌법체계의 그것과 완전하게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급속하게 진전되는 정보화 사회를 반영하여 정보인권의 내용과 구성은 더욱 새롭고 복잡해지는데 반해, 헌법적 기본권(인권)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과 정보인권, 법체계 간의 간극이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다. 사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와 모습이 변화하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상위 법체계인 헌법은 경성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괴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연계하는 하위법제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인권과 법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실과 정보인권 간에도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이 보다 현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정보화 사회와 정보인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조일수, 2005: 214-215).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은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정보인권 혹은 디지털 인권을 4세대 인권이라 지칭하는 것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권의 강조점이 달라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은 어떠하며, 정보인권은 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

에서는 정보를 가공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증대되며, 이렇게 수집되어 가공되고 유통되며 소비(활용)되는 정보가 상품 및 권력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이란 이처럼 정보가 수집·가공·유통·소비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인권의 가장 주요한 대상은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 및 민간기업,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조화순, 2005:447-448). 이들은 국가 및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혹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또는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당한 개인정보의 수집·가공·유통·소비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정보통제권과 같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정보인권에서 강조되게 된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차별적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정보화 사회 내에서 개인의 삶의 조건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권 역시 정보인권을 구성하게 된다.

정보화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보를 수집·가공·유통·소비하기 위한 매체의 발전 및 보편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Hunter, 2003; Murray, 2003). 이 새로운 공간은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보편화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한때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자유롭고 미개척지인 세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Murray, 2003:187). 그러나 이 공간은 새로운 정보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정보의 가치창출활동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만들어 내어 정보인권 상의 정보 접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실명제 도입이나 저작권 규제 등을 통해 정보인권 상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보화 사회는 유통되는 정보 가치를 동질하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과거 어떤 사회보다 문화 및 가치의 다양성이 향유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독창적인 노력의 산물로 창출된 정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문화 향유권이라는 정보인권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의 특징에 따라 정보인권의 강조되는 부분이 서로 중첩 혹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개별 권리 간의 충돌이나 경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의 정보인권 유형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상이하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가령 하우영(2003:19-20)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권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 등의 정보수집과 차단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감시권을 정보인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서 이인호(2009)의 분류에 따라 공적 정보의 자유 및 사적 정보의 보호라는 분류기준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제2절 정보인권의 유형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정보인권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정보 인권” 혹은 “정보에 관한 인권”과 같은 용어로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¹⁾ 정보인권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인가 의문시 될 수 있으나, 정보인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권리의 조합으로서 헌법에 열거된 권리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정보활동과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고찰하여, 정보활동의 특성에 따라 정보활동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인권의 유형별 국민의 권리와 경합되는 권리 및 경합되는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

1)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자유권은 천부적·초국가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적 근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괄적 권리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조 제2항 후단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여 사생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강하게 보장되어진다. 특히, 정보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사적 영역에서 두텁게 인정되며, 개인은 자신의 인격 발현을 위하여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타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대화의 자유를 가진다.(통신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대화할 수 있고 사적 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사적 생활의 평온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자기정보관리통제권)

이들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생래적 권리인 자연권으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될 수 없으며 헌법 역시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당연히 수집·정리·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었으며, 개인의 정보가 수집 및 보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공간적으로도 또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사생활이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자아를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영역²⁾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인 것이다. 즉,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배제와 자유의 보장은 자유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보호와 권리의 보장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독일 판례 (BVerfGE 34, 238)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사적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타인에 의한 개인의 인격적 정표의 이용 등을 배제하여 비밀 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과 평온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여 도청 및 감시 도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한다.

그리고 개인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는 식별 정보 및 생활에 의한 정보들을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이 인정된다.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된다.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 2-1>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며, 통신의 비밀의 보장은 사생활의 비밀을 통신의 측면에서 보장하려는 것으로 통신의 비밀의 보장은 통신행위에 의하여 개인 간에 자유로이 의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표현행위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대외적 대화과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통신의 자유는 대내적 대화과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는 구분이 된다.

그리고 통신의 비밀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타인에 의한 통신의 녹음 및 청취의 금지로, 누구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거나 녹음하지 못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따라서 통신의 불가침은 열람의 금지, 청취와 녹음 등의 금지, 누설의 금지, 공개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입법례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국가주요업무에 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의 자기관리통제권도 언제나 인정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예로 언론에 의한 연쇄살인범의 얼굴공개로 범죄인의 신상공개 문제가 개인의 자유권 침해로서 논란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던 점, 그리고 범죄 행위가 반윤리적 중범죄인 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범죄인의 얼굴공개를 옹호한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리 중범죄인의 경우에라도 범죄인의 인격권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 소송에 있어서 비록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5인의 다수견해는 인격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에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위헌의견이 있었다.³⁾

<표 2-1>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구체적 권리

자기정보 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유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문서 이외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⁴⁾
자기정보 정정청구권	정보의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그 부분을 정정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기정보 사용중지 /삭제청구권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정보주체는 자기정보의 무단공표/이용의 금지 내지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당해 청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판단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정보의 사용중지/삭제 여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헌재 2003. 6. 26.[2002 헌가 14]

4) 判例: 실정법상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 (헌재 1991.5.13 [90 헌마 133])

2)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이후의 형식적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 및 자유경쟁 등으로 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20세기 초에 극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까지 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래의 형식적 평등관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과 빈곤 등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이 요청되었다.

평등권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닌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온 천부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지며,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이 균등하게 실현되기 위한 기능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수단적 권리이며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헌법이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영역에 차별금지가 한정된 것인지는 헌법이 열거한 사유가 예시인지에 있어서는 예시설이 통설이다. 즉 헌법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학력·지역에 의한 차별, 교육에 있어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개인의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신체적 장애에 의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보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획득은 개인의 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평등한 정보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보장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이들의 정보 생활을 돕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3)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자유 외에 사상 또는 의견의 사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인격발현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서는 널리 정보를 수집 및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4) 지적 재산권

헌법은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작활동의 결과 생산되는 무형의 산물 또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헌법 제23조가 보호하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과 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사유 재산의 보호와 침해의 배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개인에게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에 있어 동기를 부여한다.

5) 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에 의해서 국가는 기본권의 불가침성과 보장 의무를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기본적 인권은 절대적 권리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그 제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불문율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개인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며, 개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면 어느 일방의 권리가 양보되거나 침해되어야만 되므로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에서 이를 조정한다면, 조정가능하다는 것에 이미 암묵적으로 제약성이 내포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기본법은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37조 제2항 전단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⁵⁾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하여도 국가안전보장 등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한불가피성의 원칙이다.

또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제한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제한이 의도하는 사회적 이익을 형량하여 양자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⁶⁾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정보인권 역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활동의 유형

1) 정보의 생산

정보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정보화 촉진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은 스스로 정보 생산을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해 낸다.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게 하는 성명,

5) 헌재 1990.9.10 [89 헌마 82]

6)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협익의 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식별 부호로서의 정보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함에 있어서 행동까지 정보기기의 발달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장치를 통하여 정보화 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개인 스스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 표현의 자유의 경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행하는 정보 생산 활동은 표현의 자유이기보다는 통신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진다. 표현의 자유는 대외적인 대화에서 인정되는 자유인 반면, 통신의 자유는 대내적 대화에서 인정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이 생산해낸 정보가 개인에 대한 정보인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배제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속하여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형성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중요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이 생산한 정보가 저작권법 제4조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저작권으로서 재산의 권리를 지니게 된다.

2) 정보의 유통 및 획득과 이용

정보의 생산으로 사회가 가지는 양질의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유통되어 다수에게 획득되어지고 이용되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양질의 정보는 양의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로서 정보가 전파되고 이용됨으로 인해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획득된 정보를 토대로 다른 정보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헌법 역시 제127조 제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보 개발의 국가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정보가 개인 고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경우 개인은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정보가 저작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저작자에 의해서 유통이 관리되어 진다.

어느 사회에서든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정보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에 유통되어지는 정보의 양이 인간이 인지 가능한 범위를 넘어 존재하므로, 그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

(良質)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되어지는 정보는 개인의 부(富) 혹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정보의 접근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허용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에 정보의 획득에 있어 정보에 접근하는데 국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장애 등의 사유로 정보기기의 사용이 곤란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정책의 성격상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가진다. 국가기관은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 천명하고 헌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실현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규정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국가가 가진 정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정부의 편의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기관의 공적 성격 때문에 사인(私人)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정보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국가가 가진 정보의 경우 정보에 따라서 접근의 가능성 문제는 있을지라도 제공되는 정보의 개인들 간의 공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보의 접근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알권리의 제한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생산한 정보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저작물의 경우 개인의 재산으로서 복제와 배포, 공중송신권의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어 저작자의 임의에 따라 정보의 접근이 허용되어지며, 정보의 공유 역시 저작자의 재산권에 침해가 없는 한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양질의 정보일지라도 저작자의 의도와 반하여 유통될 수 없으며, 공유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보가 가지는 양의 외부효과의 성격상 정보의 이용 또한 경시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활동 또한 중요한 권리로서 개인의 이용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이 명문으로 그리고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의 저작에 대한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은 정보의 획득과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⁷⁾ 그리고 헌법 제10조 전문의 후단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7) 그러나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대하여 인간적 최저생존수준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후에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헌법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 추상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는 정보의 공유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근거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사유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공공복리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보활동에 따른 정보 인권의 유형

1) 정보 프라이버시권

정보가 개인적인 정보인 경우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자유권 중 사생활의 형성과 인격 발현의 자유와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관련 인권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이 보호된다. 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로서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형성된 정보와 자신을 타인과 구분하는 식별부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됨이 없도록 자신이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정보도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예로 범죄 수사와 같이 질서 유지의 필요가 있을 때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과 같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일반적 개인에 비하여 사적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공인의 사생활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안에 따라서 충돌될 수 있다.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라도 공중에 이슈가 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정보에의 제공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자유로이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이다.

8) 判例: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헌재 2002.12.18[2001 헌마 546])

의견이 사적 영역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의견의 게시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정보화 기본법의 제3조 1호의 정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견은 정보로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정보의 생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제한은 엄격함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타인의 명예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될 수 있다.

3) 정보 접근권

개인이 공적 영역의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의 접근이 보장됨이 요구되어진다. 정부는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며 수많은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서 개인의 알권리의 보장하여 민주적·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론형성과 여론준중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정보문화 향유권과 저작권

개인이 생산한 정보가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이며,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저작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비록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적 장소인 온라인 상에 게재한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문제는 저작자와 게재자의 사적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용이 인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유하여 향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권리를 논할 여지가 적지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등 정보의 이용이 제한된 영역에서의 활용이 문제가 되어 공유에 대한 권리가 논하여지는 것이다. 즉, 정보 문화 향유권은 반대로 재산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보의 공유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됨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정보문화 향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정보문화 향유권은 개인의 자유에 의한 정보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이 문제 되는 영역에서는 해당 법률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정보문화향유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2-2>와 <표 2-3>은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표 2-2>는 위에서 설명한 정보활용 영역에 따른 정보인권의 유형이며 <표 2-3>은 정보 활동 영역 별 상충되는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 정보 활동과 정보 인권

	정보의 생산	정보의 활용
개인적 영역	정보 프라이버시권	
사적 영역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공적 영역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표 2-3> 영역별 보호되는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

		보호되는 가치	상충되는 가치
사적 영역	정보의 생산	정보 프라이버시권	알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정보의 활용	정보 향유에 따른 공공복리	저작권
공적 영역	정보의 생산	표현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권,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정보의 활용	알권리(정보접근권)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제3장 정보인권 유형별 관련 주요 법제변화 현황

제1절 정보 프라이버시권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인간은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의 정보가 디지털 기기 속에 저장됨으로써 정보의 관리와 편리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대량의 정보가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해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특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포함하는 개인의 사적 정보 역시 국가기관의 저장소 및 민간 기업의 저장소에 저장되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개인의 자유권 중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밝혔듯이 개인의 자유권은 천부의 권리로서 인식되며,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 하여도, 개인의 자유권의 제한은 제한에 의해 실현될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며, 제한에 있어서는 필요최소한에만 그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실현될 공익이 커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이의 견해이다.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앞서 밝혔듯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생활의 유지를 다른 이로부터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연유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치 않는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기 정보에 관련하여 개별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현행법 중에서 일반법적 지위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되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법의 개정도 개인정보의 보호, 타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방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개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정보주체는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 방법은 쉽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가입에 있어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음으로 동의 절차를 가입절차와 분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안들은 개인이 자신이 원치 않는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것으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법률이 보호하는 영역에서만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격, 직원의 개인적 행동에 의해서도 타인에게 유출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저장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유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누출/분실/도난 사고 후 정보주체에게의 통지의무, 사고시의 내용과 정보주체가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 등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개인 식별 부호로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수단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는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지기도 함으로, 기관이나 정보주체가 보유한 정보의 유출 또는 열람이 아닌 타인이 가공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개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사실과는 다른 허위 정보에 의해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 비단 허위 사실이 아닐지라도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됨으로써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갈 수 있는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발의안은 정보주체의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규정하고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불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안하였다.

동일한 취지로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서 제18대 국회에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제한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를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으로서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별법의 경우에는 같은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인의 건강정보에 관하여는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발의안을 통하여 이 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변화를 유추하여보면, 이후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은 자기 정보 열람청구권과 자기 정보 정정청구권, 자기정보 사용중지 및 삭제 청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이트의 기술적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 및 공공기관의 정보주체에 대한 의무 또한 개인의 권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채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인사청문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발의안의 내용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반하게 되지만, 인사청문회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서 생명, 신체, 재산상 급박한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의 명문 상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알권리·엑세스권·반론권·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이 조항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하며 건전한 민주적·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는 여론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⁹⁾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이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서 말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간의 중요한 자유권으로서 그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다만, 회복하기 힘든 개인의 명예와 정신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 양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온라인의 성격 상, 정보의 전파는 일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정보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부 정보에 대한 게재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조화는 개개인의 의식적 제고를 통하여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정보통신 생활을 조장하고 유지하여 타인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양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발의로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으로서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문화정착을

9) 判例: 표현의 자유 또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헌재 1999.5.27 [98 헌마 214])

위하여 윤리 및 언어순화 등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형법상 친고죄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발의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제재를 위하여 본인확정보통위한 소위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방향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일일이용자 10만이하의 사이트에 적용되지 않던 게시판 본인확정조치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사이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개정발의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외에 사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안도 발의되었다. 자유권의 성격상 원천적인 배제는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사전 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지만 사후 검열의 경우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보장과 관련하여 사후 검열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후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발의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악성댓글과 인신공격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후심의와 정보 삭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운영자의 심의결과에 대한 처리조치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자율규제로서 임시조치의 확대도 제안되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타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여 개인에 대한 지나친 정보 통제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는 임시조치에 따른 정보 삭제 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제도의 정비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임시조치를 방지하고자 임시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발의가 있었다.

제3절 정보 접근권

정보접근권은 크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접근권의 차이와 정보기술능력에 따른 차이, 그리고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정보접근권의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헌법 제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추상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원인에 의한 빈곤 등의 문제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란 경제적 활동과도 직결되며, 이익 창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생활 역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주요하게 이루어지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 결국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사회적 지위와 장애 등의 차이로 접근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차이에 따른 정보접근성의 차이는 시각장애로 인한 차이에 있어서 확연하게 들어나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시각 장애인의 정보통신 장비를 사용한 정보접근의 편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도서관 사용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용 자료의 제작을 위한 「도서관법」의 일부개정 법률안과 저작권에 불구하고 장애인용 자료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이 이러한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국가 기관의 원천적인 접근의 배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알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국민이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가능하려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도출되는 정보접근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의 정보 중 대중에 알려졌을 때 국가의 존속과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국가 기밀로서 다루어져 일반의 접근을 통제하게 된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안보·외교 등에 더하여 과학기술·통상 등과 같은 국가이익 사항까지 비밀의 범주를 넓히고자 하였으나, 비밀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비밀 지정을 방지하고 비밀의 자동해제 연한을 규정하여 일정기간 경과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이 자동해제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민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4절 정보문화 향유권

정보문화 향유권은 정보와 지식을 사회문화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유통됨으로써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정보로 재생산됨으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발전과 닿아있다. 하지만, 정보의 생산자의 경우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신의 재산이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은 개인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이 역시 제한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정보문화 향유권은 반대로 재산권에 의해 인정되는 정보의 공유에 따라 결정됨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즉, 정보문화 향유권은 개인의 자유에 의한 정보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이 문제 되는 영역에서는 해당 법률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정보문화향유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및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지고 있다.

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의한 정보의 확대·재생산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닿아있지만, 이는 원(原) 정보의 생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저작권법 등은 원 정보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루는 것이므로, 유통으로 인한 이익으로 경시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정보문화 향유권과 저작권 혹은 지적 재산권 양자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보활동과 정보 생산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 같은 목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보를 생산하여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소설, 시, 음악, 연극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둘의 경우 그 정의의 대상이 달라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무형의 창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의되는 저작물이지만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의하는 정보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창작물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재산권인 지적 재산권 혹은 저작권의 저촉이 있으면, 즉 창작물 그 자체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한 정보가 저작권자의 권리인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배포권(동법 제20조), 공중송신권(동법 제18조) 등에 반하여 정보로서 유통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이렇듯 정보의 사용과 저작의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다르지 않지만, 그 점점에 있어서는 상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자 모두 같은 궁극적 목적을 지니므로, 어느 권리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하는 지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제의 변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아, 저작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저작권과 이용권 간에 이용권을 좀 더 보장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저작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상습적 유포자의 사용제한 규정 도입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기존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던 기보(棋譜)의 저작권 인정, 초상재산권의 신설 등이 발의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의 완화, 청소년 형사처벌에 있어서 완화 규정의 도입, 저작물 성질/목적/이용행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 등이 발의되었다.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민 419명을 대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의식수준 및 개별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제1절 설문지 구성 및 응답자 변인분석

1. 설문조사 구성

본 설문조사는 크게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의식과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의 네 가지 개별 정보인권 분야에 대한 시민의식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시민의식 조사 파트의 경우, 정보인권을 추상적인 권리개념 수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개념수준, 그리고 가장 구체화되고 일상화된 이슈나 사건수준에 이르는 단계별로 각각 인식하는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인권 이슈의 인식경로와 사회적 이슈화가 정보인권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정보인권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의 보장수준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정보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편, 개별적인 정보인권 분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파트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향유주체로서 혹은 보호대상으로서 얼마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권리분야와 관련되는 이슈나 사건이 정보인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정보인권은 어떤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방식은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 1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2. 응답자 변인

1)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석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설문응답자인 표본 집단이 전체 서울시민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곧 설문조사 결과에 토대를 둔 본 연구내용 및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연령이나 학력수준, 소득수준에 편향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면, 그 결과 역시 일반적인 서울시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집단으로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서울시민의 집단분포의 특징을 서울시 통계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표본 집단인 설문응답자의 개별적인 변인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1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현재 서울시민은 총 10,421,782명으로 성별구성으로 봤을 때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49.7:50.3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21.7%)와 40대(19.5%)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정보인권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정도를 보기 위해 연령별 인터넷 활용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0대(28.0%)가 가장 인터넷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24.1%)와 20대(21.8%)의 순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모집단(서울시민)의 변인별 특성

구분		수 (명)	비율 (%)
성별	남자	5,174,655	49.7
	여자	5,247,127	50.3
연령대	10대	2,264,609	24.8
	20대	1,763,250	19.3
	30대	1,977,568	21.7
	40대	1,774,995	19.5
	50대	1,343,060	14.7
인터넷 활용률을 고려한 연령분포	10대		28.0
	20대		21.8
	30대		24.1
	40대		18.0
	50대		8.1
전체 서울시민		10,421,782	100.0

2) 표본 집단의 변인특성

본 설문조사를 통해 표집된 응답자의 변인별 특성은 다음의 <표 4-2>와 같으며, 아래에서 변인별 자세한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 4-2> 설문 응답자의 변인별 특성

구분		수 (명)	비율 (%)
성별	남자	217	51.8
	여자	202	48.2
연령대	10대	129	30.8
	20대	119	28.4
	30대	90	21.5
	40대	45	10.7
	50대 이상	36	8.6
학력	고졸 이하	165	39.4
	대졸 이하	212	50.6
	대학원 이상	42	10.0
직업	자영업	15	3.6
	서비스업	16	3.8
	사무직	78	18.6
	전문직	55	13.1
	전업주부	23	5.5
	학생	190	45.3
	기술직	17	4.1
	무직	11	2.6
	기타	14	3.3
소득	100만원 미만	208	49.6
	100-200만원	70	16.7
	200-300만원	61	14.6
	300-400만원	37	8.8
	400만원 이상	43	10.3
전체 응답자		419	100.0

(1) 성별

성별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적으로 성별에 따라 성장하는 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나 현상에 대한 시각에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래의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419명의 시민 중 남자는 217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하였으며, 여자 응답자는 202명으로 48.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남녀 비율은 앞서 <표 4-1>에서 나타난 모집단인 일반 서울시민의 남녀비율(49.7:50.3)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처리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선택편의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설문 응답자의 성별분포

성 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자	217	51.8	51.8
여 자	202	48.2	100.0
합 계	419	100.0	

(2) 연령대

정보화 사회에서 연령은 사회인식 및 인지영역과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에 따라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습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사고영역과 가치관 역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은 10대가 가장 많은 129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대가 119명으로 28.4%, 30대가 21.5%, 40대 이상이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 분포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경험 등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10대에서 20, 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4-1>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인터넷 활용률과 비교하여(10대: 28.0%, 20대: 21.8%, 30대: 24.1%, 40대: 18.0%, 50대: 8.1%) 본 설문조사의 표본 집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연 령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 대	129	30.8	30.8
20 대	119	28.4	59.2
30 대	90	21.5	80.7
40 대	45	10.7	91.4
50 대	27	6.4	97.9
60대 이상	9	2.1	100.0
합 계	419	100.0	

(3) 학력

학력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수준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교육의 보편화와 사회의 다양화로 인해 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학력은 개인적 가치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419명 중 대졸자가 가장 많은 165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령비율 중 20-30대를 합친 비율이 전체의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 학력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이 126명으로 많아 전체의 30.1%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47명으로 11.2%, 대학원 재학 이상이 42명으로 10.0%, 고등학교 졸업자가 32명으로 7.6%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 분포는 설문조사 구성상의 연령대 분포를 고려할 때 두 변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설문 응답자의 학력 분포

학 력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중학교 졸업이하	7	1.7	1.7
고등학교 재학	126	30.1	31.7
고등학교 졸업	32	7.6	39.4
대학교 재학	47	11.2	50.6
대학교 졸업	165	39.4	90.0
대학원 이상	42	10.0	100.0
합 계	419	100.0	

(4) 직업

직업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인권의 범주와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보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업을 통해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에서 형성되는 문화와 의식은 개인의 사회 인식 및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419명의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은 190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분포는 앞서 살펴본 설문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분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문 응답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학생분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78명으로 18.6%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55명으로 13.1%, 기술직이 17명으로 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설문 응답자의 직업 분포

직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영업	15	3.6	3.6
서비스업	16	3.8	7.4
사무직	78	18.6	26.0
전문직	55	13.1	39.1
전업주부	23	5.5	44.6
학생	190	45.3	90.0
기술직	17	4.1	94.0
무직	11	2.6	96.7
기타	14	3.3	100.0
합계	419	100.0	

(5) 소득

소득은 정보화 사회에서 노출되거나 활용하는 정보 및 관련 수단의 양과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상품적 혹은 화폐적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설문 응답자 419명의 월 평균 소득을 보았을 때,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208명

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서 보았던 응답자 변인특성에서 나타나는 연령 및 학력, 직업분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의 월 평균 소득을 번다는 응답자가 70명으로 전체의 16.7%로 나타났고, 200-300만원이 61명으로 14.6%, 300-400만원이 37명으로 8.8%, 400만원 이상이 43명으로 10.3%로 나타났다.

<표 4-7> 설문 응답자의 소득 분포

월소득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만원 미만	208	49.6	49.6
100-200만원	70	16.7	66.3
200-300만원	61	14.6	80.9
300-400만원	37	8.8	89.7
400만원 이상	43	10.3	100.0
합 계	419	100.0	

(6)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접근 혹은 이를 활용하는 직접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인식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인권 관련 이슈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혹은 이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설문 응답자 419명 중 47.5%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보통수준이라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의 38.4%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 보았다. 특히 컴퓨터를 매우 잘 활용하고 다룬다는 응답도 전체의 8.1%로 대체적으로 설문 응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설문 응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 분포

컴퓨터 활용능력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낮다	15	3.6	3.6
낮다	44	10.5	14.1
보통이다	199	47.5	61.6
대체로 높다	127	30.3	91.9
매우 높다	34	8.1	100.0
합 계	419	100.0	

제2절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상술했듯이,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여전히 명확하게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을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인식 하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정보인권을 크게 일반적 수준과 개별 유형의 권리별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권리개념 수준과 이들 개념이 현실적인 법체계와 사건, 이슈 등에서 현실화되는 이슈와 사건 수준으로 구분하여 일반 시민들이 실제 접할 수 있는 사건과 이슈에서 인식하는 정보인권과 권리개념 상의 정보인권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일반적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정보인권이란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에게 두며, 동시에 개인의 존엄과 인격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인권 개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 4-9>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인권 인식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값은 2.6120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다수 응답자가 정보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전체 응답자 중 정보인권이라는 단어 혹은 개념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¹⁰⁾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2.0%를 차지함에도, 정보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다고 하여도 대략적으로만 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8.8%로 대다수 응답자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 4-1>을 통해서도 이러한 낮은 인식수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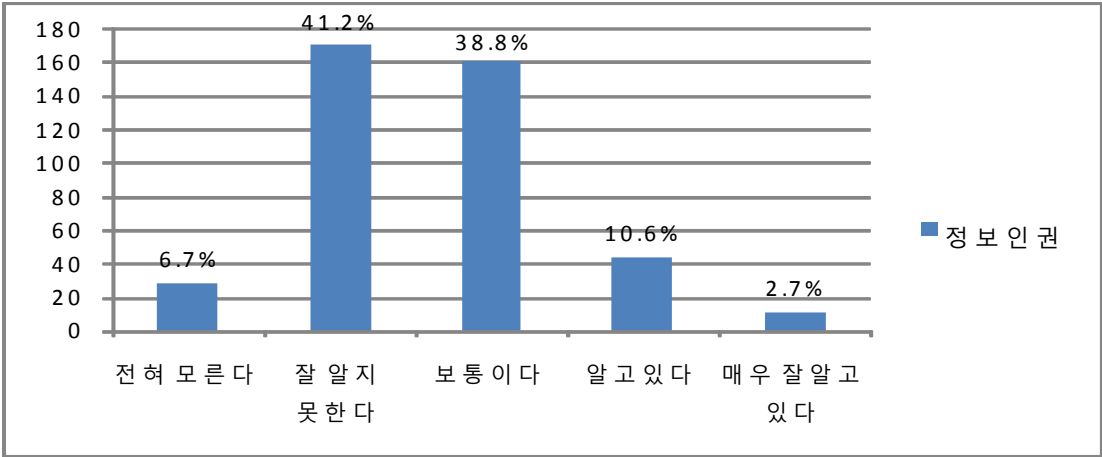
이처럼 정보인권 개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

10)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5점 척도는 인식수준에 따라 “전혀 모른다”와 “잘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응답의 해석에 있어, “보통이다”는 모르지는 않으나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의미, 즉 어디서 들어봤거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로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든 알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인식수준의 정도는 따로 해석을 하고 있다.

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 노출되는 빈도와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9>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

정보인권 인지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28	6.7	6.7
잘 알지 못한다	171	41.2	48.0
보통이다	161	38.8	86.7
알고 있다	44	10.6	97.3
매우 잘 알고 있다	11	2.7	100.0
합 계	415	100.0	
응답 평균	2.6120		



<그림 4-1>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분포

2. 개별적인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앞서 보았듯이, 정보인권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권리분야를 두고 있다.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으로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와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한 노출정도나 개별 사건이나 이슈 상에서의 활용정도에 따라 이러한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을 중심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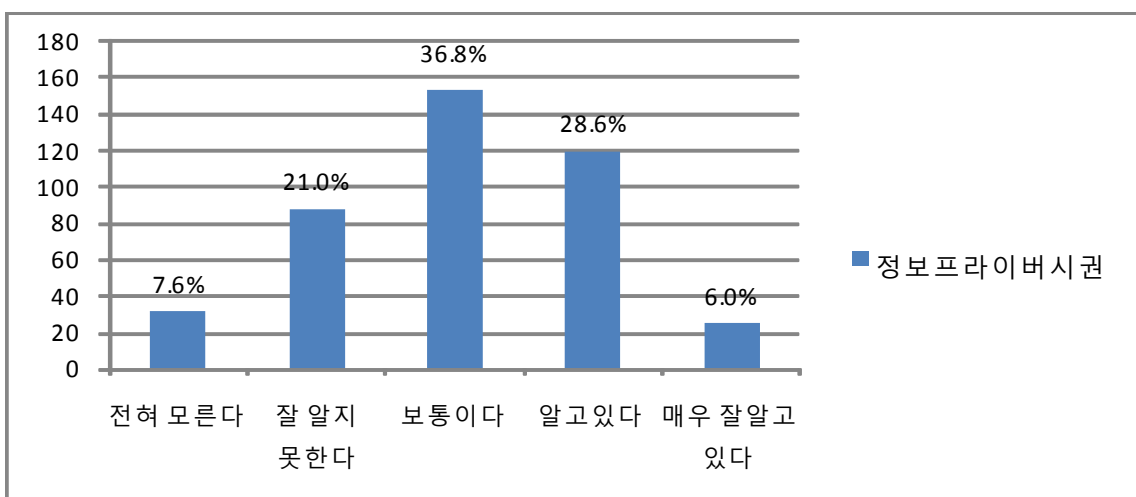
1) 정보 프라이버시권

이를 각각의 유형별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4-10>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이 3.0430으로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알고 있거나(28.6%) 매우 잘 알고 있는(6.0%) 응답자가 전체의 34.6%로 위에서 살펴본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4-2>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포가 정보인권에 비해 ‘알고 있다’는 영역에 좀 더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적이고 다소 모호한 정보인권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가 비교적 명확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언론매체나 개인활동 상으로 자주 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상적인 경험의 정도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10>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인식

정보 프라이버시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32	7.6	7.6
잘 알지 못한다	88	21.0	28.6
보통이다	154	36.8	65.4
알고 있다	120	28.6	94.0
매우 잘 알고 있다	25	6.0	100.0
합 계	419	100.0	
응답 평균	3.0430		



<그림 4-2>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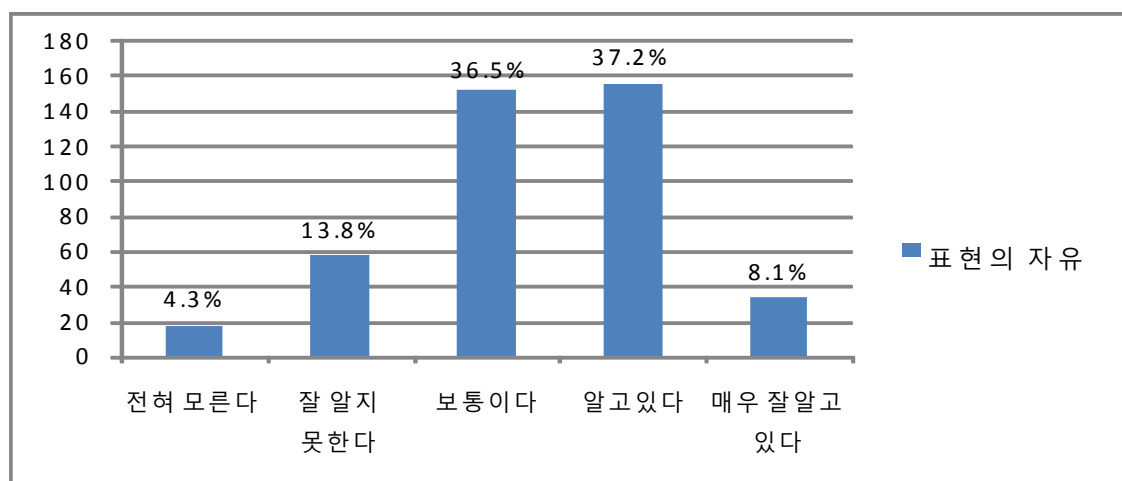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은 정보인권의 유형별 권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의 <표 4-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평균값이 3.3103으로 응답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45.3%가 이러한 정보인권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그림 4-3>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듯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분포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우측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장 큰 국제적 위기였던 금융위기를 맞아 미네르바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외에도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논란 등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상당한 이슈들이 장기간에 걸쳐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1>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인식

표현의 자유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18	4.3	4.3
잘 알지 못한다	58	13.8	18.1
보통이다	153	36.5	54.7
알고 있다	156	37.2	91.9
매우 잘 알고 있다	34	8.1	100.0
합 계	419	100.0	
응답 평균	3.3103		



<그림 4-3>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분포

3) 정보 접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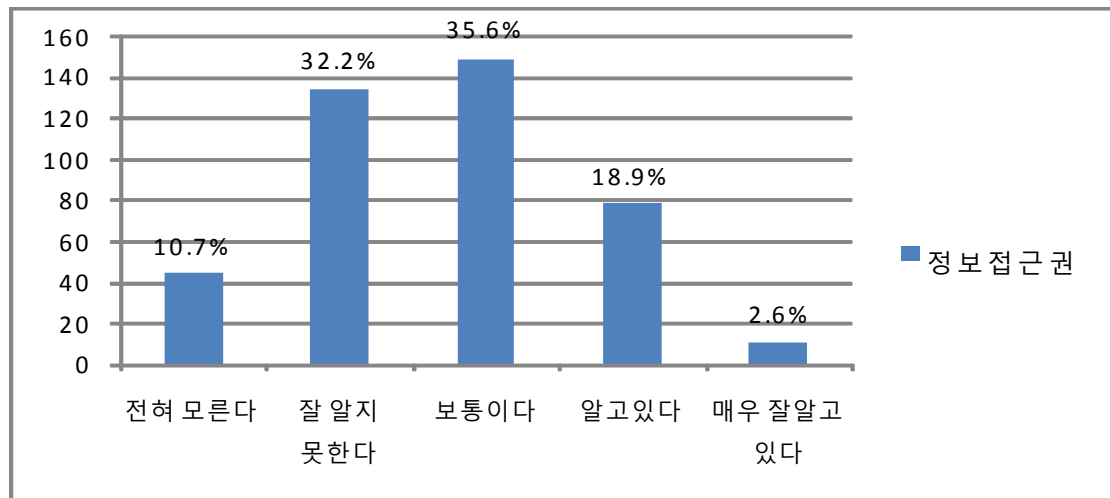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정보인권과는 달리 정보 접근권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쉽게 접하거나 경험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행정정보공개청구권 역시 사업과 같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경우가 아닌 순수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정보에 대한 욕구로 행사하기에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으며, 그 절차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간혹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나 최근의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요구와 같이 일부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청구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정도로 시민 개인에게 민감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어렵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의 <표 4-12>에서 보듯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평균은 2.7041로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정보인권과는 큰 인식수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 접근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이 전체의 35.6%이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32.2%로 매우 높으며, 특히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4-4>에서도 가시화 되듯이, 앞서 살펴본 인권들에 비하여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시민 인식 분포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영역에 분포되어 시민 간에도 이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접근권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같이 용어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일부 존재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임으로 인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민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시민인식

정보 접근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45	10.7	10.7
잘 알지 못한다	135	32.2	43.0
보통이다	149	35.6	78.5
알고 있다	79	18.9	97.4
매우 잘 알고 있다	11	2.6	100.0
합 계	419	100.0	
응답 평균	2.7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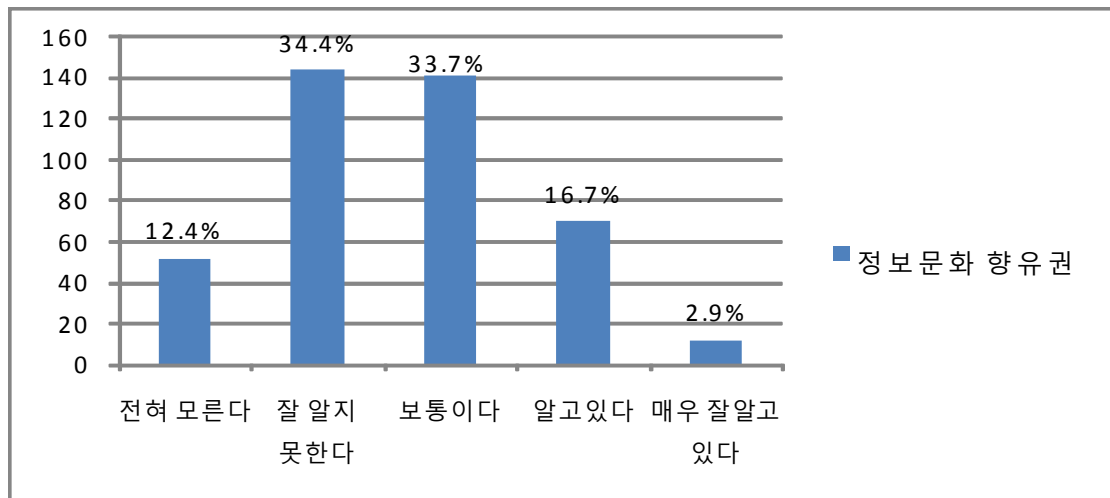
<그림 4-4>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 분포

4) 정보문화 향유권

정보문화 향유권은 그 개념이 정보인권만큼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보문화 향유권은 이들 권리에 대한 반대적 권리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영역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의 <표 4-13>과 같이 정보문화 향유권 인식에 대한 전체 응답 평균은 2.6325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평균값인 2.6120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34.4%가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전체의 12.4%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아래의 <그림 4-5>의 시민 인식분포가 나타내듯이, 정보접근권에 비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가 좀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시민인식

정보문화 향유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52	12.4	12.4
잘 알지 못한다	144	34.4	46.8
보통이다	141	33.7	80.4
알고 있다	70	16.7	97.1
매우 잘 알고 있다	12	2.9	100.0
합 계	419	100.0	
응답 평균	2.6325		



<그림 4-5>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인식 분포

이러한 결과는 정보문화 향유권 용어 자체의 모호함과 추상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기타 유형의 정보인권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법적 적용근거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 정보문화 향유권은 단지 권리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며, 오히려 저작권법 등 반대 권리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 인해 제약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쟁점사안 및 이슈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

앞서 보았듯이, 정보인권은 일반 시민에게 여전히 낮은 개념이지만 하위 개념으로서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및 노출정도에 따라 각각의 인식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서도 이러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식수준에서 공통적인 경향을 찾는다면,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갈수록, 즉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빈도와 정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 시민이 정보인권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별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은 이상에서 살펴본 두 수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유형별 정보인권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화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 수준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살인사건 등의 범죄자에 대한 언론 상의 신상정보 공표 사건과 목욕탕 및 사우나 등 사생활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범죄자 신상공개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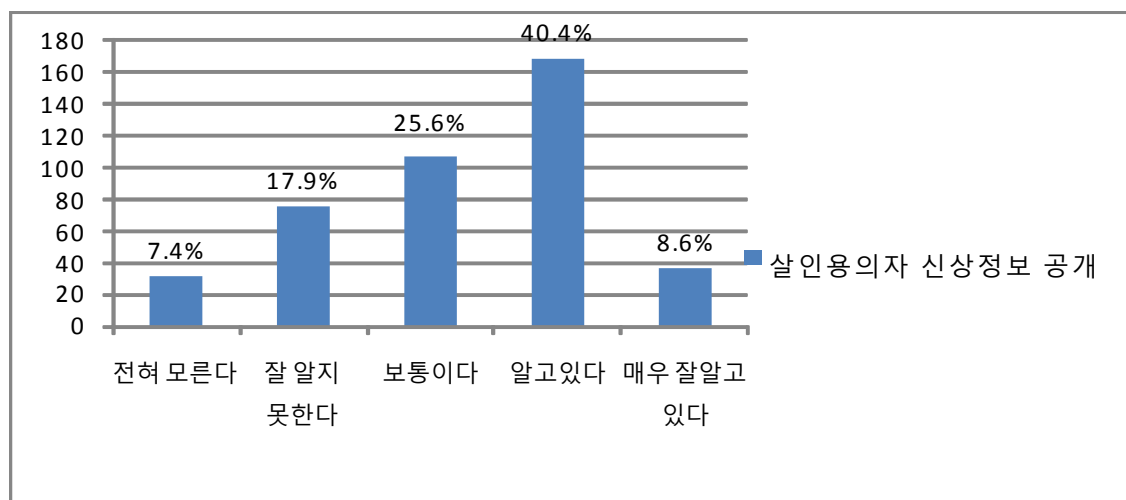
살인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이나 아동유괴 및 살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을 일컫는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는 단순한 사회적 알권리의 수준을 넘어 범죄의 잔혹성 등에 대한 사회적 징벌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소년 성범죄자 등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명단공개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본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가 이루어진 정도가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표 4-14>에서 보듯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식수준은 평균 3.2488로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49.0%가 해당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8.6%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래의 <그림 4-6>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인식 분포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우측에 집중되어 분포한다는 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사회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한 관심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범죄자 검거 이후에는 이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들 사건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4> 정보 프라이버시권: 범죄자 신상공개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31	7.4	7.4
잘 알지 못한다	75	17.9	25.4
보통이다	107	25.6	51.0
알고 있다	169	40.4	91.4
매우 잘 알고 있다	36	8.6	100.0
합 계	418	100.0	
응답 평균	3.2488		



<그림 4-6>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공개사건에 대한 인식 분포

(2) 목욕탕 및 사우나 등에 대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최근 목욕탕과 사우나 및 찜질방 등 대중이용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도난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CCTV 녹화화면의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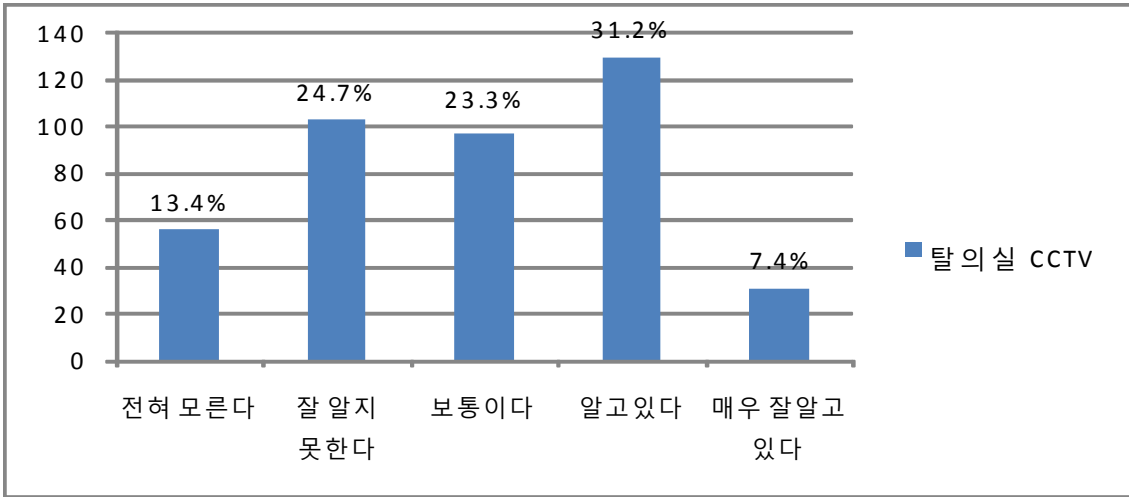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15>에서와 같이, 불법적인 CCTV 설치 및 운영을 인식함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2.9448로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6%가 이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전체의 25.0%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전체의 13.6%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특성은 아래의 <그림 4-7>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데, 응답자의 인식영역이 비교적 넓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동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낮고 응답자 간의 편차도 존재하는 것은 실제 이로 인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유출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까지 적으며, 이로 인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화의 수준이 낮을 경우, 동 이슈에 대해서는 평소 목욕탕 등을 자주 이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위를 통해 전해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15> 정보 프라이버시권: 불법적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인식

불법적 CCTV 설치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56	13.4	13.4
잘 알지 못한다	103	24.7	38.1
보통이다	97	23.3	61.4
알고 있다	130	31.2	92.6
매우 잘 알고 있다	31	7.4	100.0
합 계	417	100.0	
응답 평균	2.9448		



<그림 4-7> 목욕탕 등에 대한 CCTV 설치문제에 대한 인식 분포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지나친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사건과 최근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개인에 대해 국가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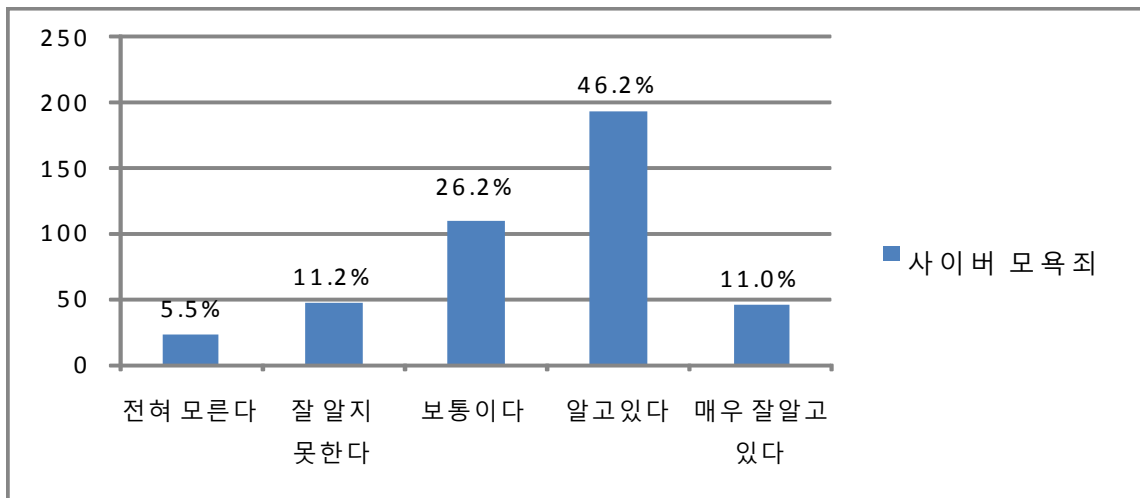
(1)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시민인식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성이나 유통행위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사회적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연예인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댓글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실제 자살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16>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4593으로 상당히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57.2%가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1.0%에 이르는 등 대다수의 응답자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그림 4-8>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듯이, 인식 분포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우측에 집중되어 분포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매우 동질적이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4-16>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시민인식

사이버모욕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23	5.5	5.5
잘 알지 못한다	47	11.2	16.7
보통이다	109	26.1	42.8
알고 있다	193	46.2	89.0
매우 잘 알고 있다	46	11.0	100.0
합 계	418	100.0	
응답 평균	3.4593		



<그림 4-8>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인식 분포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예인 자살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촉발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한 노출빈도와 정도가 높은 동시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의 댓글작성이나 게시물 작성과 같은 행위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았을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영역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미네르바 사건은 온라인상에 개인이 익명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국가가 실정법상의 처벌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특히, 해당 게시자가 올린 글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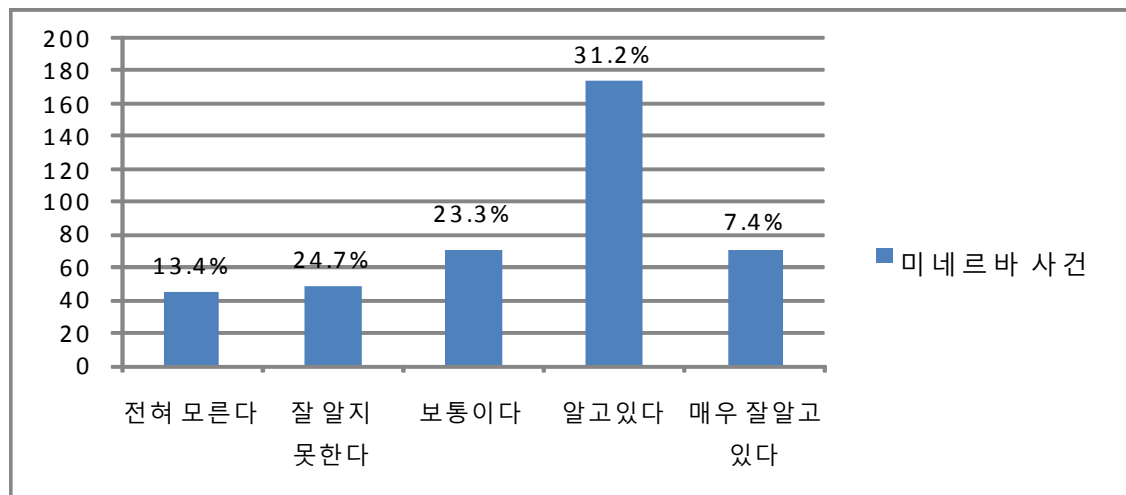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17>에서 보듯이,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3.4317로서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17.3%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4-9>에서도 가시

화 되고 있듯이, 응답자의 인식분포가 ‘알고 있다’고 답한 영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인식수준은 사이버 모욕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슈화 정도는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인 사이버 모욕죄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유사하면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 두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의 영역이 다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이슈범위가 개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반면,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과 국가가 주된 이슈범위라는 점에서 이슈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적 판단과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가 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미네르바 사건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45	11.0	11.0
잘 알지 못한다	49	12.0	22.9
보통이다	71	17.3	40.2
알고 있다	174	42.4	82.7
매우 잘 알고 있다	71	17.3	100.0
합 계	410	100.0	
응답 평균	3.4317		



<그림 4-9>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인식 분포

3)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한편,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사건 및 이슈로는 최근 인터넷 뱅킹 사용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MS 윈도우 운영체제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의 판단사건과 방송시스템 상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송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MS 윈도우로만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 판결

오늘날 많은 정보를 담은 정보의 저장소들은 물리적 장소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각각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망으로써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탐색 가능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가 망에 연결되어만 있어서는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로서 대표적으로 Internet Explore, Netscape 등이 존재한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여러 소프트웨어 중 자신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MS 윈도우로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의 판단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사업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정보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의 이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의 많은 사이트들이 영상정보, 음성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Active 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특정 인터넷 운영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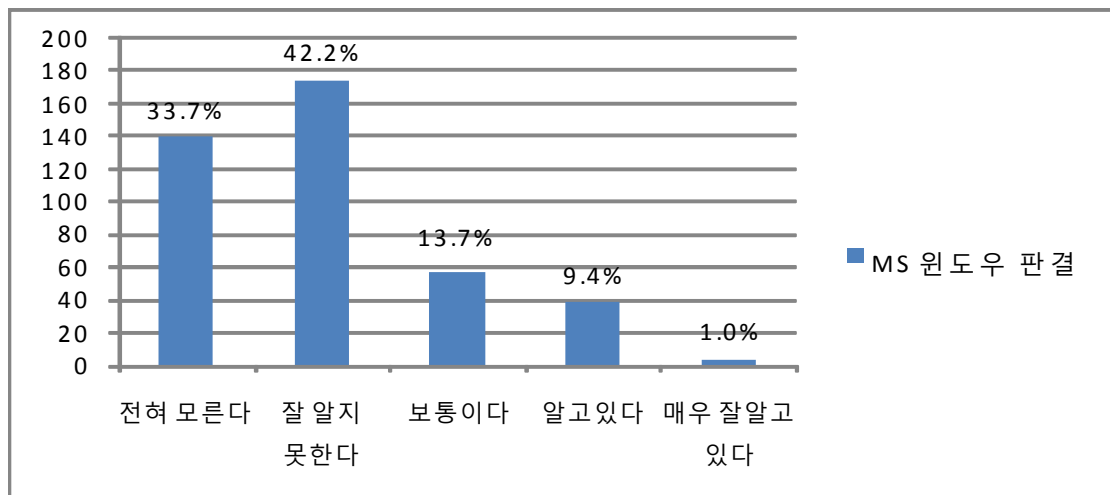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Microsoft사의 MS Window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면서 당 사(社)의 인터넷 프로그램으로서 Internet Explore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독점력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료배포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Internet Explore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Internet Explore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불편을 인지하는 사람도 많

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아래의 <표 4-18>에서와 같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인식평균은 2.0169로 법원에 대한 판단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5.9%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4-10>에서도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하였듯이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심한 곤란을 느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MS 윈도우 운영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인터넷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광범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경우 이에 대한 일상적인 불편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우며, 정보인권 상의 정보접근권이 제약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8> 정보 접근권: 인터넷 बैं킹에 대한 법원판결 사건에 대한 시민인식

MS 윈도우 판결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140	33.7	33.7
잘 알지 못한다	175	42.2	75.9
보통이다	57	13.7	89.6
알고 있다	39	9.4	99.0
매우 잘 알고 있다	4	1.0	100.0
합 계	415	100.0	
응답 평균	2.0169		



<그림 4-10> 인터넷 बैं킹 법원 판결에 대한 인식 분포

(2)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및 디지털 방송 전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을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의 해로 보고, 2012년에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9월 충북 단양, 경북 울진 등 4개 지역을 디지털 방송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기술테스트 및 시청자 만족도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이미 영국과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만을 송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방송 수신기로 아날로그 TV를 소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TV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송 송출의 중단은 부(富)에 의하여 매체 접근을 차단하므로 수신기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영상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TV방송은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매체이며, 특히 공중과 방송의 경우 신뢰성 및 파급력이 다른 여타의 매체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매체이므로 해당 매체에 대한 접근의 제한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히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된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표 4-19>에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평균이 3.1039로 비교적 높으며,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5.5%가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고 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4.4%가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래의 <그림 4-11>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인식분포가 다소 넓게 퍼져 분포되어 있으나, 비교적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인식분포가 넓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비교적 비동질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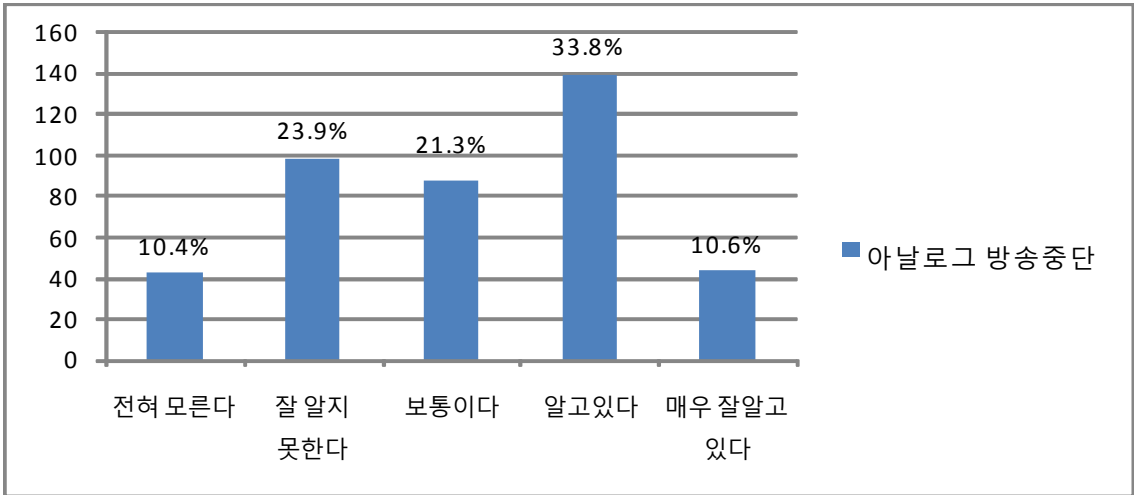
이는 아날로그 방송 송출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이슈의 경우, 대다수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는 TV에 대한 것으로서 아날로그 송출 중단 시 기존의 TV교체 등의 비용 부담을 필요로 하여 이해당사자적 입장을 지닐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장에 교체를 필요로 하거나 근 기간 내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일한 유형의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 및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와 개인적 경험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조사에서 정보 접근권을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비밀상적 성격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에 비해 개별 이슈 및 사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개인경험과 이해관계 여부, 사회적 이슈화 등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수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정보 접근권: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인식

아날로그 방송 중단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43	10.4	10.4
잘 알지 못한다	99	23.9	34.3
보통이다	88	21.3	55.6
알고 있다	140	33.8	89.4
매우 잘 알고 있다	44	10.6	100.0
합 계	414	100.0	
응답 평균	3.1039		



<그림 4-11> 아날로그 방송 중단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분포

4)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삼진 아웃제와 온라인상의 음란물 유포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이라는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1) 저작권 삼진 아웃제

앞서 고찰하였듯이 정보 문화의 향유는 정보를 생산한 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 혹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의 경우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가지는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밀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정보 접근권에서의 문제가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일단 공개된 정보의 경우 공적 정보로서 개인 간의 공유에 의한 정보의 향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이 소유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보의 복제 및 배포의 권리, 공중송신권을 보장하므로 저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 즉, 개인 간의 정보의 공유가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저작권 삼진 아웃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P2P 프로그램, 게시판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개인 저작물의 공유를 막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발효된 제도이다. 본 개정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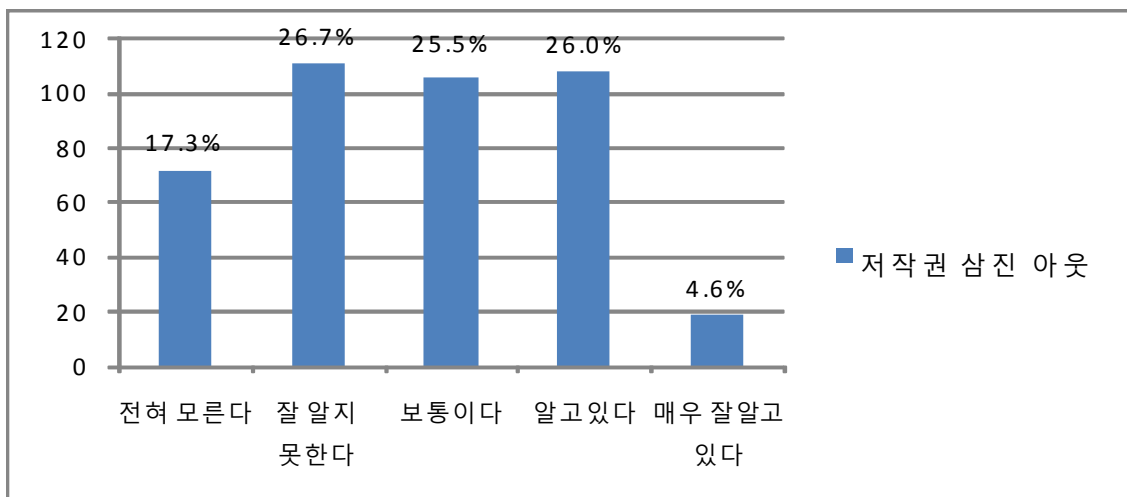
‘저작권 삼진 아웃제’는 저작권에 위배된 자료의 복제·전송을 반복적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기간 박탈하게 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제재조치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용권한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당시에 개인의 인터넷 게재 활동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저작권 삼진 아웃제’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 4-20>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인식수준 평균이 2.7380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인 반면, 이 사안에 대하여 44.0%는 알지 못하며, 특히 17.3%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동 사안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게재를 활발하게 한 이들과 이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던 이들에게는 정보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반면에 비교적 이러한 활동이 적고 포털 사이트, 개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과, 개인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사안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래의

<그림 4-12>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인식 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넓게 분포하여 인식수준이 비동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20> 정보문화 향유권: 저작권 삼진 아웃제에 대한 시민인식

저작권 삼진 아웃제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72	17.3	17.3
잘 알지 못한다	111	26.7	44.0
보통이다	106	25.5	69.5
알고 있다	108	26.0	95.4
매우 잘 알고 있다	19	4.6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2.7380		



<그림 4-12> 저작권 삼진 아웃제에 대한 인식분포

(2)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고소 사건

2009년 8월 미국과 일본의 음란물 제작 업체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만 명에 가까운 계정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 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무혐의 판단을 하여 음란물 업체가 이에 대응하여 9월 6만 5천개의 계정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의 경우 한국의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영상으로서 영상의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 복제·유포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저작권법을 이유로 하여 고소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한국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작 업체가 속한 국가에서 합

법적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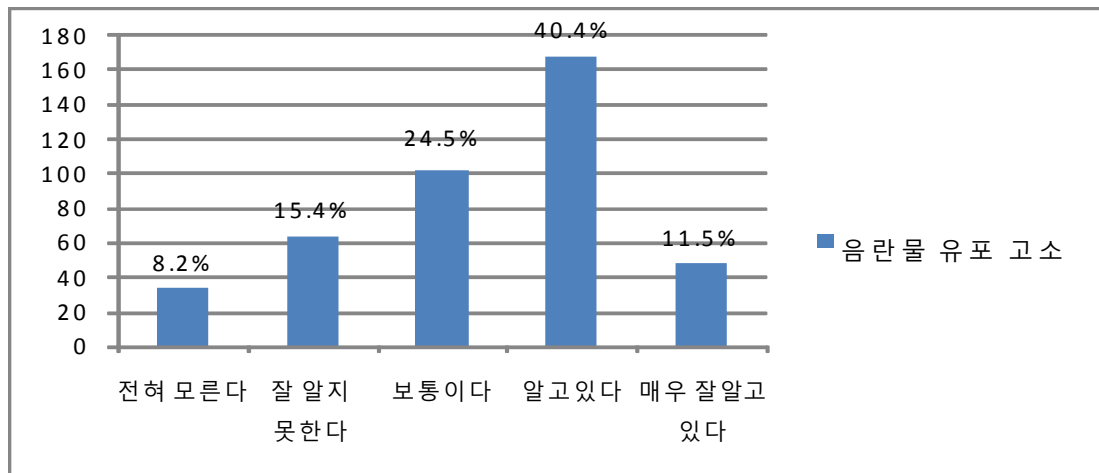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사례가 음란물의 유포였다는 점 외에도 고소를 당한 사람의 규모가 매우 커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이슈화가 대단히 컸다는 점에서 비록 사건의 발생이 설문을 한 시점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소문 등의 확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 4-21>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3.3173으로 시민들의 인식정도가 높으며,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52.1%가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아래의 <그림 4-13>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인식분포가 ‘알고 있다’고 답한 영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 사건의 경우, 주로 음성적으로 거래 또는 교류되는 음란물에 대해서조차 지적재산권을 적용한 사건으로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 그 상징성이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의 경우,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2%가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개별 사건 및 이슈수준의 시민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문화 향유권은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 실정법상 반대개념이 뚜렷하고 창작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양도 혹은 포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이슈와 사건을 통해서만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법과 같이 상충되는 가치 및 개념의 명확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수월해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정보문화 향유권: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있어 시민인식

음란물 유포 고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모른다	34	8.2	8.2
잘 알지 못한다	64	15.4	23.6
보통이다	102	24.5	48.1
알고 있다	168	40.4	88.5
매우 잘 알고 있다	48	11.5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3.3173		



<그림 4-13>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있어 인식분포

5)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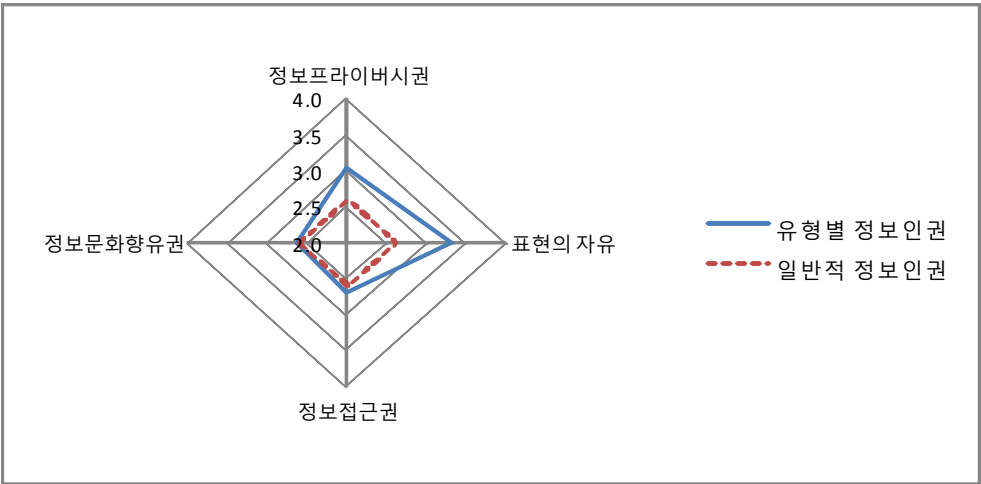
아래의 <표 4-22>는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정보인권과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의 응답자 평균값과 각 정보인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의 인식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4-14>는 <표 4-22>의 내용 중 일반적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과 개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4> 그래프 안의 점선은 일반적 정보인권의 응답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모두 이 영역 밖에 존재하여 각각의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보인권에 비하여는 그 인식에 대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 인권이 비록 정보활동과 관련된 인권들의 조합으로서 상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그리고 개별 이슈 혹은 사건이 침해된 개별 권리로 접근되어져 이들의 상위 개념으로서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은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낮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그림 4-15>를 통하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림 4-15>는 인식의 정도가 높은 개별 인권의 경우 개별 이슈 혹은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간에도 나타나는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비교적 친숙한 개념이며 언론 등을 통하여 개별 이슈를 통한 노출의 정도가 높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경우 다른 정보 인권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과 이해관계 등에 밀접함 정도도 해당 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밀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 더욱 부각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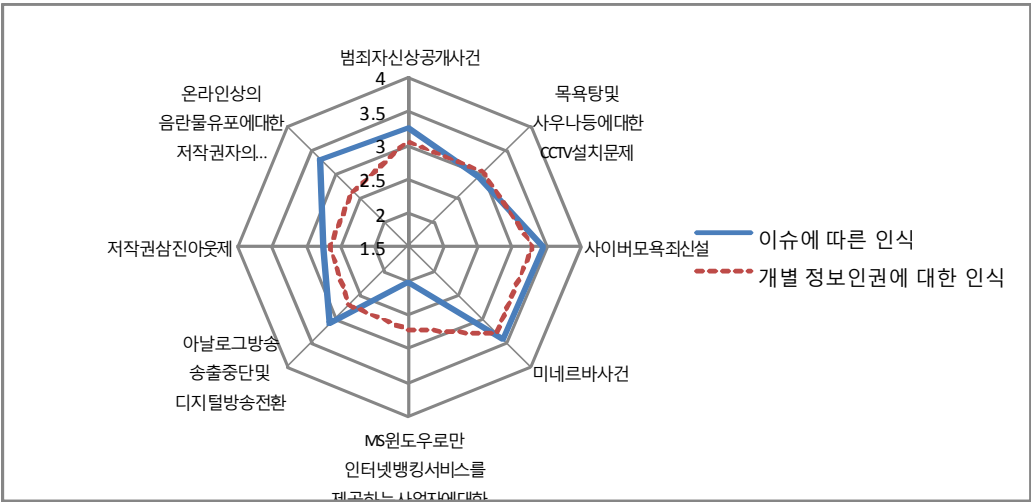
이슈화된다는 점에서도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15>는 이를 가시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4-2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분 야	N	인식평균	쟁점 이슈	N	인식평균
일반적 정보인권	415	2.6120			
정보프라이버시권	419	3.0430	범죄인 신상공개	418	3.2488
			탈의실 CCTV	417	2.9448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419	3.3103	사이버 모욕죄	418	3.4593
			미네르바 사건	410	3.4317
정보 접근권	419	2.7041	MS윈도우 판결	415	2.0169
			저작권 삼진 아웃	416	3.1039
정보문화 향유권	419	2.6325	아날로그 방송 중단	414	2.738
			음란물 유포자 고소	416	3.3173



<그림 4-14>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그림 4-15> 쟁점 이슈에 대한 인식과 개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4. 정보인권 이슈화 경로 및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1) 정보인권의 사회적 이슈화 경로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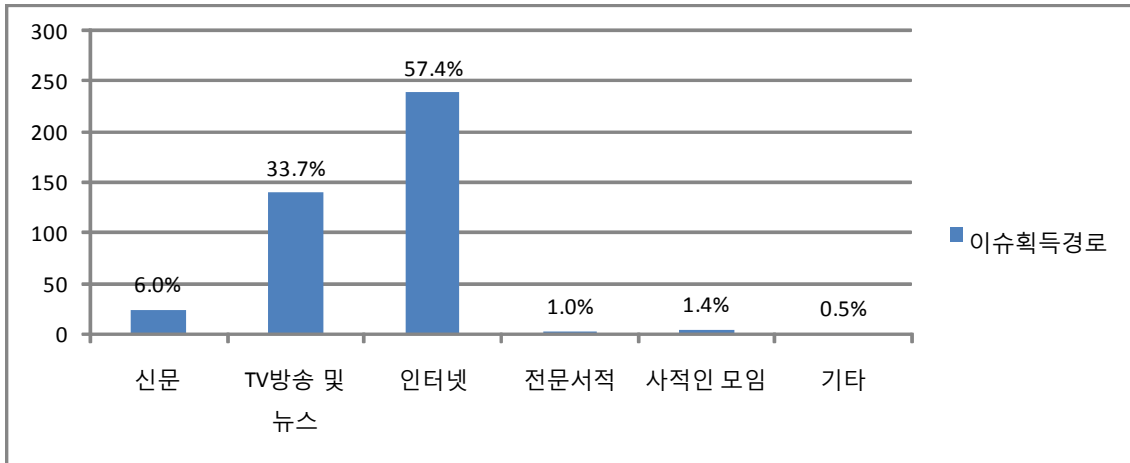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은 정보인권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관련 사건이나 이슈의 개인적 경험정도나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기서는 이러한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사회적 이슈화의 경로와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와 사건을 접하는지를 보고, 그러한 사회적 이슈화가 정보인권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다.

먼저, 아래의 <표 4-23>과 <그림 4-16>을 보면,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나 뉴스를 접하는 경로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0명이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여 인터넷이 사회적 이슈화 경로 중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총 141명이 TV방송 및 뉴스를 통해 이를 접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6.0%)에 의한 정보습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을 넘어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전달과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슈화의 경로가 편향됨으로 인해 정보인권의 인식에도 편향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매체에 따라 정보인권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시각과 이슈화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가정하면, 특정 매체에 집중되어 있는 이슈획득 경로는 사회적 이슈화 역시 특정 매체의 시각과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 4-23> 사회적 이슈화의 경로

이슈 획득 경로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신문	25	6.0	6.0
TV방송 및 뉴스	141	33.7	39.7
인터넷	240	57.4	97.1
전문서적	4	1.0	98.1
사적인 모임	6	1.4	99.5
기타	2	0.5	100.0
합 계	4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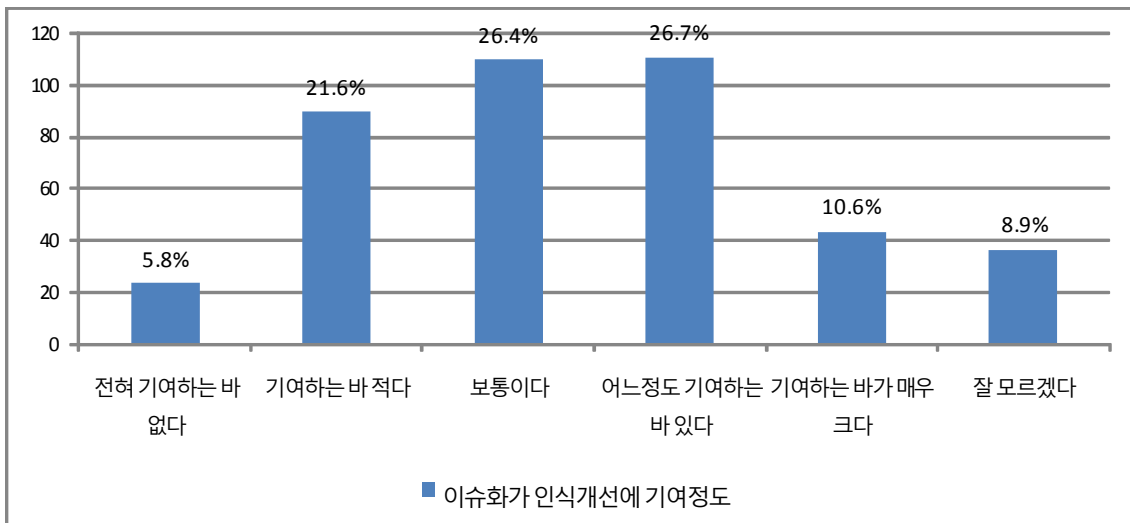
<그림 4-16> 사회적 이슈의 획득경로

이처럼 인터넷과 TV 방송이 시민들의 사회적 이슈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제 이러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이슈화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개선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평균은 3.1609로 평균이상의 인식개선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37.3%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정보인권 인식수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전체의 10.6%는 매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래의 <그림 4-17>에서 보듯이, 응답영역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 간 인식개선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이슈화의 정도가 큰 사건이나 이슈일수록 응답자의 인식정도가 높으며, 이러한 정보의 획득 경로가 사회적 확산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속도와 수준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정보인권이라는 범주에서 보았을 때에는 개별적인 사건과 이슈가 각 유형별 혹은 상위 개념상의 정보인권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정보인권 인식과 관련하여 개선효과가 적거나 없다는 응답 역시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응답영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 등의 편향적 매체를 통한 개별 사건 및 이슈 위주의 정보획득이 정보인권이라는 측면의 인식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4> 사회적 이슈화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개선 영향력

이슈화의 인식수준 기여정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기여하는 바 없다	24	5.8	5.8
기여하는 바 적다	90	21.6	27.4
보통이다	110	26.4	53.8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 있다	111	26.7	80.5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4	10.6	91.1
잘 모르겠다	37	8.9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3.1609		



<그림 4-17> 사회적 이슈화가 정보인권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2) 정보인권 보장 수준 및 현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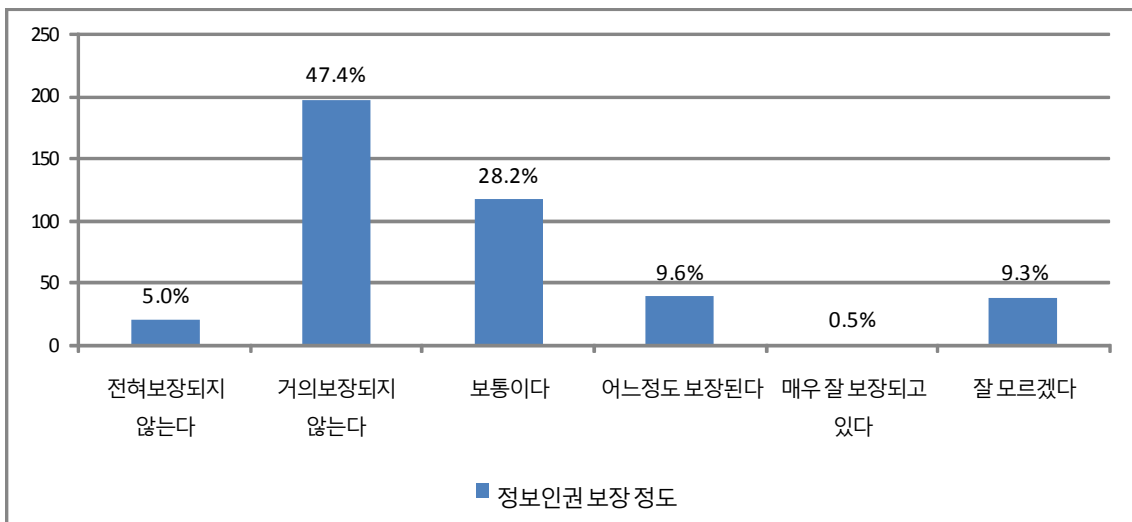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장되는 정보인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재의 정보인권 보장수준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인식, 정보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0-25>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2.4828로 대체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52.4%가 우리나라 정보인권이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거나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0.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4-18>에서 가시화되고 있듯이, 응답분포가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를 중심으로 좁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현재의 우리나라 정보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시민인식

정보인권 보장 수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21	5.0	5.0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198	47.4	52.4
보통이다	118	28.2	80.6
어느 정도 보장된다	40	9.6	90.2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2	0.5	90.7
잘 모르겠다	39	9.3	100.0
합 계	418	100.0	
응답 평균	2.4828		



<그림 4-18> 정보인권 보장정도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보장수준이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정보인권이 침해 혹은 훼손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26>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토대로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및 경찰이 가장 높은 24.4%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민간기업도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2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개인이 15.9%, 국회 및 정당 등 정치인 집단이 15.6%, 기타 행정부 등 정부기관이 11.2%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정보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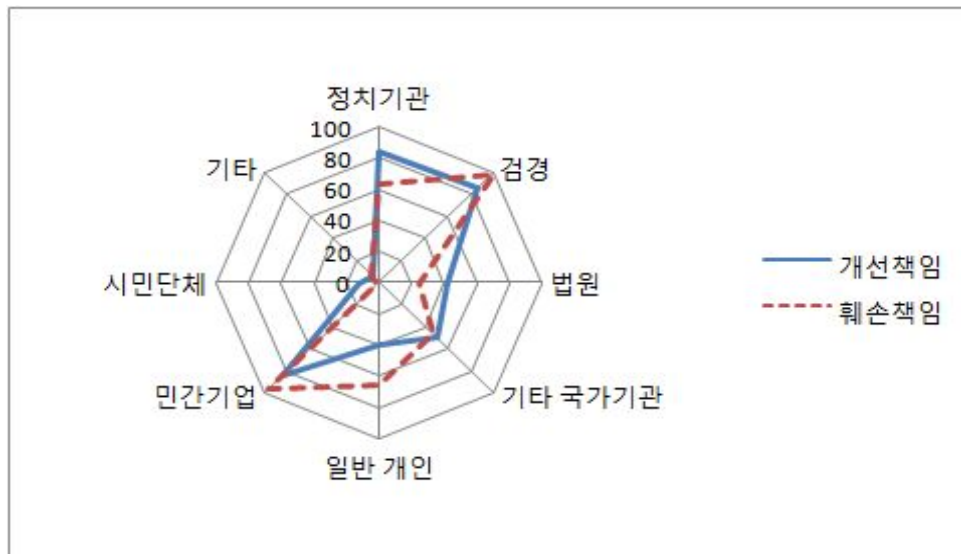
침해의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64	15.6	15.6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100	24.4	40.1
	법원	25	6.1	46.2
행정기관		46	11.2	57.5
일반 개인		65	15.9	73.3
민간기업		100	24.4	97.8
시민단체		2	0.5	98.3
기타		7	1.7	100.0
합계		409	100.0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임 혹은 개선활동의 주체로는 아래의 <표 4-27>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인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선할 책임도 함께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답자의 21.1%가 검찰 및 경찰이, 20.8%가 민간기업이 정보인권 개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개선책임은 정보인권 관련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국회 및 정당(20.6%), 행정기관(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7> 정보인권 개선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84	20.6	20.6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86	21.1	41.7
	법원	43	10.5	52.2
행정기관		52	12.7	65.0
일반 개인		40	9.8	74.8
민간기업		85	20.8	95.6
시민단체		12	2.9	98.5
기타		6	1.5	100.0
합계		408	100.0	

이처럼 정보인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아래의 <그림 4-19>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인권의 훼손책임에 비해 개선책임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 민간기업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정치기관과 법원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훼손책임은 크지만 개선책임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는 정보인권 상황의 개선에 있어서는 개인보다 국가기관 및 기업과 같은 조직 및 국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9> 정보인권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제3절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따른 시민인식

한편, 개별적인 정보인권 분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파트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향유주체로서 혹은 보호대상으로서 얼마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권리분야와 관련되는 이슈나 사건이 정보인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정보인권은 어떤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1. 정보 프라이버시권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공공기관 및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차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3가지 주요 사안별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개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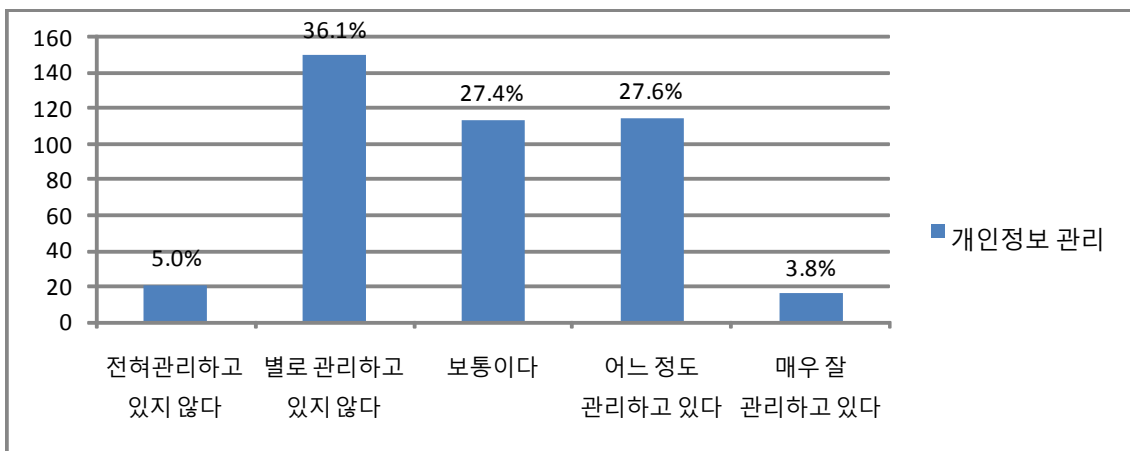
여기서는 평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향유하기 위해 어떠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에 등록한 사이트나 개인계정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거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신상 정보 등의 타인에 대한 노출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강화되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4-28>에서 보면, 개인정보 관리 등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2.8918로서 위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다소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41.1%가 자신의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대체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리를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그림 4-20>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노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영역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인차원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밀번호 주기적 변환 등은 각종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실질적으로 법적 행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일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정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간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 거대조직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회적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작 개인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고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정보인권을 자신이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수단이자 권리임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4-28>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개인차원 프라이버시 관리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21	5.0	5.0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150	36.1	41.1
보통이다	114	27.4	68.5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	115	27.6	96.2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16	3.8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2.8918		



<그림 4-20> 개인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개인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4-29>와 같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2.3101로 사회적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68.5%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별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전체의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사회적 보호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4-2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응답분포가 ‘별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를 중심으로 상당히 좁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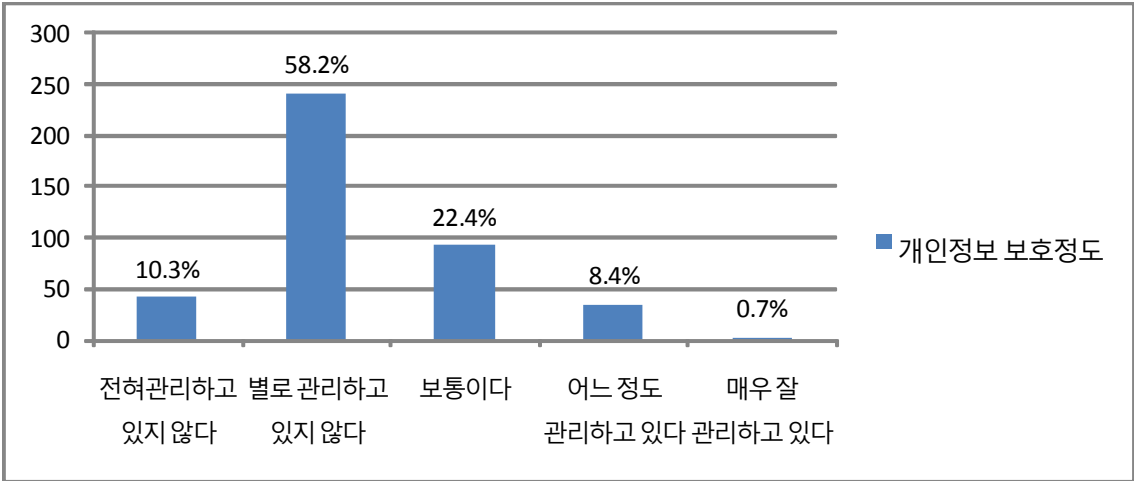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실제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제가 불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정부기관이나 대형

민간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나 도용 등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 노력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이처럼 사회적 수준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것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인권 역시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이 국가나 집단 등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 권리에서 개념적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공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와 침해에 대한 대응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표 4-29>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개인정보 보호정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	43	10.3	10.3
별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242	58.2	68.5
보통이다	93	22.4	90.9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	35	8.4	99.3
매우 잘 보호되고 있다	3	0.7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2.3101		



<그림 4-21>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수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 및 이슈,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아래의 <표 4-30>은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되어 쟁점이 되었던 이슈 혹은 사건의 인식평균값으로서, 표를 통하여 공공질서 등의 공적 목적과 연관될수록 침해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개인 고유의 영역에의 침입과 관련하여 비록 수사를 위해서지만 침해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되는 3개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안별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 의식을 분석하였다.

<표 4-30> 정보 프라이버시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쟁점 사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방범CCTV	418	1.00	5.00	2.8397	0.98704
범죄인신상공개	416	1.00	5.00	2.3341	1.09165
이메일압수수색	414	1.00	5.00	3.2319	1.05047
지문등록	416	1.00	5.00	2.8053	1.06333
건강정보통합	416	1.00	5.00	2.8149	0.98022

(1)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문제

먼저,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는 최근 범죄예방 및 쓰레기 투기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CCTV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준으로만 정해져 있거나 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일상적 생활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소지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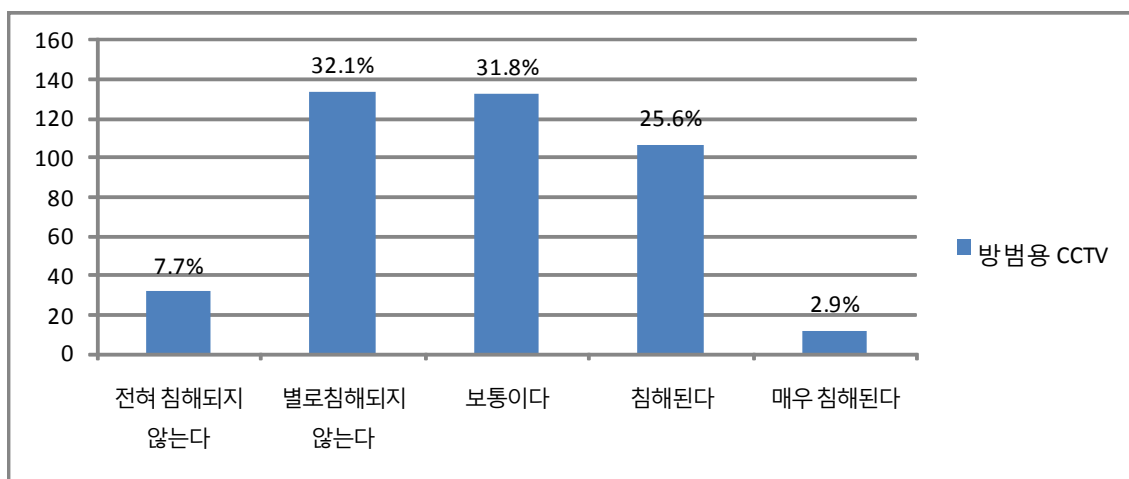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31>과 <그림 4-22>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8397로서 설문 응답자들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행위가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그다지 침해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39.8%가 이에 대해 침해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전

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별 정보인권 간의 가치충돌 외에도 사회적 혹은 경제적 효율성 등 다른 가치와도 정보인권이 경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CCTV의 설치 자체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나 불법주정차 등 삶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보인권의 침해 가능성은 가치 경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러한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범죄자 검거 등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이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1>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CCTV

방법용 CCTV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32	7.7	7.7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134	32.1	39.7
보통이다	133	31.8	71.5
침해된다	107	25.6	97.1
매우 침해된다	12	2.9	100.0
합 계	418	100.0	
응답 평균	2.8397		



<그림 4-22> 방법용 CCTV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2) 범죄인 신상공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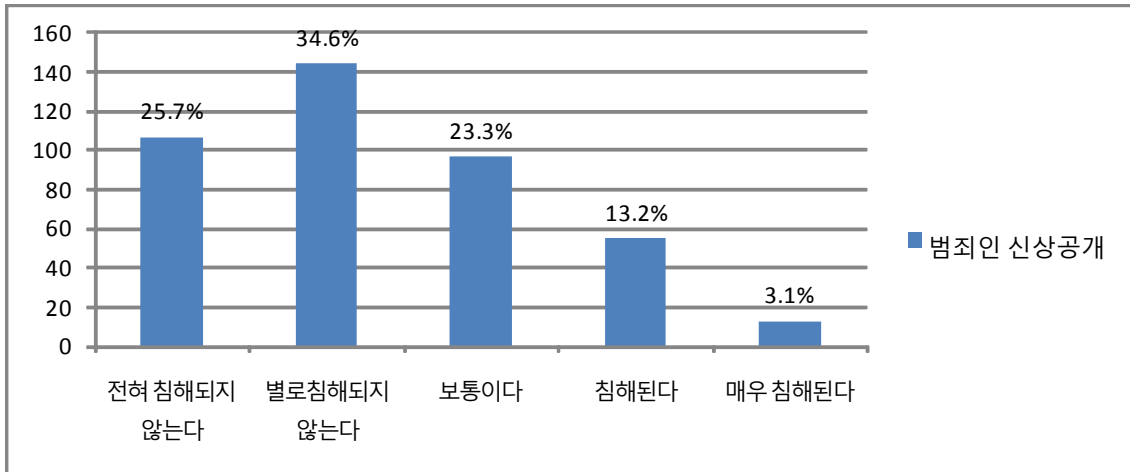
두 번째 사안은 범죄인 신상공개에 대한 이슈로서 현재 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인 절차 외에도 최근의 흉악살인범에 대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신상정보의 공개 등이 이루어졌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행위는 재범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상공개라는 극단적 낙인화를 통해 사회적 처벌 및 재범발생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여부를 떠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32>와 <그림 4-2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3341로 설문응답자들은 범죄인의 신상공개가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16.3%로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이들이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사안에 따라서는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인권 상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한 권리의 제약이나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때에 따라서는 집단적 논리나 감정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복잡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의 특성상 우선시 되는 가치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표 4-32>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범죄인 신상공개

범죄인 신상공개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107	25.7	25.7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144	34.6	60.3
보통이다	97	23.3	83.7
침해된다	55	13.2	96.9
매우 침해된다	13	3.1	100.0
합 계	416	100.0	
응답 평균	2.3341		



<그림 4-23> 범죄인 신상공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 문제

세 번째 사안은 범죄수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사적인 이메일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공익의 시급한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공간에 대한 감시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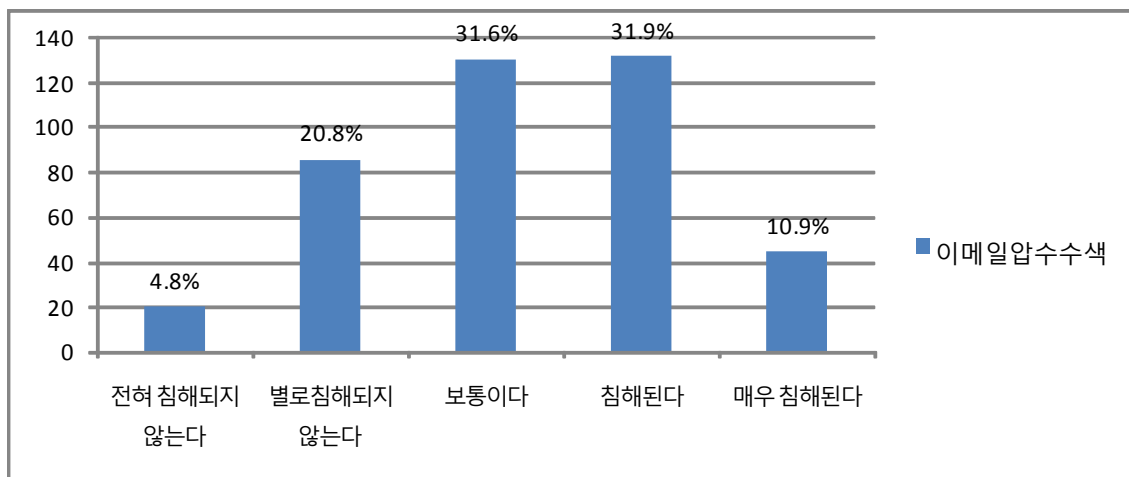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33>과 <그림 4-2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3.2319이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74.7%가 개인 통신의 감청이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통신감청 및 압수수색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침해하는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도 1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익의 분명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통신이나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매체에 대한 침해를 적극적인 권리침해로 인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영유하는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개인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 하는 과거의 사생활의 일부분까지 어딘가에 기록되어 현재의 인격이나 삶의 조건을 훼손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감시나 불법적 기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리라 기대되는 공익적 목적보다 침해될 수 있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감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보인권의 침해정도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3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20	4.8	4.8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86	20.8	25.6
보통이다	131	31.6	57.2
침해된다	132	31.9	89.1
매우 침해된다	45	10.9	100.0
합 계	414	100.0	
응답 평균	3.2319		



<그림 4-24> 이메일 압수수색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앞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보인권의 침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구체화된 유형의 정보인권으로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및 개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항에 대해 아래의 <표 4-34>에서 나타나듯이 정보 프라이버시권 훼손의 가장 큰 책임은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29.6%)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 및 경찰(24.8%)과 정치기관(14.1%), 행정기관(11.9%)의 순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기관보다 민간기업에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은 온·오프라인에서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는 개인 정보 및 기업이 수집한 개인 정보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관리가 이들에 의해서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 혹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으로 대량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정작 이러한 정보인권의 침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으며, 검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경우 최근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권한으로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사적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데에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3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58	14.1	14.1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102	24.8	38.8
	법원	23	5.6	44.4
행정기관		49	11.9	56.3
일반 개인		45	10.9	67.2
민간기업		124	30.1	97.3
시민단체		5	1.2	98.5
기타		6	1.5	100.0
합 계		4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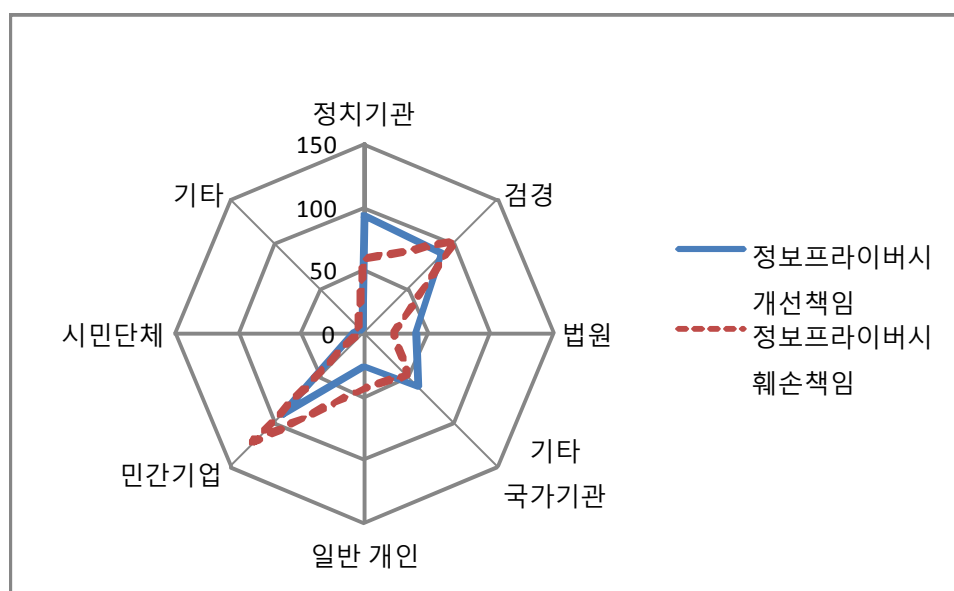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항에 대해 아래의 <표 4-35>에서 나타나듯이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선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포털 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22.4%)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기업이 가진 개인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무도 결국 이들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책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못지 않게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치기관(22.4%)의 역할도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수사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및 경찰(21.5%)의 역할도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선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92	22.4	22.4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88	21.5	43.9
	법원	41	10.0	53.9
행정기관		60	14.6	68.5
일반 개인		27	6.6	75.1
민간기업		92	22.4	97.6
시민단체		7	1.7	99.3
기타		3	0.7	100.0
합 계		410	100.0	

이처럼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아래의 <그림 4-25>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인권의 훼손책임에 비해 개선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를 담당하는 정치기관의 역할을 좀 더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는 정보 프라이버시권 상황의 개선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개인 정보의 침해에 대한 방지 및 침해자에 대한 처벌 등 법제적 정비 측면에서 국회 등 입법관련 기관의 책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림 4-25> 정보 프라이버시권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이때의 자유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지니고 의사를 개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의사표현에 어떠한 제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수준을 조사하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개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개인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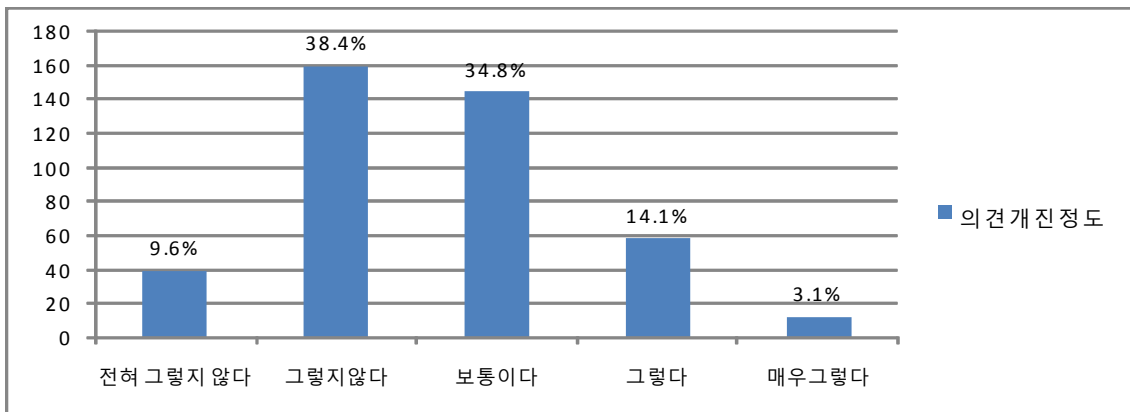
여기서는 평소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공개된 사이트 등에 답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활발하게 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아래의 <표 4-36>을 보면,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 공개된 사이트 등에 글을 게재하거나 답글을 다는 등의 표현 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평균은 2.6283이며 <그림 4-26>에서 의견개진 정도가 그렇지 않다는 영역에 넓게 분포되어 온라인상에서 표현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52.0%가 평소에 온라인상에서 의견개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48.0%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의사표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3.1%에 불과해 평소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활동에 대체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의사표현 활동의 정도는 이러한 활동으로 수반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침해에 대한 대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표 4-36> 개인 차원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의사 개진 정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40	9.6	9.6
그렇지 않다	160	38.4	48.0
보통이다	145	34.8	82.7
그렇다	59	14.1	96.9
매우 그렇다	13	3.1	100.0
합 계	417	100.0	
응답 평균	2.6283		



<그림 4-26> 개인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2)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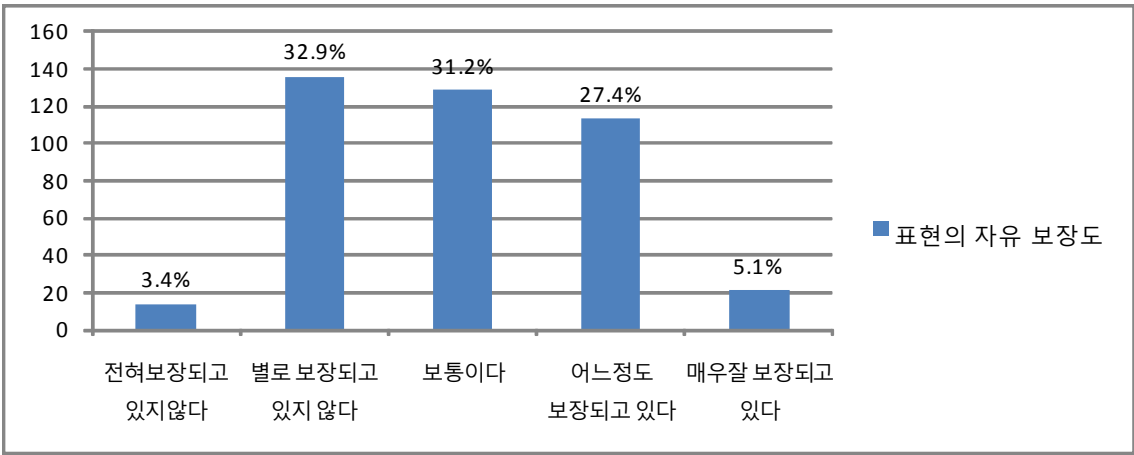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아래의 <표 4-37>과 <그림 4-26>에서 알 수 있듯이 견해가 어느 정도 동질적이지 않고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응답자 평균이 2.9782로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조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2.5%는 보장 정도가 높다고 보았지만, 응답자의 36.3%는 보장의 정도가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악성 댓글 등으로 심리적 괴로움을 겪다 자살에 이른 유명인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인터넷 상의 부분별한 욕설, 비방 등의 개인의 자유를 넘는 지나친 표현들이 논란이 되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슈가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이슈화가 된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보인다. 즉,

한 측면에서는 지나친 자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7>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14	3.4	3.4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136	32.9	36.3
보통이다	129	31.2	67.6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113	27.4	94.9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21	5.1	100.0
합계	413	100.0	
응답 평균	2.9782		



<그림 4-27> 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3) 사안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수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 및 이슈,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아래의 <표 4-38>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쟁점이 되었던 이슈 혹은 사건에 대한 침해인식의 평균값으로서, 표를 통하여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악성 댓글로 사생활이 침해되어, 유명인의 경우 자살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슈화되고 인터넷 상에 표현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제고되는 상황인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가 보호할 수 있는 가치들이 이슈화되어 다른 사건 혹은 이슈에 비해 침해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3개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안별 인식조사를 토대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 의식을 분석하였다.

<표 4-38>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쟁점 사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실명제	414	1.00	5.00	3.1618	1.04864
이메일압수수색	412	1.00	5.00	3.3034	1.05456
사이버모욕죄 신설	411	1.00	5.00	2.9027	1.07080
미네르바사건	408	1.00	5.00	3.3480	1.04984
비판글 징계	410	1.00	5.00	3.5610	1.05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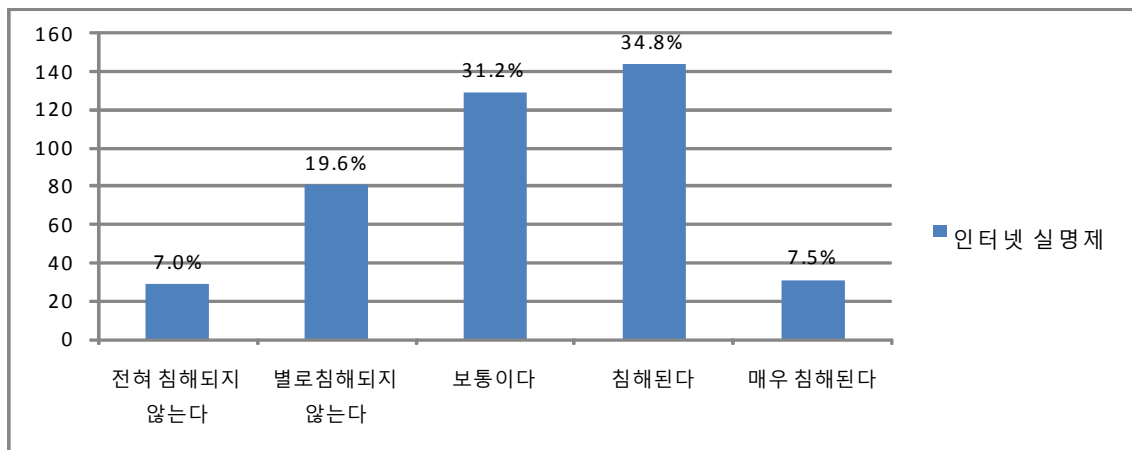
(1) 인터넷 주소 공개 및 실명제

인터넷 주소 공개 및 실명제 시행은 최근 연예인 등 사회적 공인에 대한 악의적 댓글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그로 인한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게 된 데 따라 각종 인터넷상의 매체에 의사개진을 하는 경우에 실명제 등록을 통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사실 등의 유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게시물 등을 작성한 개인의 인터넷 주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잠재적 용의자 신분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할 소지 역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39>와 <그림 4-28>에서 보듯이, 전체 설문 응답자 평균은 3.1618이며,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42.3%가 인터넷 주소공개나 실명제의 시행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의 보장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혹은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의적 활동과 아이디어가 교류된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정화활동이나 건전한 토론 및 비판문화의 정착을 통해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지나친 욕설 및 비방 등의 표현의 문제로 실명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들도 있어 응답자의 26.6%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표 4-39>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인터넷 실명제 및 주소공개

인터넷 실명제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29	7.0	7.0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81	19.6	26.6
보통이다	129	31.2	57.7
침해된다	144	34.8	92.5
매우 침해 된다	31	7.5	100.0
합 계	414	100.0	
응답 평균	3.1618		



<그림 4-28>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2)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사이버 모욕죄는 앞서 인터넷 실명제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개인 및 사회, 단체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상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워 온라인상의 특징을 반영한 법으로써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서 온라인상의 생활 및 활동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형법보다 온라인에서 적용이 보다 용이하게 명예훼손 행위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서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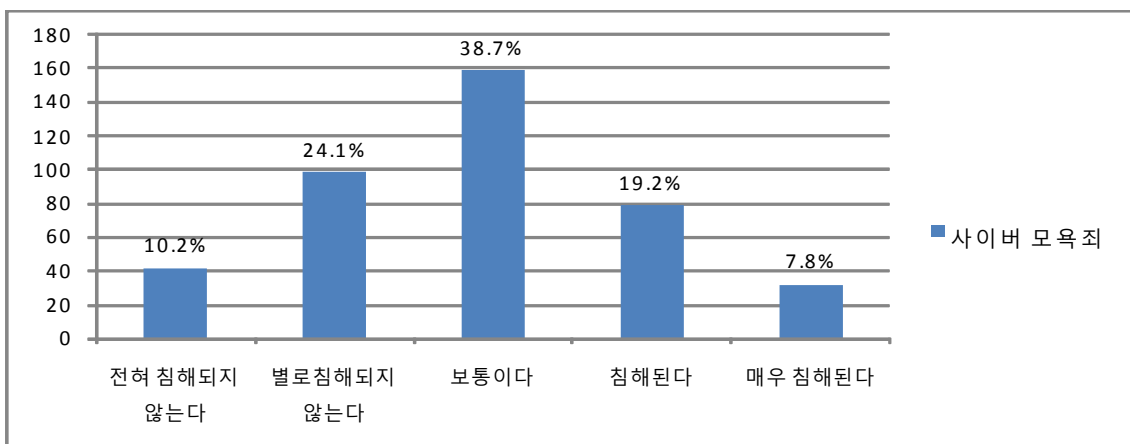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40>과 <그림 4-29>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9027이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4.3%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시 정치인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 당해 법률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결과를 우려하는 입장도 존재하여 응답자의 27%는 침해의 정도가 가시적인 수준에서 인식될 정도라고 보았으며, 7.8%는 매우 침해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앞선 <표 4-33>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차원에서의 의사개진 활동이 활발치 않아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그리 가시적이지 않은 정도의 침해로 여기는 견해가 많아 <그림 4-29>와 같이 인식의 분포가 중심에 집중되어 양측 대칭의 분포를 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의 방지 차원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서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어느 정도는 대립되고 있다 보인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의 의사 개진 활동이 활발치 않아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그리 가시적이지 않아 보인다.

<표 4-40>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42	10.2	10.2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99	24.1	34.3
보통이다	159	38.7	73.0
침해된다	79	19.2	92.2
매우 침해 된다	32	7.8	100.0
합 계	411	100.0	
응답 평균	2.9027		



<그림 4-29>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3) 사내 게시판의 비판 글에 대한 직원징계

사내 게시판의 비판 글에 대한 직원징계는 최근 들어 국가 혹은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사적인 글에 대한 물리적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 아이디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를 확인 징계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가 동시에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익명의 게시판에 사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에 대해 그 글이 오프라인 상에서 어떠한 효력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 정보화 사회에서 최근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이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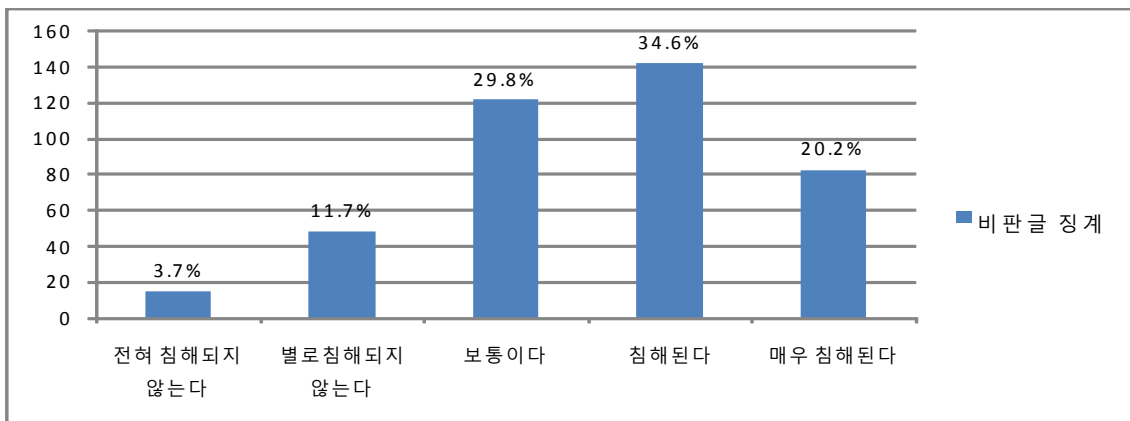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아래의 <표 4-41>과 <그림 4-30>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3.5610이며, 인식분포가 좌하향하고 있어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징계행위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4.8% 당해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가시적인 수준에서 침해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20.2%가 이에 대해 매우 침해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실제적 징계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타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어느 정도 공적 성격을 지닌 기업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는 악의적 댓글이나 명예 훼손적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적 성격이 강한 비판에 대한 처벌이나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부각이 되었다. 그러나 모욕 등과 같이 개인 수준에 대한 표현이 부각된 사례에 대하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친 표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인식과 제재로 인하여 공적 견해 표명마저 위축될 결과를 더욱 우려하는 견해가 대립됨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적 사항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대다수가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사안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사내 게시판
비판글에 대한 직원징계

비판글 징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15	3.7	3.7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48	11.7	15.6
보통이다	122	29.8	44.9
침해된다	142	34.6	79.8
매우 침해 된다	83	20.2	100.0
합 계	410	100.0	
응답 평균	3.5610		



<그림 4-30> 비판 글에 대한 직원 징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정보인권을 가장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아래의 <표 4-42>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26.2%가 정보인권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이 동시에 접속기록의 공개나 게시물 삭제, 블로그 폐쇄 등의 권한을 지니게 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수사권을 지닌 검찰 및 경찰(23.5%)을 비롯한 행정기관(14.0%), 사이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정치기관(15.7%) 등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포함되었다.

<표 4-42>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 침해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64	15.7	15.7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96	23.5	39.2
	법원	25	6.1	45.3
행정기관		57	14.0	59.3
일반 개인		50	12.3	71.6
민간기업		107	26.2	97.8
시민단체		5	1.2	99.0
기타		4	1.0	100.0
합 계		4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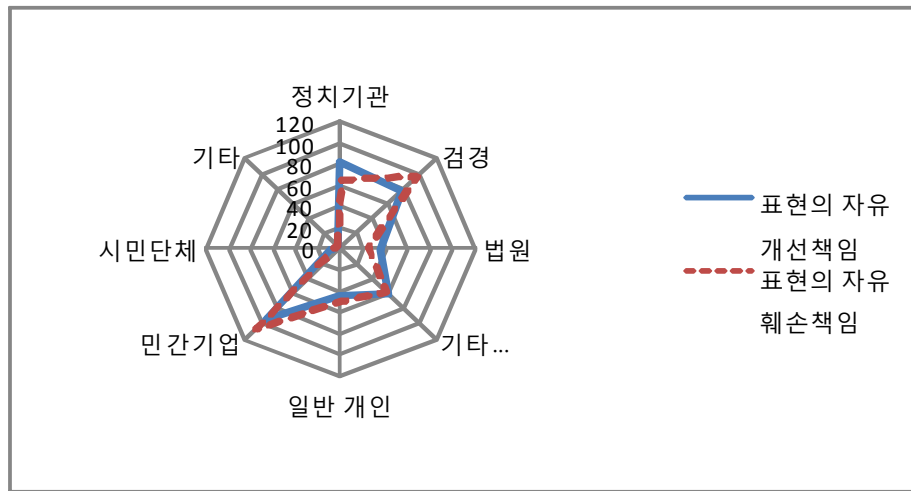
반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아래의 <표 4-43>에서 보듯이, 민간 기업(23.3%)이 가장 큰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순적이어 보이는 응답은 사실상 정보인권 관련 기업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동시에 침해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20.3%)이나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및 경찰(19.1%), 행정기관(14.7%) 역시 국가의 국민인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가장 기여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별 사안 등에 있어 공권력 등을 통해 이를 침해하는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43>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 개선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83	20.3	20.3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78	19.1	39.5
	법원	36	8.8	48.3
행정기관		60	14.7	63.0
일반 개인		44	10.8	73.8
민간기업		95	23.3	97.1
시민단체		8	2.0	99.0
기타		4	1.0	100.0
합 계		408	100.0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아래의 <그림 4-31>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정도가 그리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및 경찰에 대하여 훼손책임을 묻는 견해가 이들에 의한 표현의 자유 개선을 기대하는 견해보

다 많았으며, 앞서 대다수가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폭넓은 보장을 인정한다는 점에 미루어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 등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의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기관의 개선책임을 좀 더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31> 표현의 자유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3.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권은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차원에서 정보 접근권을 향유하기 위해 어떠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3가지 주요 사안별로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침해와 개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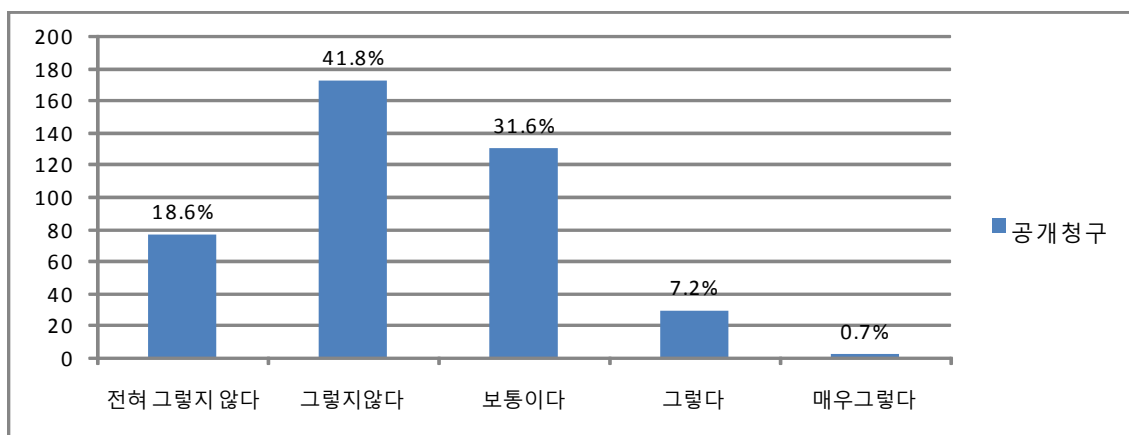
여기서는 정보 접근권의 대표적인 사안인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평소에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과 같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권 등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은 공적 정보의 경우 이를 공유하고 활용할 자유를 지닌다는 정보인권의 개념에

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개인차원의 적극적인 청구활동과 같이 권리향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44>와 <그림 4-3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2971이며, 정보 청구 노력의 응답분포는 ‘그렇지 않다’는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8.8%만이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정보접근권을 행사해 보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18.6%는 이러한 경험이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 접근권의 향유에 대한 개인차원의 노력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개인에게 복잡하거나 정보의 소재나 공개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와 충분한 정보의 미제공은 소극적 의미에서 이러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불분명한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 접근권 역시 개인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부여받은 권리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향유하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표 4-44>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정보 접근권 보호 수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77	18.6	18.6
그렇지 않다	173	41.8	60.4
보통이다	131	31.6	92.0
그렇다	30	7.2	99.3
매우 그렇다	3	0.7	100.0
합계	414	100.0	
응답 평균	2.2971		



<그림 4-32> 개인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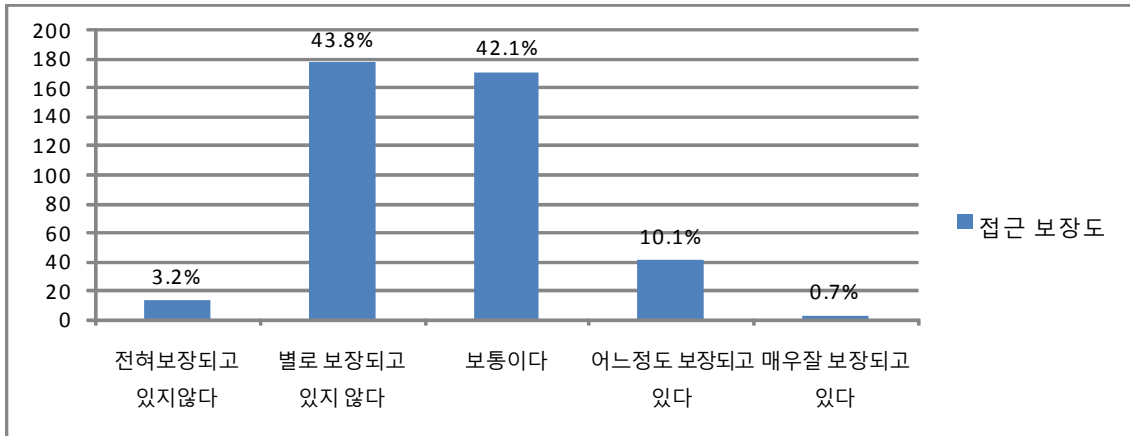
개인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호노력이 어느 정도 개인의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는 경우 그 결과로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제도에 따른 보호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절차 등의 법적 구성이 완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정보 접근권의 침해, 즉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의 불충분한 보장으로 정보 접근에의 기회를 제약하는 등의 침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45>와 <그림 4-3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6133이며,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10.8%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7.0%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여 여전히 정보 접근권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과거에 비해 행정절차법의 시행 등 법적·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실제 시행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 중 공적 성격을 지니는 정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공유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라는 개인적인 희생이 아직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장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45>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정보 접근권 보호 수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13	3.2	3.2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178	43.8	47.0
보통이다	171	42.1	89.2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41	10.1	99.3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3	0.7	100.0
합 계	406	100.0	
응답 평균	2.6133		



<그림 4-33>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3)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보호수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 및 이슈,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보 접근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아래의 <표 4-46>은 정보접근권과 관련되어 쟁점이 되었던 이슈 혹은 사건에 대한 침해인식의 평균값으로서, 표를 통하여 사건들의 평균값이 응답의 중앙값인 3을 기준으로 가깝게 형성되어 있으며, 앞선 인권들에 비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응답의 표준 편차가 작아 중앙값이 3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접근권의 경우 정부의 공공 목적을 위한 비밀 유지 혹은 정보제공의 효율성 등과 연관되어 다른 가치의 고려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의 사건 혹은 이슈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숙도가 정보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떨어지며 이슈화의 강도가 낮음을 고려할 때 응답자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 차원의 보호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일반인에겐 다소 친숙하지 않은 제도이며,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접근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소수자가 받는 실재의 침해보다 일반인들의 인식의 정도는 낮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3개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안별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시민 의식을 분석하였다.

<표 4-46> 정보 접근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쟁점 사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개정보의 웹문서화	409	1.00	5.00	2.8068	0.82803
공개거부 및 부분공개	410	1.00	5.00	3.0073	0.80793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408	1.00	5.00	2.9118	0.95452
디지털 방송전환	409	1.00	5.00	2.9976	0.90070
MS법원판결	408	1.00	5.00	3.3382	0.97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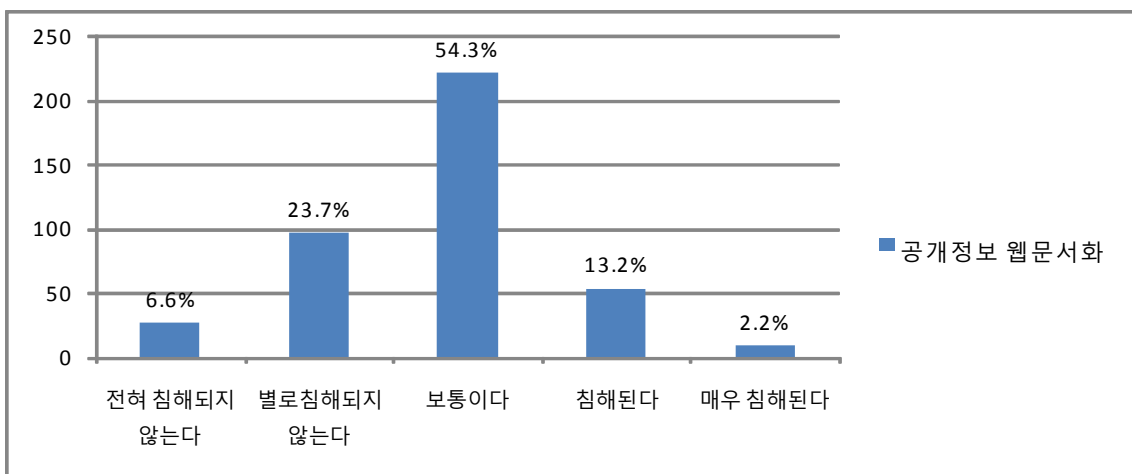
(1)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는 일면 정보화 사회의 진전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변화로 볼 수도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일반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향상되어 웹상에서 문서작업이 보편화되고 이를 통한 문서의 절감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능률성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정보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웹의 이용이 미숙한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일반인의 웹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고연령층이나 사회적 소수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컴퓨터 활용을 위해서 동등하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정보의 경우 출간물을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공적 정보 이용의 다양한 접근경로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대용량의 정보의 경우 출판물이 아닌 경우에 이의 출력을 위해 개인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정보 유통 및 활용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권의 침해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정보의 웹문서화의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해 아래의 <표 4-47>과 <그림 4-34>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8068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소 많으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0.3%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보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5.4%로 대부분은 그 침해 정도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의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가 정보 접근권에 있어 지니는 이중적 의미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보의 웹문서화는 한편으로는 웹 활용성 등에 따라 접근권을 차별할 소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던 공공정보의 공개를 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개한다는 접근성 개선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4-47>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27	6.6	6.6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97	23.7	30.3
보통이다	222	54.3	84.6
침해된다	54	13.2	97.8
매우 침해된다	9	2.2	100.0
합 계	409	100.0	
응답 평균	2.8068		



<그림 4-34> 공개정보 웹문서화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2) 정보공개청구의 부분공개 및 공개거부

정보공개청구의 부분공개 및 공개거부는 청구된 정보공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청구절차나 공개시간의 지연 등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소극적 침해라면, 부분공개 및 공개거부행위는 해당 정부기관이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표시 및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보 접근권의 직접적인 침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 공개 및 공개 거부의 경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리과정이 진행 중인 사안, 개인신상정보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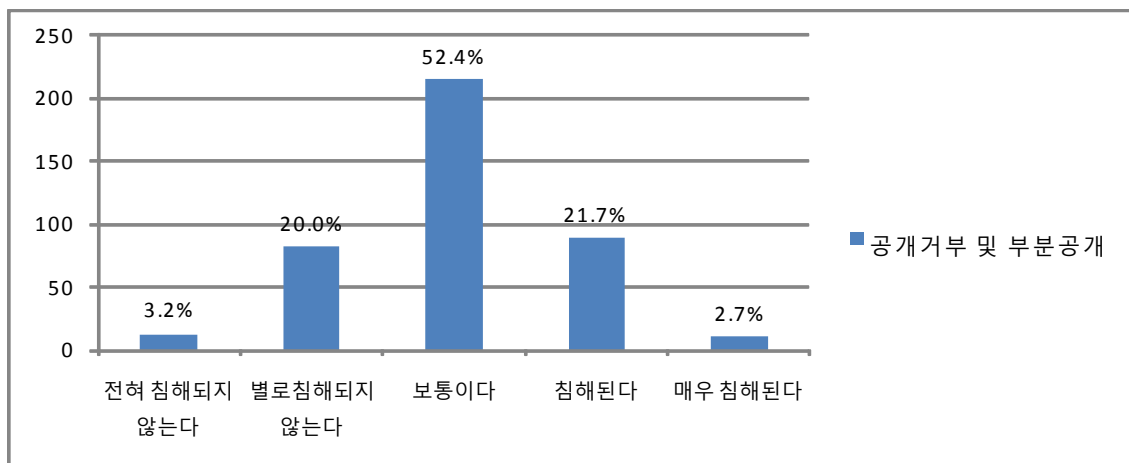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48>와 <그림 4-35>에서 보듯이,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시적인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 응답자 평균이 3.0073으로 침

해한다고 보는 인식이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3.2%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반면, 응답자의 24.4%는 명확하게 침해를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정보가 가지는 성격에 따라 비공개가 가지 사회적 이득이 있는 경우가 있어 비록 청구자의 접근권이 침해되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접근권을 행사한 개인의 명확한 청구행위가 존재한 후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공개 및 공개거부라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의 경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거부와 거부가 가지는 직접적인 권리 침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여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적극적 열람 활동을 하는 33명의 응답자의 경우 15.2%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36.4%는 명확하게 침해가 된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9.1%는 대단히 침해가 된다고 답하였다.)

<표 4-48>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개청구정보의 부분공개 및 거부

정보공개 청구의 거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13	3.2	3.2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82	20.0	23.2
보통이다	215	52.4	75.6
침해된다	89	21.7	97.3
매우 침해된다	11	2.7	100.0
합 계	410	100.0	
응답 평균	3.0073		



<그림 4-35> 공개청구정보의 부분공개 및 거부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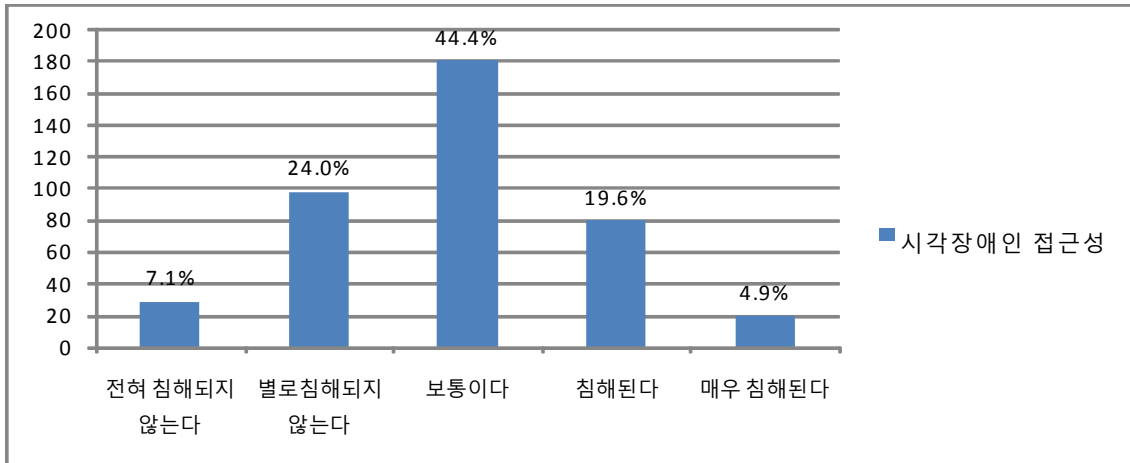
(3) 시각 장애인의 웹접근성

시각 장애인의 웹접근성은 시각적 장애를 지닌 시민이 시각적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웹환경을 이용할 경우,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각 장애인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정보 접근성 침해에 대해서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그 중요도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보인권을 다루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49>와 <그림 4-36>에서 알 수 있듯이,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시적인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 응답자 평균이 2.9118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이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1.1%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시각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웹 환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영상정보만을 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웹 환경에서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법제의 변화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증진을 고려한 제안이 있었던 반면에, 이를 평시에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어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설문에 대한 답변이 중양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4-49>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시각 장애인의 웹접근성

장애인 웹접근성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29	7.1	7.1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98	24.0	31.1
보통이다	181	44.4	75.5
침해된다	80	19.6	95.1
매우 침해된다	20	4.9	100.0
합 계	408	100.0	
응답 평균	2.9118		



<그림 4-36>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의 정보 접근권 침해 인식

4) 정보 접근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이의 개선에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먼저 정보 접근권을 가장 침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50>에서 보듯이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기타 국가기관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 접근활동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19.5%),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18.5%),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17.3%) 등이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정보 접근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접근권 침해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75	18.5	18.5
	수사기관(검찰, 경찰)	79	19.5	38.0
사법기관	법원	44	10.9	48.9
	행정기관	95	23.5	72.3
일반 개인		24	5.9	78.3
민간기업		70	17.3	95.6
시민단체		12	3.0	98.5
기타		6	1.5	100.0
합 계		4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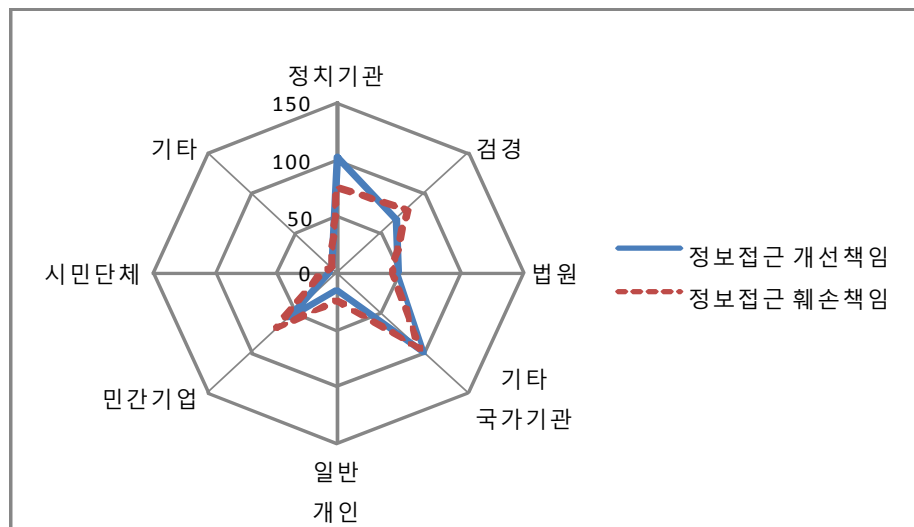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51>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24.7%)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

(25.4%)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관이 정보공개청구 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행위 등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관련 입법화 및 정책화를 통해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51> 정보 접근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접근권 개선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사법 기관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103	25.4	25.4
	수사기관(검찰, 경찰)	67	16.5	42.0
	법원	49	12.1	54.1
행정기관		100	24.7	78.8
일반 개인		16	4.0	82.7
민간기업		56	13.8	96.5
시민단체		7	1.7	98.3
기타		7	1.7	100.0
합 계		405	100.0	

이처럼 정보 접근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아래의 <그림 4-37>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정도가 그리 차이가 있지는 않다. 정보인권의 훼손 책임에 비해 개선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를 담당하는 정치기관의 역할을 좀 더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는 정보 접근권 개선에 있어서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의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에 대한 법제도 측면에서 국회 등 입법관련 기관의 책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림 4-37> 정보 접근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4. 정보문화 향유권

정보문화 향유권이란 정보문화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지식재산을 사회 문화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정보 문화 향유권은 실정법적으로 정의되거나 선언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고 그 효용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지식 및 정보에 대해 상품적·화폐적 가치가 부여된 재산의 일종으로 보는 법제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은 이에 대한 반대적 권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 향유권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실정법 체계 상위에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그 구성원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참여와 향유를 통해 계승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공유적 특성을 무시하고 계층이나 지역 등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이용가치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자 문화 향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최근의 국립공원 등지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는 국립공원이라는 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향유권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가치 역시 변화하여 정보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문화는 자유롭게 창의적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한한 복제와 대량 생산이 손쉽게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제와 모방은 모든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지만, 실정법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이 보호받게 되면서 정보문화 향유권의 입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회 혹은 문화적 기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 향유권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창작물도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속하고 경험한 문화의 기여를 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창작물의 재산적 혹은 문화적 가치 역시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문화 향유권은 저작권법 등의 실정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저작권 등의 범위를 제외한 순수 개인적 창작물의 자발적 공유와 공적 정보 문화의 공유만을 정보문화 향유권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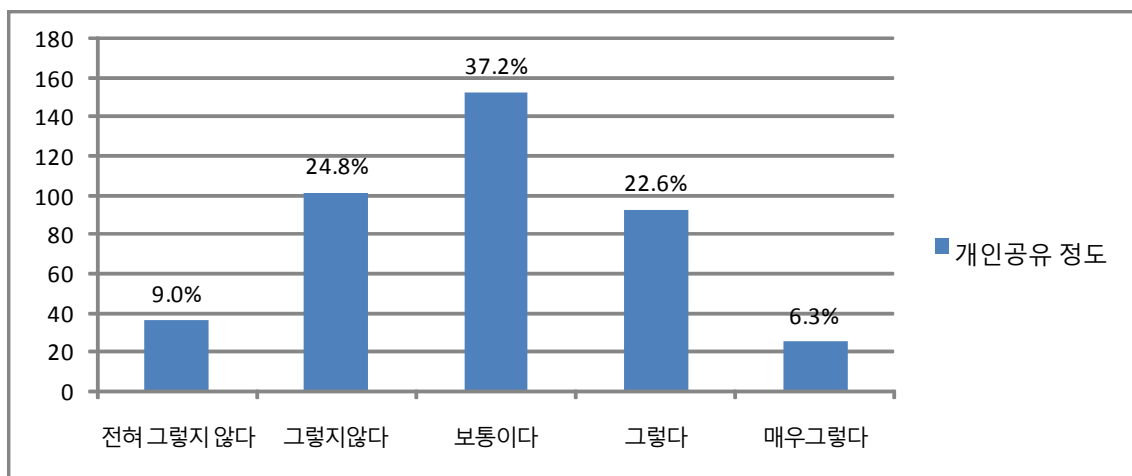
1)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본 설문조사에서는 정보문화 향유권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향유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였다. 이는 평소에 개인 블로그 등에서 작성한 글이나 사진, 음원과 같은 개인적인 창작물을 타인과 자유롭게 활발하게 공유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52>와 <그림 4-38>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2.9246이며, 타인과 활발하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응답자의 33.8%인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에서 개인적 차원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28.9%는 활발하게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정보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보문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보호하고, 이러한 문화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개인적 창작물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2>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정보문화 향유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7	9.0	9.0
그렇지 않다	102	24.8	33.8
보통이다	153	37.2	71.0
그렇다	93	22.6	93.7
매우 그렇다	26	6.3	100.0
합 계	411	100.0	
응답 평균	2.9246		



<그림 4-38>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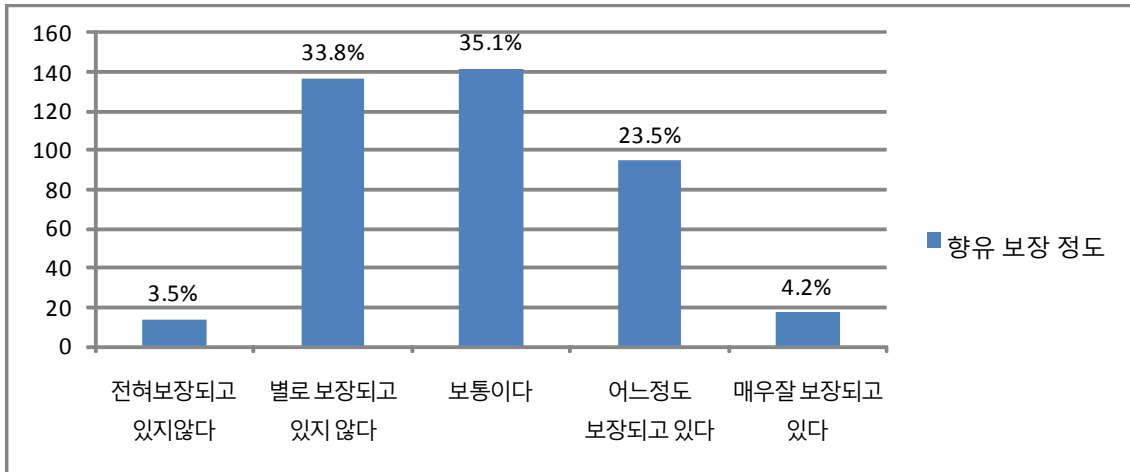
2)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그 보호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53>과 <그림 4-39>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9111이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된다고 보는 견해가 27.7%인 반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37.3%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 있어 P2P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개인 저작물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들에 의하여 공유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어 제도적으로 이러한 공유가 지지받지 못하며, 공유를 지원해 줄 다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여 공유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복제 및 배포자와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유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소위 ‘저작권 삼진 아웃제’와 같은 법제 변화의 방향 등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저작권 강화, 유명 음원 공유 프로그램의 유료화 등의 사례 등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에 비하여 향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못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정보문화의 공유는 사적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으로서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도 물론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이들 양 가치 사이의 조화문제는 어느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설문 결과 이러한 점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4-53>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정보문화 향유권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14	3.5	3.5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137	33.8	37.3
보통이다	142	35.1	72.3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95	23.5	95.8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17	4.2	100.0
합계	405	100.0	
응답 평균	2.9111		



<그림 4-39>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3)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보호수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 및 이슈,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보문화 향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3개의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사안별 인식을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 4-54>는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되어 쟁점이 되었던 이슈 혹은 사건에 대한 침해인식의 평균값으로서, 표를 통하여 일반 시민은 개인의 저작권,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권리 침해의 정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콘텐츠 공유와 저작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에 대하여는 비교적 침해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나, 개인이 구입한 콘텐츠를 본인조차 다른 기기에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침해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정보의 향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의 저작권 강화에도 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침해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보 향유권과 관련되는 3개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안별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보 향유권에 대한 시민 의식을 분석하였다.

<표 4-54> 정보 향유권 쟁점 사항에 따른 침해수준 인식 평균값

쟁점 사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기기 간 콘텐츠 이동 금지	408	1.00	5.00	3.2328	1.01691
저작권 삼진 아웃	408	1.00	5.00	3.1201	0.96768
포털 사이트 미리보기방지	404	1.00	5.00	3.0965	0.99781
공공장소 콘텐츠 공유 금지	408	1.00	5.00	2.7451	1.11003
소셜시효의 연장	403	1.00	5.00	2.9826	0.9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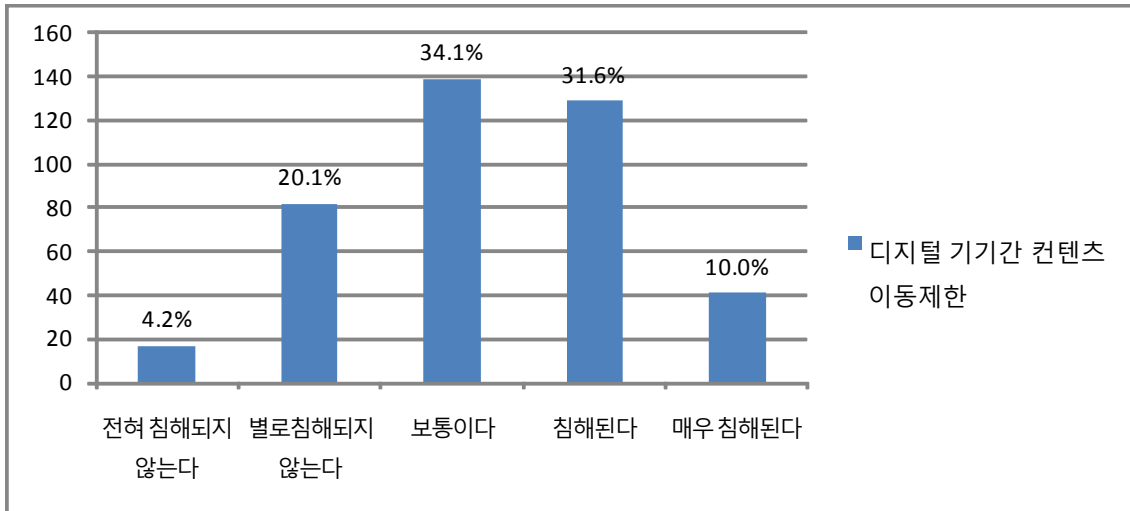
(1) 디지털 기기 간 음원 등 콘텐츠 이동 제한

디지털 기기 간 음원 등 콘텐츠 이동 제한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구매한 개인 창작물 혹은 콘텐츠의 소유 및 활용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정보문화 콘텐츠는 디지털 기기와 같은 정보화 수단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 문화 콘텐츠의 구매된 활용 가치를 개인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기계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기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디지털 기기에 따라 각기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구매한 본인마저도 다른 기기를 통하여 동일 콘텐츠를 향유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55>와 <그림 4-40>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3.2328이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41.6%가 명확하게 이러한 제한조치가 정보문화 향유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0.2%가 이에 대해 정보문화 향유권이 매우 침해된다고 응답하여 콘텐츠 이동제한에 따른 정보인권의 침해수준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디지털 기기 간 콘텐츠 이동 제한

콘텐츠 이동제한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17	4.2	4.2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82	20.1	24.3
보통이다	139	34.1	58.3
침해된다	129	31.6	90.0
매우 침해된다	41	10.0	100.0
합계	408	100.0	
응답 평균	3.2328		



<그림 4-40> 디지털 기기간 콘텐츠 이동 제한의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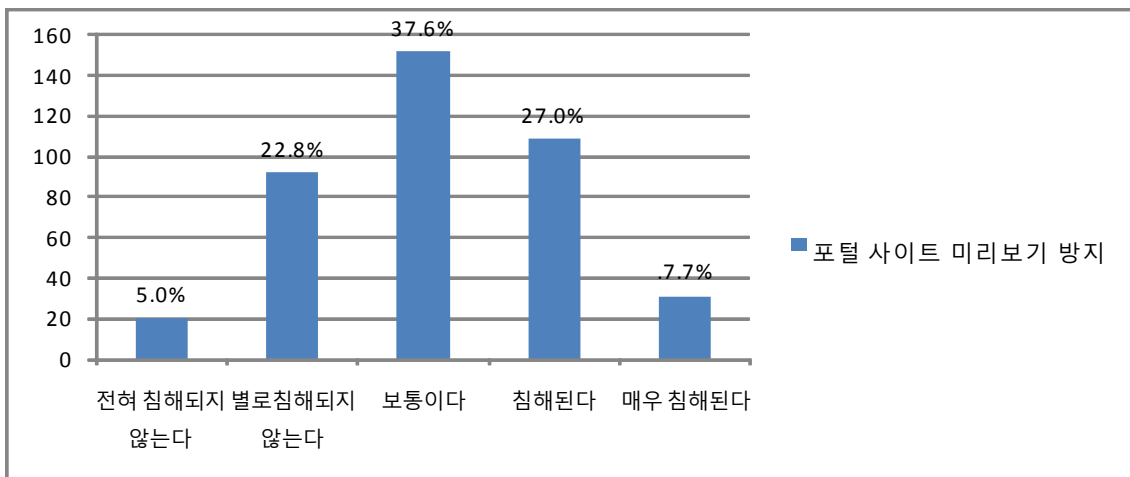
(2) 포털 사이트 내 사진 미리보기 금지

포털 사이트 내 사진 미리보기 금지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진 미리보기 등을 통해 화면상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활용하는 등 정보 콘텐츠에 대한 재산권적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가치에 대한 경제적 지불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검색 등을 통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단 복제 및 게재 등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56>과 <그림 4-41>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이 3.0965이므로 이를 정보문화 향유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다소 많았다. 이는 사진 미리보기 금지 등이 정보문화 소비자로서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이용이 아닌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작권 등을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 가치의 경합이 있음으로 인식이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침해로 인식하는 경우 정보문화 콘텐츠가 시장의 상품과 같이 거래된다면, 그에 대한 소비자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기술적 문제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인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표 4-56>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포털 사이트 내
미리보기 금지

미리보기 금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20	5.0	5.0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92	22.8	27.7
보통이다	152	37.6	65.3
침해된다	109	27.0	92.3
매우 침해된다	31	7.7	100.0
합계	404	100.0	
응답 평균	3.0965		



<그림 4-41> 포털 사이트 미리보기 금지의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3)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의 콘텐츠 공유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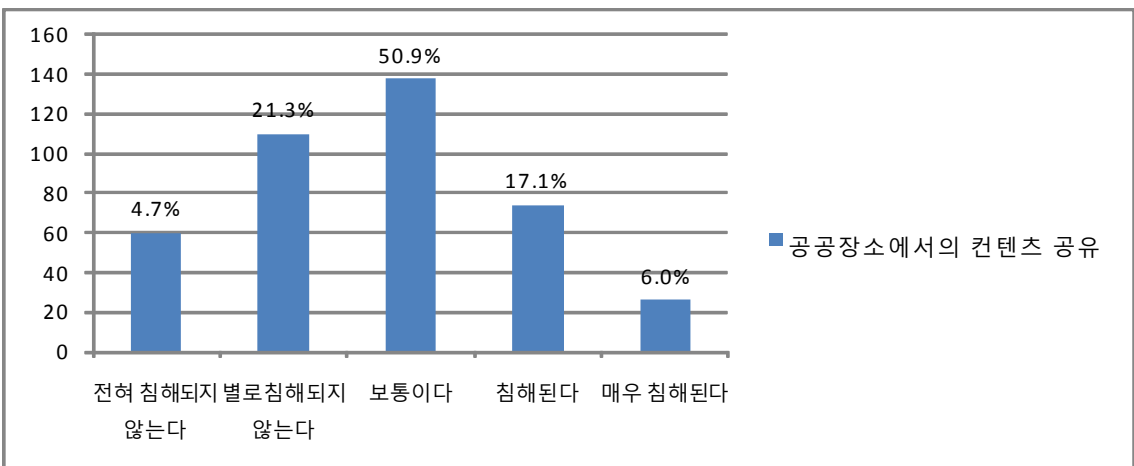
공공장소에서의 콘텐츠 공유 금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거나 공연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의 공공장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된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볼 것인가도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표 4-57>과 <그림 4-42>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451이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4.5%가 명확하게 이러한 조치가 정보문화 향유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위의 다른 사례에 비해 침해정도를 낮게 보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장소에서의 콘텐츠의 이용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57>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에서 콘텐츠 공유 금지

콘텐츠 공유 금지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60	14.7	14.7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110	27.0	41.7
보통이다	138	33.8	75.5
침해된다	74	18.1	93.6
매우 침해된다	26	6.4	100.0
합계	408	100.0	
응답 평균	2.7451		



<그림 4-42> 커피숍 등에서의 콘텐츠 공유 금지의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인식

4)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개선하는데 책임소재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58>에서 보듯이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22.6%)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종 콘텐츠를 제공 혹은 판매하는 기업이 앞서 디지털 기기 간 공유 금지와 같이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

은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에 일반 개인(17.7%)의 책임이 국가기관(17.9%)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개인의 콘텐츠 무단 복제와 다운로드 행위 등 문화를 무료로 향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인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내 사진 미리보기 금지 등 개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공유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야기하는 정보문화 향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58>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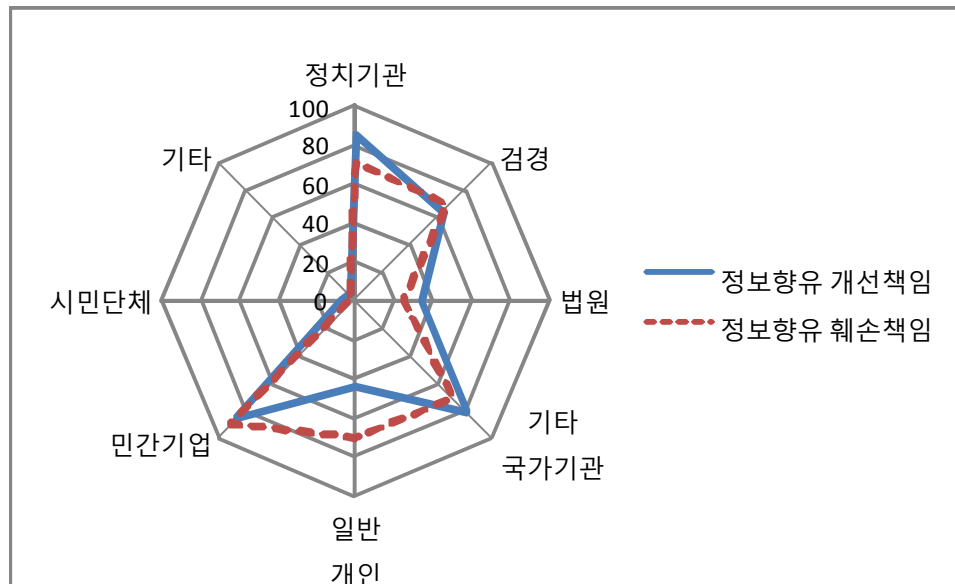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70	17.4	17.4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68	16.9	34.2
	법원	25	6.2	40.4
행정기관		72	17.9	58.3
일반 개인		71	17.6	75.9
민간기업		91	22.6	98.5
시민단체		3	0.7	99.3
기타		3	0.7	100.0
합 계		403	100.0	

한편,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이 개선되는데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4-59>에서 보듯이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21.2%)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문화 향유 및 공유를 위한 각종 기반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21.0%), 행정기관(20.0%) 등이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정보문화 향유권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정보 문화 향유권 침해 책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입법·정치기관(국회, 정당)		85	21.0	21.0
사법 기관	수사기관(검찰, 경찰)	64	15.8	36.8
	법원	34	8.4	45.2
행정기관		81	20.0	65.2
일반 개인		44	10.9	76.0
민간기업		86	21.2	97.3
시민단체		7	1.7	99.0
기타		4	1.0	100.0
합 계		405	100.0	

이처럼 정보문화 향유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아래의 <그림 4-43>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정도가 그리 차이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 개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개인을 정보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개체로서는 보지만 개선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양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개인의 지나친 무임승차적 행위가 정보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재 조치의 도입 등 건전한 문화 형성을 침해하였지만, 이러한 개인의 성격의 개선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어서 개선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의 역할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4-43> 정보문화 향유권의 훼손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제4절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별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슈별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법제 변화에 대한 인식 혹은 향후 법제의 변화 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정보인권에 대한 개인적 보호수준은 개인 생활, 개인의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표 4-60>과 <그림 4-44>는 이러한 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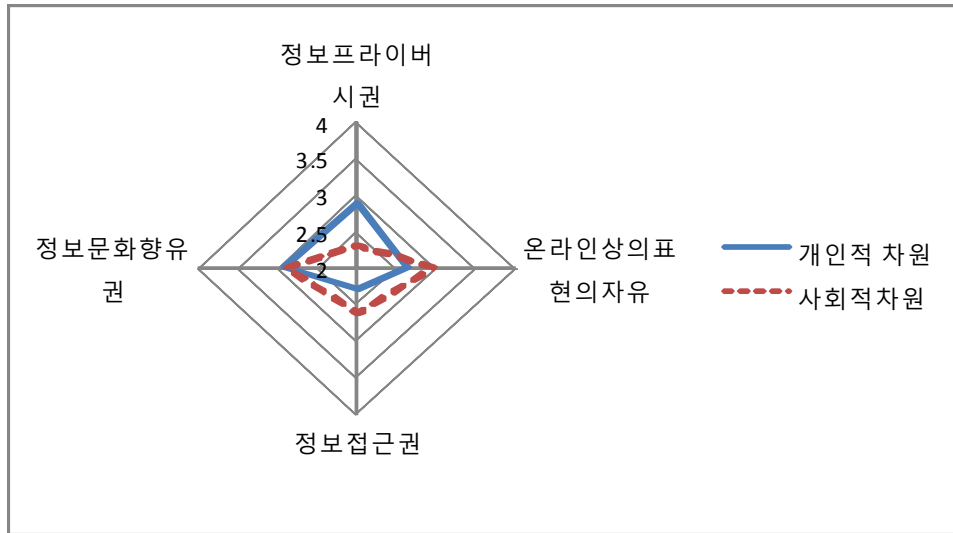
종합하여 보여주는데, 개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 및 정보의 공유는 개인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과 거리가 있는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정보 접근권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쟁점 사항의 형성에 있어서 부각된 권리, 개인의 관심 정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권리이며, 개별 이슈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 된 사안이지만 사회적 차원의 보장수준의 인식의 차이가 큼을 <표 4-60>과 <그림 4-4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쟁점화의 방향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쟁점화 된 이슈가 있는 반면 지나친 표현이 문제가 된 이슈가 있어 사회적 차원의 보장 수준에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된 반면,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이것이 침해되는 입장에서 주로 쟁점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개인적 차원의 노력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권리의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보장 수준에 대하여 불만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사건을 접할 때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의 유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여질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 수준에 대하여 불만이 생길 수 있다.¹¹⁾

<표 4-60> 개별 정보인권의 개인적·사회적 보호수준

분 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N	평균	N	평균
정보프라이버시권	416	2.8918	416	2.3101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417	2.6283	413	2.9782
정보접근권	414	2.2971	406	2.6133
정보문화 향유권	411	2.9246	405	2.9111

11) 반대로, 사회적 보장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역의 인과관계도 발생할 수 있다. 예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자신의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44> 개별 정보인권의 개인적·사회적 보호수준 비교

전체적으로 다른 중요 인권과 상충되는 권리의 경우, 사회적 쟁점화 방향에 따라서 부각되는 권리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 및 권리와 고려 속에서 어느 정도 보장 수준에 인식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쟁점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개별 이슈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나듯이 개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적 쟁점화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가 예견되거나 소수자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정보 접근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도 개인적 보호 차원이 낮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해당 정보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이슈에 있어서도 부각되고 쟁점화된 권리에 따라서 그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권리들로 시민들의 침해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앞서 개별 이슈의 고찰에 있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렇듯 권리가 상충되어 국민이 모두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한 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를 인식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권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될 것이 요청되어진다. 그러나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같이 근본적이어서 국민에게 민감하여 국민 스스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쟁점에 있어서 다른 권리와 상충관계가 비교적 약한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인보다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좀 더 제한이 이루어지겠지만) 권리의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야함은 물론일 것이다.

다만, 다수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권리의 경우, 앞서 지적하였듯이

일반인이 이에 대한 침해 인식이 낮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수자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입법기관 및 정부의 노력이 보다 요청된다 할 것이다.

제5절 변인 집단 간 정보인권 인식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본 절에서는 응답자 변인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가정하였듯이,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정보인권 수준에 따라 이들 변인에 속한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¹²⁾.

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여기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변인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별로 이를 분석한다.

1) 성별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1>에서 보듯이 남녀 사이에 상위개념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정보 접근권에서만 두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자 응답자(2.8065)의 경우 여자 응답자(2.5941)에 비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인권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원판결과 사이버모욕죄, 탈의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제외하고는 남녀 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 간 인식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살인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건에서만 여자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이러한 범죄행위가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여성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12) 각각의 변인 간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부록 2>의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를 참조할 것.

것으로 보인다.

<표 4-6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성별 교차표

	남자	여자	p-value
정보인권	2.6791 (n=215)	2.5400 (n=200)	.098
프라이버시권	3.0599 (n=217)	3.0248 (n=202)	.723
표현의자유	3.3687 (n=217)	3.2475 (n=202)	.195
정보접근권	2.8065 (n=217)	2.5941 (n=202)	.026*
문화향유권	2.7143 (n=217)	2.5446 (n=202)	.079
MS윈도우	2.0748 (n=214)	1.9552 (n=201)	.208
사이버모욕죄	3.4630 (n=216)	3.4554 (n=202)	.939
저작권삼진아웃	2.8598 (n=214)	2.6089 (n=202)	.027*
살인용의자신상정보	3.1481 (n=216)	3.3564 (n=202)	.047*
음란물유포고소	3.4346 (n=214)	3.1931 (n=202)	.027*
아날로그방송중단	3.2290 (n=214)	2.9700 (n=200)	.026*
미네르바	3.6394 (n=208)	3.2178 (n=202)	.000*
탈의실CCTV	3.0372 (n=215)	2.8465 (n=202)	.099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연령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2>에서 보듯이 연령에 따른 상위개념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10대와 30대만이 전체 평균보다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50대 이상의 정보인권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뒤에 참조한 <부록 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4-50대의 고연령층의 학력이 오히려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보인권 수준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정보 접근권과 정보문화 향유권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들 유형의 정보인권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연령층에 따른 교육수준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적인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원 판결과 범죄자 신상공개사건을 제외하고는 연령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응답자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와 아날로그 방송 중단, 탈의실 CCTV 설치 및 운영 등 가장 많은 이슈에 대해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의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에, 20대의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 응답자는 사이버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응답자 연령 중에서 해당 이슈 및 사건에 있어 가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별로 이슈에 따른 인식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이슈 및 사건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62>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연령별 교차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p-value
정보인권	2.3721 (n=129)	2.7143 (n=119)	2.5814 (n=86)	2.8222 (n=45)	2.9444 (n=36)	.000*
프라이버시권	2.9147 (n=129)	3.1681 (n=119)	3.0556 (n=90)	3.0667 (n=45)	3.0278 (n=36)	.425
표현의 자유	3.3876 (n=129)	3.3277 (n=119)	3.3444 (n=90)	3.2000 (n=45)	3.0278 (n=36)	.315
정보접근권	2.4496 (n=129)	2.7899 (n=119)	2.8333 (n=90)	2.8222 (n=45)	2.8611 (n=36)	.012*
문화향유권	2.4419 (n=129)	2.6218 (n=119)	2.7222 (n=90)	2.8667 (n=45)	2.8333 (n=36)	.050*
MS윈도우	1.9370 (n=127)	2.0336 (n=119)	1.9659 (n=88)	2.1333 (n=45)	2.2222 (n=36)	.494
사이버 모욕죄	3.3721 (n=129)	3.5882 (n=119)	3.5618 (n=89)	3.5111 (n=45)	3.0278 (n=36)	.033*
저작권 삼진아웃	2.4884 (n=129)	2.8571 (n=119)	2.8864 (n=88)	2.9091 (n=44)	2.6667 (n=36)	.043*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3.0775 (n=129)	3.3950 (n=119)	3.3708 (n=89)	3.3111 (n=45)	3.0000 (n=36)	.070
음란물 유포고소	3.1473 (n=129)	3.4454 (n=119)	3.5568 (n=88)	3.2889 (n=45)	2.9429 (n=35)	.013*
아날로그 방송중단	2.6172 (n=128)	3.2797 (n=118)	3.3977 (n=88)	3.4773 (n=44)	3.0833 (n=36)	.000*
미네르바	2.8125 (n=128)	3.6639 (n=119)	3.8182 (n=88)	3.8222 (n=45)	3.4333 (n=30)	.000*
탈의실CCTV	2.4574 (n=129)	3.0000 (n=119)	3.2500 (n=88)	3.4222 (n=45)	3.1667 (n=36)	.000*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3) 학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3>에서 보듯이 학력에 따른 상위개념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역시 많아짐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나 경험을 얻을 기회 역시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력수준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력수준에 따라 상위개념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정보인권에 대해 학력수준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원판결사례를 제외하고는 학력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수준을 지닌 시민의 경우, 여타 학력 소지자보다 사회현상에 대한 일상적 혹은 학문적 관심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해석활동 역시 활발하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63>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학력별 교차표

	중미만	고재	고졸	대재	대졸	원이상	p-value
정보인권	2.2857 (n=7)	2.3730 (n=126)	2.4194 (n=31)	2.6596 (n=47)	2.7284 (n=162)	3.0238 (n=42)	.000*
프라이버시권	2.4286 (n=7)	2.9206 (n=126)	2.5625 (n=32)	3.0000 (n=47)	3.2000 (n=165)	3.3095 (n=42)	.002*
표현의 자유	3.1429 (n=7)	3.3730 (n=126)	2.6875 (n=32)	3.3404 (n=47)	3.3455 (n=165)	3.4524 (n=42)	.008*
정보접근권	2.5714 (n=7)	2.4444 (n=126)	2.3750 (n=32)	2.6596 (n=47)	2.8909 (n=165)	3.0714 (n=42)	.000*
문화향유권	2.2857 (n=7)	2.4444 (n=126)	2.3438 (n=32)	2.5745 (n=47)	2.7455 (n=165)	3.0952 (n=42)	.001*
MS윈도우	1.7143 (n=7)	1.9435 (n=124)	2.1613 (n=31)	2.0851 (n=47)	2.0305 (n=164)	2.0476 (n=42)	.795
사이버 모욕죄	2.5714 (n=7)	3.3730 (n=126)	2.9375 (n=32)	3.5745 (n=47)	3.5488 (n=164)	3.7857 (n=42)	.001*

저작권 삼진아웃	2.0000 (n=7)	2.5000 (n=126)	2.7742 (n=31)	2.7447 (n=47)	2.8598 (n=164)	3.0732 (n=41)	.018*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1.8571 (n=7)	3.1111 (n=126)	3.0313 (n=32)	3.4255 (n=47)	3.3293 (n=164)	3.5476 (n=42)	.001*
음란물 유포고소	2.7143 (n=7)	3.1349 (n=126)	3.0000 (n=31)	3.3404 (n=47)	3.4756 (n=164)	3.5610 (n=41)	.021*
아날로그 방송중단	2.4286 (n=7)	2.6160 (n=125)	3.3226 (n=31)	3.4783 (n=46)	3.2638 (n=163)	3.4762 (n=42)	.000*
미네르바	2.8571 (n=7)	2.7903 (n=124)	3.2759 (n=29)	3.6383 (n=47)	3.7716 (n=162)	4.0000 (n=41)	.000*
탈의실CCTV	2.2857 (n=7)	2.4603 (n=126)	3.2581 (n=31)	2.8723 (n=47)	3.1341 (n=164)	3.6190 (n=42)	.000*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4) 소득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4>에서 보듯이 소득에 따른 상위개념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확률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획득 및 관심 역시 높아질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정보인권에 대해 소득수준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와 아날로그 방송중단, 미네르바 사건, 탈의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소득수준 간 인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의 경우,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 전체 소득수준에 걸쳐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으며,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 전체 평균값이 4.2439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응답자 변인보다 월등히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인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말해준다.

<표 4-64>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p-value
정보인권	2.4471 (n=208)	2.6087 (n=69)	2.6167 (n=60)	2.8286 (n=35)	3.2326 (n=43)	.000*
프라이버 시권	2.9038 (n=208)	3.1429 (n=70)	3.0492 (n=61)	3.1351 (n=37)	3.4651 (n=43)	.015*
표현의 자유	3.3125 (n=208)	3.2429 (n=70)	3.2295 (n=61)	3.2973 (n=37)	3.5349 (n=43)	.532
정보 접근권	2.5144 (n=208)	2.8286 (n=70)	2.7377 (n=61)	2.7568 (n=37)	3.3256 (n=43)	.000*
문화 향유권	2.4760 (n=208)	2.7000 (n=70)	2.5738 (n=61)	2.6486 (n=37)	3.3488 (n=43)	.000*
MS윈도우	1.9369 (n=206)	2.0000 (n=70)	2.1500 (n=60)	1.9722 (n=36)	2.2791 (n=43)	.216
사이버 모욕죄	3.4135 (n=208)	3.4286 (n=70)	3.3607 (n=61)	3.5000 (n=36)	3.8372 (n=43)	.130
저작권 삼진아웃	2.5865 (n=208)	2.6571 (n=70)	3.0667 (n=60)	2.9444 (n=36)	2.9762 (n=42)	.019*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3.2260 (n=208)	3.3143 (n=70)	3.2951 (n=61)	3.1111 (n=36)	3.3023 (n=43)	.887
음란물 유포고소	3.2452 (n=208)	3.4286 (n=70)	3.3167 (n=60)	3.4444 (n=36)	3.3810 (n=42)	.708
아날로그 방송중단	2.9275 (n=207)	3.2319 (n=69)	3.3000 (n=60)	3.2500 (n=36)	3.3571 (n=42)	.050*
미네르바	3.1111 (n=207)	3.5143 (n=70)	3.7719 (n=57)	3.6571 (n=35)	4.2439 (n=41)	.000*
탈의실 CCTV	2.6875 (n=208)	3.0000 (n=70)	3.2333 (n=60)	3.0556 (n=36)	3.6047 (n=43)	.000*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준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5>에서 보듯이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상위개념의 정보인권 인식수준 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컴퓨터 활용을 통한 온라인 활동 등의 내용과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인권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을 획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정보인권에 대해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라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원 판결과 범죄자 신상공개, 탈의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슈를 제외한 모든 이슈 및 사건에 대해 컴퓨터 활용능력이 비례하는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술하였듯이, 사회적 이슈를 접하는 주요 경로가 인터넷임을 고려할 때 컴퓨터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표 4-65>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별 교차표

	매우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p-value
정보인권	1.7333 (n=15)	2.2955 (n=44)	2.4924 (n=197)	2.7760 (n=125)	3.5000 (n=34)	.000*
프라이버 시권	1.8667 (n=15)	2.6364 (n=44)	2.8995 (n=199)	3.3150 (n=127)	3.9118 (n=34)	.000*
표현의 자유	2.6000 (n=15)	2.7500 (n=44)	3.1859 (n=199)	3.5984 (n=127)	4.0000 (n=34)	.000*
정보 접근권	1.8000 (n=15)	2.2500 (n=44)	2.5879 (n=199)	2.9606 (n=127)	3.4118 (n=34)	.000*
문화향유 권	1.7333 (n=15)	2.3409 (n=44)	2.4874 (n=199)	2.8898 (n=127)	3.2941 (n=34)	.000*
MS윈도우	1.8000 (n=15)	1.8182 (n=44)	1.9746 (n=197)	2.1120 (n=125)	2.2647 (n=34)	.171
사이버 모욕죄	2.5333 (n=15)	2.9091 (n=44)	3.4070 (n=199)	3.7063 (n=126)	3.9706 (n=34)	.000*
저작권 삼진아웃	1.5333 (n=15)	2.3409 (n=44)	2.6465 (n=198)	3.0480 (n=125)	3.1765 (n=34)	.000*
살인용의자 신상정보	3.0667 (n=15)	3.0682 (n=44)	3.1508 (n=199)	3.4683 (n=126)	3.3235 (n=34)	.069
음란물 유포고소	2.3333 (n=15)	2.9070 (n=43)	3.2161 (n=199)	3.6080 (n=125)	3.7941 (n=34)	.000*
아날로그 방송중단	3.0000 (n=15)	2.7907 (n=43)	2.9086 (n=197)	3.4080 (n=125)	3.5588 (n=34)	.000*
미네르바	2.9333 (n=15)	2.9535 (n=43)	3.2487 (n=193)	3.7200 (n=125)	4.2353 (n=34)	.000*
탈의실 CCTV	2.6000 (n=15)	2.8409 (n=44)	2.9296 (n=199)	2.9760 (n=125)	3.2059 (n=34)	.494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여기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 변인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별로 이를 분석한다.

1) 성별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6>과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와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의 권리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 및 이슈 중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남녀 간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더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장이 덜 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의미에서 보다 약자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제약을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6>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교차표

구분		남자	여자	p-value
정보 프 라 이 버 시 성	개인정보관리	2.9163 (n=215)	2.8657 (n=201)	.604
	개인정보보호정도	2.3565 (n=216)	2.2600 (n=200)	.217
	방범CCTV	2.8618 (n=217)	2.8159 (n=201)	.636
	범죄인신상공개	2.3860 (n=215)	2.2786 (n=201)	.316
	이메일압수수색	3.2512 (n=215)	3.2111 (n=199)	.698

표 현 의 자 유	의견개진정도	2.6296 (n=216)	2.6269 (n=201)	.976
	표현의자유보장도	3.0279 (n=215)	2.9242 (n=198)	.277
	실명제	3.1542 (n=214)	3.1700 (n=200)	.879
	사이버모욕죄	3.0188 (n=213)	2.7778 (n=198)	.022*
	비관글 징계	3.5213 (n=211)	3.6030 (n=199)	.433
정 보 접 근 권	공개청구	2.2817 (n=213)	2.3134 (n=201)	.714
	접근보장정도	2.6875 (n=208)	2.5354 (n=198)	.038*
	웹문서화	2.8143 (n=210)	2.7990 (n=199)	.852
	공개거부	2.9906 (n=212)	3.0253 (n=198)	.665
	시각장애인	2.9667 (n=210)	2.8535 (n=198)	.232
정 보 문 화 향 유 권	공유정도	2.8357 (n=213)	3.0202 (n=198)	.072
	향유보장정도	2.8626 (n=211)	2.9639 (n=194)	.276
	컨텐츠이동	3.1991 (n=211)	3.2690 (n=197)	.486
	미리보기방지	3.1346 (n=208)	3.0561 (n=196)	.428
	카페음악	2.8246 (n=211)	2.6599 (n=197)	.134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연령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7>과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방범용 CCTV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수준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두 항목 모두 10대가 가장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의견개진 등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활동에 가장 소극적이면서, 그 이유를 국가나 사회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적인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연령별 인식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는 사이버 모욕죄와 사내 게시판 비관글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 연령에 따른 인식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사건 모두에 대해 40대가 인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으며, 10대 응답자가 가장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 보장수준이 가장 낮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따라서는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 및 이슈 상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등 콘텐츠 공유금지에 대한 연령별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40대 응답자가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7>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연령별 교차표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p-value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관리	2.8438 (n=128)	2.8571 (n=119)	2.9556 (n=90)	2.8864 (n=44)	3.0286 (n=35)	.831
	개인정보 보호정도	2.4094 (n=127)	2.1933 (n=119)	2.2556 (n=90)	2.3864 (n=44)	2.3889 (n=36)	.221
	방범CCTV	2.7188 (n=128)	2.7311 (n=119)	2.9333 (n=90)	3.1778 (n=45)	2.9722 (n=36)	.038*
	범죄인 신상공개	2.2109 (n=128)	2.3025 (n=119)	2.4778 (n=90)	2.4000 (n=45)	2.4412 (n=34)	.438
	이메일 압수수색	3.0787 (n=127)	3.2353 (n=119)	3.2921 (n=89)	3.5227 (n=44)	3.2571 (n=35)	.172
표현의 자유	의견개진 정도	2.8359 (n=128)	2.5169 (n=118)	2.6000 (n=90)	2.4444 (n=45)	2.5556 (n=36)	.044*
	표현의 자유보장도	3.2000 (n=125)	2.9829 (n=117)	2.8333 (n=90)	2.7556 (n=45)	2.8333 (n=36)	.019*
	실명제	2.9922 (n=128)	3.2051 (n=117)	3.3556 (n=90)	3.0889 (n=45)	3.2353 (n=34)	.135
	사이버 모욕죄	2.8031 (n=127)	2.7521 (n=117)	2.9889 (n=90)	3.2558 (n=43)	3.1176 (n=34)	.039*
	비관글 징계	3.2143 (n=126)	3.7094 (n=117)	3.8111 (n=90)	3.8372 (n=43)	3.3235 (n=34)	.000*

정보 접근권	공개청구	2.3125 (n=128)	2.3419 (n=117)	2.2222 (n=90)	2.2667 (n=45)	2.3235 (n=34)	.898
	접근보장 정도	2.7778 (n=126)	2.5175 (n=114)	2.4607 (n=89)	2.5909 (n=44)	2.7576 (n=33)	.010*
	웹문서화	2.8189 (n=127)	2.8462 (n=117)	2.7528 (n=89)	2.8182 (n=44)	2.7500 (n=32)	.935
	공개거부	2.9528 (n=127)	3.0085 (n=117)	3.0556 (n=90)	3.0000 (n=44)	3.0938 (n=32)	.868
	시각 장애인	2.7540 (n=126)	2.9310 (n=116)	2.9667 (n=90)	3.1364 (n=44)	3.0000 (n=32)	.165
정보 문 화 향 유 권	공유정도	3.0714 (n=126)	2.9316 (n=117)	2.9111 (n=90)	2.7333 (n=45)	2.6364 (n=33)	.160
	향유보장 정도	2.8387 (n=124)	2.9565 (n=115)	2.9886 (n=88)	2.9778 (n=45)	2.7273 (n=33)	.539
	컨텐츠 이동	3.2302 (n=126)	3.2991 (n=117)	3.2500 (n=88)	3.0444 (n=45)	3.2188 (n=32)	.724
	미리보기 방지	2.9920 (n=125)	3.1638 (n=116)	3.0000 (n=88)	3.3333 (n=45)	3.2000 (n=30)	.233
	카페음악	2.4560 (n=125)	2.7179 (n=117)	2.8989 (n=89)	3.1111 (n=45)	3.0313 (n=32)	.002*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3) 학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8>과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학력별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방범용 CCTV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에 사회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인터넷 주소공개 및 실명제와 비판적인 게시글에 대한 직원징계에 대해 학력수준별로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대졸 학력의 응답자가 표현의 자유 침해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학력수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해서도 학력수준별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 및 이슈 상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등 콘텐츠 공유금지에 대한 학력수준별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력별 교차표

구분		중졸 이하	고재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 이상	p-value
정보 프 라 이 버 시	개인정보 관리	3.0000 (n=6)	2.8480 (n=125)	2.6774 (n=31)	2.9574 (n=47)	2.8545 (n=165)	3.2381 (n=42)	.197
	개인정보 보호정도	2.6667 (n=6)	2.4032 (n=124)	2.4375 (n=32)	2.2128 (n=47)	2.1939 (n=165)	2.4524 (n=42)	.098
	방범CCTV	2.2857 (n=7)	2.7440 (n=125)	2.8125 (n=32)	2.6809 (n=47)	2.8788 (n=165)	3.2619 (n=42)	.027*
	범죄인 신상공개	1.5714 (n=7)	2.2480 (n=125)	2.3548 (n=31)	2.2340 (n=47)	2.4451 (n=164)	2.3810 (n=42)	.272
	이메일 압수수색	2.6000 (n=5)	3.1200 (n=125)	3.0323 (n=31)	3.1489 (n=47)	3.3841 (n=164)	3.2857 (n=42)	.145
표현 의 자 유	의견개진 정도	2.5714 (n=7)	2.8160 (n=125)	2.5938 (n=32)	2.6383 (n=47)	2.5122 (n=164)	2.5476 (n=42)	.170
	표현의 자유보장도	2.7143 (n=7)	3.1967 (n=122)	2.7500 (n=32)	2.9783 (n=46)	2.8232 (n=164)	3.1667 (n=42)	.014*
	실명제	3.2857 (n=7)	2.9920 (n=125)	2.8065 (n=31)	3.0870 (n=46)	3.3659 (n=164)	3.1951 (n=41)	.019*
	사이버 모욕죄	3.7143 (n=7)	2.7984 (n=124)	3.0333 (n=30)	2.7391 (n=46)	2.9509 (n=163)	2.9756 (n=41)	.203
	비판글 징계	3.2857 (n=7)	3.2195 (n=123)	3.4000 (n=30)	3.5652 (n=46)	3.8405 (n=163)	3.6341 (n=41)	.000*
정보 접 근 권	공개청구	2.8571 (n=7)	2.2800 (n=125)	2.5313 (n=32)	2.1957 (n=46)	2.2622 (n=164)	2.3250 (n=40)	.299
	접근보장 정도	2.8333 (n=6)	2.7823 (n=124)	2.6000 (n=30)	2.5556 (n=45)	2.5062 (n=162)	2.5641 (n=39)	.054
	웹문서화	3.0000 (n=7)	2.8226 (n=124)	2.8333 (n=30)	2.8261 (n=46)	2.7901 (n=162)	2.7500 (n=40)	.981
	공개거부	3.2857 (n=7)	2.9516 (n=124)	3.1333 (n=30)	2.8696 (n=46)	3.0736 (n=163)	2.9250 (n=40)	.417
	시각 장애인	3.2857 (n=7)	2.7561 (n=123)	2.8333 (n=30)	2.7826 (n=46)	3.0309 (n=162)	3.0500 (n=40)	.119

정보문화 향유권	공유정도	3.0000 (n=7)	3.0732 (n=123)	2.5806 (n=31)	3.0652 (n=46)	2.8171 (n=164)	3.0000 (n=40)	.120
	향유보장 정도	2.4286 (n=7)	2.8430 (n=121)	2.8621 (n=29)	2.9348 (n=46)	2.9383 (n=162)	3.1000 (n=40)	.497
	컨텐츠 이동	3.1667 (n=6)	3.2195 (n=123)	2.9355 (n=31)	3.1304 (n=46)	3.2778 (n=162)	3.4500 (n=40)	.381
	미리보기 방지	2.8333 (n=6)	3.0082 (n=122)	3.3448 (n=29)	3.1111 (n=45)	3.1472 (n=163)	3.0000 (n=39)	.557
	카페음악	3.5000 (n=6)	2.4180 (n=122)	3.1290 (n=31)	2.6304 (n=46)	2.9080 (n=163)	2.8000 (n=40)	.001*

* 유의확률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4) 소득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69>와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범용 CCTV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사이버 모욕죄와 비판적 게시글에 대한 직원 징계에 대해서 소득별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사건으로 인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학력수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해서는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에 있어 소득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제약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침해정도도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 및 이슈 상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등 콘텐츠 공유금지에 대한 소득수준별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9>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p-value
정보프 라이 버시	개인정보 관리	2.8986 (n=207)	2.7681 (n=69)	2.8833 (n=60)	2.7568 (n=37)	3.1860 (n=43)	.235
	개인정보 보호정도	2.3010 (n=206)	2.2174 (n=69)	2.3934 (n=61)	2.3243 (n=37)	2.3721 (n=43)	.755
	방범CCTV	2.7440 (n=207)	2.7429 (n=70)	3.0656 (n=61)	2.7297 (n=37)	3.2326 (n=43)	.010*
	범죄인 신상공개	2.2850 (n=207)	2.2143 (n=70)	2.3898 (n=59)	2.5405 (n=37)	2.5116 (n=43)	.424
	이메일 압수수색	3.1478 (n=203)	3.2429 (n=70)	3.2951 (n=61)	3.2162 (n=37)	3.5349 (n=43)	.276
표현 의 자 유	의견개진 정도	2.6908 (n=207)	2.4783 (n=69)	2.5246 (n=61)	2.6486 (n=37)	2.6977 (n=43)	.463
	표현의 자유보장도	3.0837 (n=203)	3.0000 (n=69)	2.8033 (n=61)	2.6216 (n=37)	3.0000 (n=43)	.051
	실명제	3.1019 (n=206)	3.1159 (n=69)	3.2833 (n=60)	3.2703 (n=37)	3.2619 (n=42)	.667
	사이버 모욕죄	2.7941 (n=204)	2.7681 (n=69)	3.0833 (n=60)	3.1622 (n=37)	3.1707 (n=41)	.046*
	비판글 징계	3.4020 (n=204)	3.7101 (n=69)	3.6271 (n=59)	3.8108 (n=37)	3.7805 (n=41)	.037*
정보 접 근 권	공개청구	2.2621 (n=206)	2.3623 (n=69)	2.4754 (n=61)	2.2432 (n=37)	2.1463 (n=41)	.335
	접근보장 정도	2.6716 (n=204)	2.4615 (n=65)	2.6333 (n=60)	2.4054 (n=37)	2.7250 (n=40)	.096
	웹문서화	2.8235 (n=204)	2.9118 (n=68)	2.8644 (n=59)	2.5135 (n=37)	2.7317 (n=41)	.168
	공개거부	2.9559 (n=204)	3.0580 (n=69)	3.1167 (n=60)	2.9167 (n=36)	3.0976 (n=41)	.533
	시각 장애인	2.7921 (n=202)	2.9853 (n=68)	2.8833 (n=60)	3.1351 (n=37)	3.2195 (n=41)	.041*
정보 문 화 향 유 권	공유정도	2.9951 (n=204)	2.7681 (n=69)	2.9000 (n=60)	2.9189 (n=37)	2.8780 (n=41)	.627
	향유보장 정도	2.8366 (n=202)	3.1212 (n=66)	2.9153 (n=59)	2.8378 (n=37)	3.0000 (n=41)	.266
	컨텐츠 이동	3.2178 (n=202)	3.3333 (n=69)	3.2712 (n=59)	3.0270 (n=37)	3.2683 (n=41)	.670
	미리보기 방지	3.0448 (n=201)	3.2239 (n=67)	3.2241 (n=58)	2.8378 (n=37)	3.1951 (n=41)	.243
	카페음악	2.5693 (n=202)	2.7681 (n=69)	2.9492 (n=59)	3.1081 (n=37)	2.9512 (n=41)	.014*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응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준으로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70>과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권리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차원에서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낮은 응답자가 이메일 압수수색 등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인식정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으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상에서의 의견개진 등의 표현의 자유 향유 및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보장 정도가 낮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별 사건 및 이슈에 있어서는 비판적 게시글에 대한 직원징계에 대해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며, 대체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해당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학력수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해서는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에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별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낮은 응답자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제약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침해정도가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에 있어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온라인상의 창작물 공유 등 권리향유 및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건 및 이슈 상에서는 디지털 기기 간 콘텐츠 이동 금지에 대해 인식상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낮은 응답자의 경우에 이러한 조치가 정보문화 향유권을 제약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0>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득별 교차표

구분		매우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p-value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관리	2.1333 (n=15)	2.6512 (n=43)	2.8477 (n=197)	3.0394 (n=127)	3.2353 (n=34)	.001*
	개인정보 보호정도	2.0667 (n=15)	2.3721 (n=43)	2.3535 (n=198)	2.3175 (n=126)	2.0588 (n=34)	.227
	방범CCTV	2.8667 (n=15)	2.6977 (n=43)	2.8090 (n=199)	2.9291 (n=127)	2.8529 (n=34)	.711
	범죄인 신상공개	1.9333 (n=15)	2.3953 (n=43)	2.3249 (n=197)	2.4567 (n=127)	2.0294 (n=34)	.170
	이메일 압수수색	3.4286 (n=14)	2.8837 (n=43)	3.1990 (n=196)	3.4094 (n=127)	3.1176 (n=34)	.050*
표현의 자유	의견개진 정도	2.2667 (n=15)	2.4186 (n=43)	2.5528 (n=199)	2.7857 (n=126)	2.9118 (n=34)	.016*
	표현의 자유보장도	2.5714 (n=14)	3.2439 (n=41)	2.8442 (n=199)	3.0480 (n=125)	3.3529 (n=34)	.004*
	실명제	3.2000 (n=15)	2.7619 (n=42)	3.2525 (n=198)	3.2000 (n=125)	2.9706 (n=34)	.063
	사이버 모욕죄	3.0714 (n=14)	2.5952 (n=42)	2.9848 (n=198)	2.9512 (n=123)	2.5588 (n=34)	.067
	비판글 징계	3.5714 (n=14)	3.1190 (n=42)	3.4848 (n=198)	3.7377 (n=122)	3.9118 (n=34)	.003*
정보 접근권	공개청구	2.0000 (n=15)	2.1860 (n=43)	2.2995 (n=197)	2.3200 (n=125)	2.4706 (n=34)	.433
	접근보장 정도	2.7143 (n=14)	2.5814 (n=43)	2.6010 (n=193)	2.6260 (n=123)	2.6364 (n=33)	.977
	웹문서화	3.0667 (n=15)	2.6429 (n=42)	2.8051 (n=195)	2.8374 (n=123)	2.7941 (n=34)	.511
	공개거부	3.2000 (n=15)	2.7857 (n=42)	2.9897 (n=195)	3.0887 (n=124)	3.0000 (n=34)	.252
	시각 장애인	3.3333 (n=15)	2.4762 (n=42)	2.8763 (n=194)	3.0242 (n=124)	3.0606 (n=33)	.006*
정보문화향유권	공유정도	2.6000 (n=15)	2.5238 (n=42)	2.9133 (n=196)	3.0806 (n=124)	3.0588 (n=34)	.025*
	향유보장 정도	2.7333 (n=15)	2.6829 (n=41)	2.8912 (n=193)	3.0732 (n=123)	2.7879 (n=33)	.118
	컨텐츠 이동	3.5000 (n=14)	2.7317 (n=41)	3.2347 (n=196)	3.3089 (n=123)	3.4412 (n=34)	.011*
	미리보기 방지	3.1429 (n=14)	2.7436 (n=39)	3.0876 (n=194)	3.1545 (n=123)	3.3235 (n=34)	.130
	카페음악	3.2857 (n=14)	2.6341 (n=41)	2.7259 (n=197)	2.8033 (n=122)	2.5588 (n=34)	.280

* 유의확률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제5장 결 론

정보화 사회는 인간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 사회의 하나이다. 역사상 사회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측면이 변화해 왔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인권의 측면이 정보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인권은 지금까지 사회가 헌법 등의 실정법 체계를 통해 보장해왔던 기본권과 동등한 성격 및 지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는 다른 사회와 달리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정보인권을 정의하고 유형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가령, 공적 정보의 자유 측면에서 강조되던 정보 접근권은 웹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의 정보자체에 대한 접근권 논의에서 정보의 성격 및 범위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정보인권의 특성과 내용은 개인이 그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위개념의 정보인권과 구체화된 유형별 정보인권, 개별 사안별 정보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각기 유형과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의 개별적인 사건 및 이슈에 대해 관련되는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보인권의 상위 개념을 현시화하는 법적 제도화가 현실적인 정보인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보인에 있어 제도와 현실 간에 인식상의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보인권의 개념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법제화로 인해 권리개념 간의 상충이나 충돌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보인권 개념 자체의 정립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보문화 향유권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관련된 실정법체계의 강화로 인해 사실상 이들 권리에 대한 반사적 권리로서 그 입지가 약화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정보인권이 정보화 기술에 한정된 권리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정보화 사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권리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정보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보문화 향유권은 실질적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보인에 있어 개인적 가치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등 가치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주장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시민들이 정보인권의 보호 및 향유주체로서 그 책임귀책이 개인보다는 사회나 국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인적 노력은 소홀하면서, 이러한 권리보호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국가에만 두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의 의미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권리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서만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조사와 시민인식조사의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먼저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포괄범위와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등의 활용과 공개에 있어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정보인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제화가 정보인권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법제화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되고,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문화 향유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인권의 보호 및 보장은 부분적 인권의 보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정보인권 개념 간에도 상호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정보인권 내의 불균형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법의 강화에 따라 이들 권리와 명확한 경계설정 혹은 조화방법을 모색하는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없다면, 문화 향유의 측면에서 정보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적인 사안이나 이슈에 따라 불균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정보인에 대한 시민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된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의 개별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체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일면인 정보의 빠른 확대와 재생산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슈중심의 정보인권 인식형성은 정보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동일한 정보 접근권에 있어 소극적 침해문제를 다루는 두 문항에 대해 일반인과 장애인이라는 설정의 차이를 주었을 경우에 이것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시민들이 정보인에 대한 일관적이고 포괄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이슈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과 관련되는 주요 이슈와 사건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건보. (2004).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일환. (2001).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9(3). pp.87-112.
- 김종철. (2001).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 인터넷법률. 제4호. pp.23-44.
- 성낙인. (2004). 특집: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45(1). pp.101-142.
- 이인호. (1999).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호. pp.41-100.
- 이인호. (2009). 정보인권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체계. 국가인권위원회
- 장영수. (1999). 정보화 시대와 인권, 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집. 35(0). pp.21-44.
- 조일수. (2005). 정보 인권의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60(0). pp.211-234.
- 조화순. (2005).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9(2). pp.445-466.
- 하우영. (2003).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지, 13(6), pp.17-33.
- Andrew D. Murray. (2003). Regulation and Rights in Networked Spa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0(2). pp.187-216.

- Dan Hunter. (2003). Cyberspace as Place and the Tragedy of the Digital Anticommons. *California Law Review*. 91(2). pp.439–519.
- Drake, William J.(1999). "Toward Sustainable Competi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s; From Principle to Practice",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Feather, John(1998). "The Information Society: A Study of Continuity and Change"(2n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 Gurak, Iaura J.(1997). "Persuation and Privacy in Cyberspace: The Online Protests over Lotus Marketplace and the Clipper Chip". New Heaven, CT: Yale Unversity Press.
- Hauben, Michael and Ronda Hauben(1997). "Netizens: On the History and Impact of Usenet and the Internet". Los Alamitos, CA:IEEE Computer Society Press.
- Ira V. Heffan. (1997). Copyleft: Licensing Collaborative Works in Digital Age. *Stanford Law Review*. 49(6). pp.1487–1521.
- Jonathan Dowell. (1998). Fragmented Copies, Licensing, and Fair Use in a Digital World. *California Law Review*. 86(4). pp.843–877.
- Józef Oleński. (2003).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and the Duties of a Democratic State in Modern IT Environment,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1(1), pp33–48.
- Kizza, Joseph M(1997).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NY: Springer–Verlag
- Lessig, Lawrence.(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나남출판.

Mathias Klanq and Andrew Murray. (2005).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RoutledgeCavendish: New York.

Mauro F. Guillen and Sandra L. Suarez. (2005). Explaining the Global Digital Divid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logical Drivers of Cross-National Internet Use. Social Forces. 84(2). pp.681-708.

Moor, James H.(1985), What is Computer Ethics?, "Metaphilosophy", 16, pp.266~275.

Norris, P.(2005).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ctivism: Evidence from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Government Research" 1. pp.20~39.

Painter, Anthony and Ben Wardle(2001). "Vital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new media era", London: Politico's Publishing.

부 록 1

설 문 지

Agency Code	Depart. Code	Case ID

정보인권 관련 시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정보인권과 관련된 정보프라이버시권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대 사회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수준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생님의 고견은 우리나라 정보인권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신 일상에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치 있는 연구를 위해 부디 끝까지 설문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순수한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장 최 흥 석

<설문관련 문의처>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장 최흥석 (hschoi@korea.ac.kr)

연 구 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곽창규 (ppogppog@korea.ac.kr)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경수 (keiser99@korea.ac.kr)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Tel: 02-3290-2279)

I. 응답자 특성에 관한 사항

① 남자

① 10대

③ 30대

⑤ 50대

① 중학교

재학 ③ 2

④ 대학교

⑤ 대학교

① 자영업

② 서비스업

③ 사무직

④ 전문직

⑤ 전업주부

⑥ 학생

⑦ 기술직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다

II.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의식

정보인권이란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에게 두며, 동시에 개인의 존엄과 인격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정보접근권(정보공개청구)	①	②	③	④	⑤
정보문화향유권(공적 정보의 공유)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아래의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MS 윈도우로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법원판결	①	②	③	④	⑤
사이버모욕죄	①	②	③	④	⑤
저작권 삼진 아웃제	①	②	③	④	⑤
살인용의자 얼굴 및 신상정보의 공표 사건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사건	①	②	③	④	⑤
아날로그 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미네르바 사건	①	②	③	④	⑤
목욕탕 및 사우나시설 탈의실에 대한 CCTV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주로 사회적 이슈나 뉴스를 무엇을 통해 접하십니까?

- ① 신문(무가지 포함) ② TV 방송 및 뉴스 ③ 인터넷 ④ 전문서적
⑤ 친구 등과의 사적인 모임 ⑥ 기타()

5. 귀하께서는 정보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화가 정보인권에 대한 지식습득 및 현실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② 기여하는 바가 적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⑤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⑥ 잘 모르겠다

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인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②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인권 보호 및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8.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인권 침해 및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III. 정보 프라이버시권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란 공공기관 및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일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 귀하는 평소 온라인상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어 주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이나 제공에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
⑤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2. 귀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보호되고 있다

3. 귀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침해된다	매우 침해된다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①	②	③	④	⑤
범죄인 신상공개	①	②	③	④	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	①	②	③	④	⑤
전자여권 지문등록	①	②	③	④	⑤
원격진료를 위한 건강정보 통합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IV.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란, 웹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평소 온라인상에서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공개적인 사이트에 답글을 다는 등의 견해를 활발하게 하시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3. 귀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침해된다	매우 침해된다
인터넷 주소 공개 및 실명제	①	②	③	④	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 및 이메일 압수수색	①	②	③	④	⑤
사이버모욕죄 신설	①	②	③	④	⑤
미네르바 사건	①	②	③	④	⑤
사내 게시판의 비관글에 대한 직원징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및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V.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권이란,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함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평소에도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 등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같은 정보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3. 귀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정보 접근권이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침해된다	매우 침해된다
공개대상 정보의 웹문서화	①	②	③	④	⑤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부분적 공개 및 공개거부	①	②	③	④	⑤
시각 장애인의 웹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아날로그 방송송출 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MS 윈도우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법원판결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 접근권 보호 및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 접근권 침해 및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VI. 정보 문화 향유권

정보문화 향유권이란, 정보문화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지식재산을 사회문화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평소 개인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이나 사진 등과 같이 개인적인 창작물을 타인과 자유롭게 활발하게 공유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문화 향유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3. 귀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정보문화 향유권이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침해된다	매우 침해된다
디지털 기기 간 음원 등 콘텐츠 이동 제한	①	②	③	④	⑤
저작권 삼진 아웃제(일정기간 사이트 이용제한)	①	②	③	④	⑤
포털 사이트 내 사진 미리보기 금지	①	②	③	④	⑤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저작권 소멸시효의 연장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 및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 및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기관 (국회, 정당) ② 수사기관 (검찰, 경찰) ③ 법원 ④ 행정기관 ⑤ 일반개인
⑥ 포털서비스 업체 등 민간기업 ⑦ 시민단체 ⑧ 기타()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VII. 정보인권의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의식조사

정보인권을 구성하는 각 권리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가치들과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의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그 크기만큼 가깝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제공 시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일부 효율성 및 편리성과 경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치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의 차이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가깝게 표시해 주십시오)

정보 프라이버시권	①	②	③	④	⑤	효율성 및 편리성
-----------	---	---	---	---	---	-----------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때때로 타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나 개인신상정보의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가치와 충돌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치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의 차이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명예훼손
-------------------	---	---	---	---	---	------

3. 정보 접근권은 때때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란의 가열이나 소수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과 경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치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의 차이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정보 접근권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효율성
--------	---	---	---	---	---	---------

4. 정보문화 향유권은 개인의 창의적 노력으로부터 탄생한 지적재산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와 같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와 경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치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의 차이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정보문화 향유권	①	②	③	④	⑤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	---	---	---	---	---	----------------

끝까지 설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2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

정보인권에 대한 응답자 변인 집단 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 먼저 응답자 변인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 변인의 상호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연령-학력 간 교차분석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10대는 96.9%가 고등학생이며, 20대와 30대는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와 50대 이상에서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 최종학력 교차표

			최종학력						전체
			중미만	고재	고졸	대재	대졸	원이상	
연령	10대	빈도	4	125	0	0	0	0	129
		연령의 %	3.1%	96.9%	0.0%	0.0%	0.0%	0.0%	100.0%
	20대	빈도	0	0	6	47	54	12	119
		연령의 %	0.0%	0.0%	5.0%	39.5%	45.4%	10.1%	100.0%
	30대	빈도	0	0	9	0	67	14	90
		연령의 %	0.0%	0.0%	10.0%	0.0%	74.4%	15.6%	100.0%
	40대	빈도	1	0	10	0	27	7	45
		연령의 %	2.2%	0.0%	22.2%	0.0%	60.0%	15.6%	100.0%
	50대 이상	빈도	2	1	7	0	17	9	36
		연령의 %	5.6%	2.8%	19.4%	0.0%	47.2%	25.0%	100.0%
	전체	빈도	7	126	32	47	165	42	419
		연령의 %	1.7%	30.1%	7.6%	11.2%	39.4%	10.0%	100.0%

2. 연령-소득 간 교차분석

응답자의 연령과 소득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10대와 20대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 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에는 34.4%가 월 평균 200-3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4.4%와 41.7%가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 소득 교차표

			소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령	10대	빈도	128	1	0	0	0	129
		연령의 %	99.2%	0.8%	0.0%	0.0%	0.0%	100.0%
	20대	빈도	54	40	16	8	1	119
		연령의 %	45.4%	33.6%	13.4%	6.7%	0.8%	100.0%
	30대	빈도	16	20	31	16	7	90
		연령의 %	17.8%	22.2%	34.4%	17.8%	7.8%	100.0%
	40대	빈도	6	5	6	8	20	45
		연령의 %	13.3%	11.1%	13.3%	17.8%	44.4%	100.0%
	50대 이상	빈도	4	4	8	5	15	36
		연령의 %	11.1%	11.1%	22.2%	13.9%	41.7%	100.0%
	전체	빈도	208	70	61	37	43	419
		연령의 %	49.6%	16.7%	14.6%	8.8%	10.3%	100.0%

3. 연령-컴퓨터 활용능력 간 교차분석

응답자의 연령과 컴퓨터 활용능력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보통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와 30대로 각각 15.1%와 11.1%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능력에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 컴퓨터 활용 능력 교차표

			컴퓨터 활용 능력					전체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보통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연령	10대	빈도	5	18	68	35	3	129
		연령의 %	3.9%	14.0%	52.7%	27.1%	2.3%	100.0%
	20대	빈도	3	8	54	36	18	119
		연령의 %	2.5%	6.7%	45.4%	30.3%	15.1%	100.0%
	30대	빈도	0	5	42	33	10	90
		연령의 %	0.0%	5.6%	46.7%	36.7%	11.1%	100.0%
	40대	빈도	3	4	18	18	2	45
		연령의 %	6.7%	8.9%	40.0%	40.0%	4.4%	100.0%
	50대 이상	빈도	4	9	17	5	1	36
		연령의 %	11.1%	25.0%	47.2%	13.9%	2.8%	100.0%
	전체	빈도	15	44	199	127	34	419
		연령의 %	3.6%	10.5%	47.5%	30.3%	8.1%	100.0%

4. 학력-소득 간 교차분석

응답자의 학력과 소득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경우, 전체의 31.0%가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 소득 교차표

			소 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학력	중 미만	빈도	4	3	0	0	0	7
		연령의 %	57.1%	42.9%	0.0%	0.0%	0.0%	100.0%
	고재	빈도	125	0	1	0	0	126
		연령의 %	99.2%	0.0%	0.8%	0.0%	0.0%	100.0%
	고졸	빈도	7	10	11	2	2	32
		연령의 %	21.9%	31.3%	34.4%	6.3%	6.3%	100.0%
	대재	빈도	37	8	0	1	1	47
		연령의 %	78.7%	17.0%	0.0%	2.1%	2.1%	100.0%
	대졸	빈도	27	44	41	26	27	165
		연령의 %	16.4%	26.7%	24.8%	15.8%	16.4%	100.0%
	원 이상	빈도	8	5	8	8	13	42
		연령의 %	19.0%	11.9%	19.0%	19.0%	31.0%	100.0%
	전체	빈도	208	70	61	37	43	419
		연령의 %	49.6%	16.7%	14.6%	8.8%	10.3%	100.0%

5. 학력-컴퓨터 활용능력 간 교차분석

응답자의 학력과 컴퓨터 활용능력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일반적인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에는 학력과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이상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생 및 대졸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 * 컴퓨터 활용 능력 교차표

			컴퓨터 활용 능력					전체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보통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학력	중 미만	빈도	1	0	5	1	0	7
		연령의 %	14.3%	0.0%	71.4%	14.3%	0.0%	100.0%
	고재	빈도	5	18	66	34	3	126
		연령의 %	4.0%	14.3%	52.4%	27.0%	2.4%	100.0%
	고졸	빈도	3	9	13	6	1	32
		연령의 %	9.4%	28.1%	40.6%	18.8%	3.1%	100.0%
	대재	빈도	2	5	21	11	8	47
		연령의 %	4.3%	10.6%	44.7%	23.4%	17.0%	100.0%
	대졸	빈도	3	8	79	55	20	165
		연령의 %	1.8%	4.8%	47.9%	33.3%	12.1%	100.0%
원 이상	빈도	1	4	15	20	2	42	
	연령의 %	2.4%	9.5%	35.7%	47.6%	4.8%	100.0%	
전체		빈도	15	44	199	127	34	419
		연령의 %	3.6%	10.5%	47.5%	30.3%	8.1%	100.0%

부 록 3

제18대 국회 정보 인권 관련

주요 법제 제·개정안 발의 내용

구분	법률	취지	내용
정보 프라이버시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용자는 언제나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동의하는 절차를 가입절차와 분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이 제한되는 정보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한 정보 포함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 -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발생 상황,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 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손해배상 감면 규정 - 이용자의 저장정보 소실/검색정보조작/불법정보 유통 예방 -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도용의 피해 최소화
		사생활 보호 및 명예훼손 방지	-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받은 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 요청, 제공자는 임시조치 -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불능 조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	- 불필요한 정보노출 최소화 - 증명서 교부 청구 시에 민감한 정보 제외 청구, 본인 외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 반드시 제외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자기정보관리 통제권강화	-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 - 타인이 건강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정보주체는 취급기관/이용기관의 장에게 열람/사본교부 요청,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요청, 제공/이용의 동의 철회 가능 -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취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접근사유 및 조회기록 요구, 해당기관은 기록 보존의무 - 본인의 건강정보 이용 정지 및 파기 요청 권리 - 건강정보이용 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목적과 2차적 이용으로 명확히 구분 - 2차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 제공 허용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자의 제한 - 원래의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함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개인정보보호	- 정보제공 받은 자는 목적완료/보존기간 완료시 파기하거나 개인식별 정보의 제거의무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시설접근 통제/전송 보안 등에 관한 지침 정하고 고시 - 누설/도용함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얻은 자 경제적 이득의 10배 이내의 과징금 -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의 100배안에서 과징금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보호지침, 보호수준 평가, 보호기술 표준의 고시 권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개인정보보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한 근거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CCTV, RFID, 전자우편감시시스템 등 감시/추적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안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강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열람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이의제기권)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처리 가능, 예외의 단서조항 - 예외: 법령에서 요구/허용,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 등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 고지 -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정보/선택정보 구분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당 법령에서 의도한 고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수집/처리 금지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한 - 범죄수사/재판/국제법상 의무이행 등 공공기관 수행 업무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해당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의 예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 취급한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일시/정보파일의 명칭이 자동기록, 5년 보존 - 부당 목적 취급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정보누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 다할 것 명시 - CCTV 수집정보 특별한 규정/수사기관 영장/서면요청 제외하고 30일 초과 보유 금지 -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의 경우 이용/제공의 목적/근거규정/일시/제공받은 기관/담당자 기록 3년 보존 - 정보주체에게 검색목적을 통지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약화	-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채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자 포함 - 인사청문회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근거 마련 - 인사청문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인사청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 신용조회만을 이유로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거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없도록, 당사자의 요청으로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강화	-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 의무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조회의 경우 고객 동의가 필요하도록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약화	- 신상정보 및 지문 채취하여 실종예방아동등록증, 아동 등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표현의 자유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표현의 자유 강화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규정하여 언론분야의 정치적 개입의 배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표현의 자유 보장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임시조치에 기준과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균형	-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권리간 균형 도모 위하여 합리적 분쟁해결 위한 임시조치 및 인터넷 분쟁제도의 개선 - 접근차단 등의 임시조치와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2가지 목적의 달성
		표현의 자유 약화	- 인터넷 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의 완화 - 명예훼손 등의 권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에 의한 자율규제의 유도 - 게시판 본인확인조치의 확대시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기 위해 정보삭제 등을 요청, 요청에 대한 강제력 부여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의 의무

	교육기본법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윤리 및 언어 순화 등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
정보접근권	저작권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배포의 범위를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출력 기용 정보기록방식 등으로 확대 -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장애인이 정보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이 제한되는 정보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한 정보 포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보접근성약화	-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
		정보접근성보장	- 비밀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비밀지정의 방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접근권의 약화	-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여 법의 적용대상의 확대
저작권	저작권법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비용은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작권의 강화	- 인터넷 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포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삭제 및 운영정지 또는 계정삭제 명령 규정하여 저작권자 보호 -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1년 이내의 계정정지
		이용권의 보장	-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 - 처벌규정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업성이나 침해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적극적 계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근거 마련 - 저작물의 성징/목적/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 -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
--	--	--	---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조사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을지로 1가 16)

발행일 : 2009. 10

발행인 : 현 병 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 02) 2125-9759 FAX : 02) 2125-9733

URL : <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171-0 93360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 인쇄일 | 2009년 10월
| 발행일 | 2009년 10월
| 발행인 | 현병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 전 화 | (02)2125-9759
| F A X | (02)2125-9733
| U R L | <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보람문화사

ISBN 978-89-6114-171-0



9 788961 141710



9 3 3 6 0